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9



2018.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대), www.mos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대), www.kipf.re.kr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 약

I. 서 론

- 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일몰(2018년 12월 31일)을 앞두고 동 제도의 연장, 재설계,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됨

- 본 연구는 제도 현황, 타당성 평가 및 효과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 (제도 현황) 제도의 개요, 제도의 운영 현황과 해외의 저축지원 관련 조세지원제도를 정리함

- (타당성 평가) 본 제도 설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개입의 근거와 필요성, 지원방법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여타 정부정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함

- (효과성 평가) 제도의 실효성, 재산형성(저축지원) 효과, 수혜자의 특성 등을 국세청 납세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함
 - 본 제도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을 통해 저축을 유인하였는지, 어떤 계층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등을 국세청 납세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함

II. 제도 현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개인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정책대상자별 비과세 한도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중도인출을 허용하였음

- (정책 대상자) 직전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며, 신규 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가능
 - (가입한도)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
 - (유형) 운영방식에 따라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로 구분
 - (편입 가능상품) 펀드(ETF, REITs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 (의무가입기간) 5년, 단 청년(15~29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3,500만원) 이하인 자는 3년으로 단축
 - (세제혜택) 계좌 내 상품 간·기간 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 단,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금액은 9%로 분리과세
 - 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가입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하였고,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기존 250만원까지 비과세하였으나,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확대
- (가입 현황) 2018년 4월 말 현재 ISA 가입자 수는 209.8만명이고, 이들의 누적잔고는 4조 6,800억원
- 신탁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약 88.9%(186.6만명)를 차지하고, 이들의 누적잔고가 전체잔고의 약 87.3%(4조 865억원)를 차지
 - 일임형 가입자는 23.2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약 11.1%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의 누적잔고도 5,938억원으로 전체잔고의 약 12.7%를 차지

<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현황(2018년 4월 말)

(단위: 만명, 억원)

구분	신탁형		일임형		합계	
	가입자 수	잔고	가입자 수	잔고	가입자 수	잔고
증권	13.5	7,250	3.3	539	16.8	7,780
은행	173.0	33,609	19.9	5,396	192.9	39,005
보험	0.1	6	미취급		0.1	6
합계	186.6	40,865	23.2	5,938	209.8	46,80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가입자 유형별 현황) 전체 가입자 중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가 66.7%(139.8만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 일반형 가입자가 31.8%(66.8만명), 청년형 1.5%, 자산형성지원대상자 0.0% 순
 - 반면, 가입자 유형별 평균잔고는 일반형이 275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자산형성지원대상자 286만원, 청년 230만원, 서민형 198만원 순
 - 참고로, 10만원 이하 가입자를 제외할 경우 평균 가입액은 783만원 수준

〈표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유형별 현황(2018년4월 말)

(단위: 명, %, 만원)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지원자	계
가입자 수	668,078	1,397,925	31,826	242	2,098,071
비중	31.8	66.7	1.5	0.0	100
평균잔고	275	198	230	286	223

자료: 금융투자협회

- (월별 가입 추이) 월별 신규 가입자의 변화를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월 신규 가입자 수는 15.9천명이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2017년 12월 6.9천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8년 2월 11.6천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4월에는 21천명을 기록
 - 반면, 해지자는 2017년 2월 29.7천명이었으나, 이후 대체로 감소하여 2017년 12월에는 22.5천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2018년 1월부터는 25.2천명 내외로 감소하고 있음

〈표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월별 신규 가입 및 해지 추이(2018년 4월 말)

(단위: 천명)

구분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 7월	'17. 8월
신규	14.0	15.9	14.6	11.2	9.0	8.8	7.1	9.8
해지	43.1	29.7	39.6	30.7	49.3	34.6	29.2	28.5
구분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신규	8.8	6.9	8.2	6.9	10.5	11.6	17.8	21.0
해지	29.8	20.3	34.8	22.5	25.2	17.6	20.9	19.2

자료: 금융투자협회

- (가입금액 규모별 분포) 2018년 4월 현재, 2,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 수준,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5.6%
 -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3% 300만원 초과~500만원 2.0%, 1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5.3%
 - 1만원 이하 가입자가 5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가입자 11.7만명의 가입금액이 2조 549억원으로 전체의 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2천만원 초과 가입자 4.3만명의 가입금액이 1조 4,896억원으로 전체의 31.8%
 - 그 다음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1.9%, 1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7.6%,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3.9% 순

〈표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규모별 현황(2018년 4월 말)

(단위: 만명, %, 억원)

가입금액	가입자		잔고		평균잔고 (만원)
	인원	비중	금액	비중	
~1만원 이하	106.80	50.9	98.8	0.2	0.9
~10만원 이하	43.73	20.8	306.8	0.7	7.0
~300만원 이하	32.12	15.3	3,558.3	7.6	110.8
~500만원 이하	4.21	2.0	1,825.1	3.9	433.5
~1,000만원 이하	6.99	3.3	5,566.0	11.9	796.3
~2,000만원 이하	11.72	5.6	20,548.9	43.9	1,753.3
2000만원 초과	4.25	2.0	14,896.3	31.8	3,505.0
합계	209.81	100.0	46,800.2	100.0	223.1

자료: 금융투자협회

- (조세지출규모)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조세지출규모는 추정되고 있지 않음
 - 이는 계약 만기 시 인출이나 만기 전 해지가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5년으로, 2016년 3월에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최초 조세지출은 2019년 3월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

- 2016년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 시 추정 조세지출규모는 5,500억원 수준으로 추정

- (해외사례)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사 국가들은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단순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노후 준비, 의료비 및 교육비 마련을 위한 저축과 같은 목적형 저축에 대해 세제지원
 - 영국은 다수의 저축상품에 대한 별도의 조세지원보다는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연령별로 구분된 저축지원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여 제도가 단순
 - 일본은 취약계층지원, 근로자 재산형성,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

Ⅲ. 타당성 평가

- 타당성 평가는 크게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함
-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
 - 거시경제 관점에서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시경제 관점에서는 개인이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음
 - 다만,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6.3%(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투자재원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저축이 미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패널리티 성격이 존재하므로 저축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소비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현재의 저축에 과세를 할 경우, 미래 소비를 제약하여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금융소득이 적은 계층에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
- (지원대상의 적절성)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 첫째, 직전연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셋째, 일반형의 경우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지원방식의 적절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방식이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보다는 서민·중산층에게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과세·감면방식은 적절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 『2017년 국세통계연보』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774만명 중 43.64%인 774만명이 면세점에 있으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약 639만명, 평균 결정세액이 115만원 이하 수준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방식이 서민·중산층에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은 3년
 -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로 장기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임

- (중도인출 허용)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민·중산층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은 적절

- (가입한도)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가입한도는 조세지출규모와 자산이동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가입한도에 따라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의 개인당 평균잔고가 약 223만원(10만원 이하 가입자 제외 시 78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 가입한도 2,0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
 - 또한, 현재 1,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7.6%인 16만명에 불과하나, 이들의 가입금액이 전체 가입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이나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편입대상 금융상품)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 편입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이는 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 성향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주식, 해외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유사·중복 여부) 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저축지원 조세지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금 등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 등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및 조합 등 예탁금 등이 운용 중이며, 이들은 일부 중복가입이 가능
 - 이러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사업들은 정책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8개 상품과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은 중복가입이 가능
 - 국세청 근로소득 분위별 납세자료(10,000명)상 2개 이상 중복가입자 비중은 15.2%이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금융소득 비중은 35.8%로 소수의 가입자가 큰 금액을 중복가입한 상황

- ISA와 중복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가입한 저축자가 51.6%로 가장 높으며, ISA와 중복가입한 저축자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그 예탁금 전체 금융소득의 57.9%로 가장 높게 분석됨
 - 또한 ISA 가입자 중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자는 각각 10.2%와 9.5%로 나타남
 - 조합 등 출자금이나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및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가입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계좌와 중복가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

-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등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 매칭지원하고 있어 본 제도와 중복성은 일부 존재
 - 재정지출사업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자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에 비해 제한적
 - 이런 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 본 제도와 중복수혜가 가능

IV. 효과성 평가

- (제도의 활용도) 본 제도의 활용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상대적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민형의 활용도는 높은 수준
 - 절대적 활용도 측면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2018년 4월 근로·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가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서민형 가입자가 전체 금액의 59.3% 수준
 - 상대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본 제도의 근로·사업소득자 가입률이 약 9.5%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 활용도는 낮으나, 서민형은 약 7.8%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가입자 특성)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 금융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저축자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본 과세특례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님
 - 결국 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은 저축자가 ISA 가입을 많이 하지만, ISA 가입금액은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어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저축효과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신규 저축 응답자가 48.2% (3.30점), ISA를 통한 저축의 증가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52.6%(3.43점)로 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본 제도를 통해 신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소득과 자산수준이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ISA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금융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고, ISA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물자산은 많지만 금융자산이 적은 가입자가 신규 저축으로 본 과세 특례에 가입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 또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60.3% (3.54점),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54.5%(3.51점)로 재산형성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에는 자산이나 소득수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본 과세특례가 응답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음
 - 다만,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다고 인식하는 가입자일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다른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에 가입한 저축자일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V. 결론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부개입의 필요성과 근거는 충분하고, 저축지원과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수준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직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현행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 중복가입자와 이로 인한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사·중복성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편입자산의 운용, 손익통산 및 중도인출제도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합모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정비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8년부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비과세한도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 변화가 서민 및 농어민의 가입형태 변화에 미친 영향은 추후에 살펴볼 필요
 - 서민 및 농어민의 가입형태 변화에는 시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가입대상자를 한시적 휴직자와 최근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현행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가입대상자를 당해 또는 직전연도에 한정하고 있으나 휴직자 또는 경력단절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자 또는 한시적 퇴직자까지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이 가능

- 또한 현행 과세특례제도가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유사·중복 제도를 통합하여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건의함

목 차

I. 서 론	21
I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제도 현황	25
1. 제도의 현황	27
2. 운영 현황	30
가. 가입 현황	30
나. 가입유형별 가입 현황	34
다. 가입자의 연령별 및 성별 가입 현황	38
라. 편입자산의 현황	40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4
가. 유사 과세특례 현황	44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위상	47
4. 해외사례	48
가. 미국	48
나. 영국	55
다. 캐나다	59
라. 프랑스	61
마. 호주	63
바. 일본	66
사. 해외사례의 시사점	70
III. 타당성 분석	73
1. 정부개입 근거의 타당성	75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75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79

2. 지원대상의 적정성	81
3. 지원방식의 적정성	86
가. 과세특례방식의 적정성	86
나. 의무가입기간과 중도인출의 허용	89
다. 납입한도	91
라. 편입자산	94
마. 운용방식 유형: 신탁형과 일임형	96
바. 손익통산	97
3.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98
가. 조세지원제도와 유사·중복성 검토	98
나.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104
4. 타당성 평가 요약	110
IV. 효과성 분석	115
1. 제도의 실효성	118
가. 제도의 활용 실태 분석: 신규 가입자 및 해지자 행태를 중심으로	118
나. 절대적 활용도	122
다. 상대적 활용도	126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129
가. 개요	129
나. 자료	131
다. 분석모형	132
라. 분석 결과	134
3. 수혜자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151
가. 소득수준별 수혜자분포: ISA 가입률 기준	151
나. 소득수준별 수혜자분포: ISA 가입액 기준	153
4. 효과성 평가 요약	154
V.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57
1. 분석 결과의 요약	159

가. 타당성 분석	159
나. 효과성 분석	163
2. 제도 개선방안	165
가. 단기적 개선방안: 본 과세특례제도의 유지	165
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점진적인 유사·중복 과세특례의 통합	167
참고문헌	169
부 록	171
1. 설문조사의 개요	173
2. 설문분석의 결과	177
가. ISA 상품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177
나. ISA 상품의 가입의향	186

표 목 차

<표 II-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 유형	29
<표 II-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30
<표 II-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31
<표 II-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유형별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36
<표 II-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령별 가입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38
<표 II-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편입자산별 납입액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	41
<표 II-7> 유형별 편입자산의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43
<표 II-8>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44
<표 II-9>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45
<표 II-10>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46
<표 II-11> 주요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자 및 납입액	48
<표 II-12> 납세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한도(퇴직금 적립계획이 있는 경우)(2018)	49
<표 II-13> 납세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한도(퇴직금 적립계획이 없는 경우)(2018)	50
<표 II-14> 은퇴자금마련을 위한 저축 세액공제율 및 기준 소득(AGI)(2018)	50
<표 II-15> 납세자 유형에 따른 Roth IRA 납입한도(2018)	53
<표 II-16> 2017년 기준 IRA 가입 현황	55
<표 II-17> Adult ISAs 유형별 계좌 수 및 적립액	58
<표 II-18> Junior ISAs 유형별 계좌 수 및 적립액(2011년 11월 도입)	58
<표 II-19> TFSA 현황	60
<표 II-20> 가족계수별 보통예금저축에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62
<표 II-21> 가입 현황	66
<표 II-22> 일본 NISA 가입 현황	69
<표 III-1> 경제활동인구(2018년 4월 기준)	82
<표 III-2> 농가와 비농가의 경제활동인구 비교(2018년 4월 기준)	83
<표 III-3> 금융소득구간별 금융소득자 인원 현황(2012년 기준)	89

<표 III-4>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98
<표 III-5> ISA 가입자 중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복가입 현황 (N=10,000명, 근로소득자)	99
<표 III-6>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중복가입 현황(N=10,000명)	100
<표 III-7>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102
<표 III-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요건	104
<표 III-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105
<표 III-10>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107
<표 IV-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비교	123
<표 IV-2> 가입유형별 계좌당 연납입액(연환산 납입액)	125
<표 IV-3> 연금계좌(세액공제) 가입률	127
<표 IV-4>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좌당 가입액	129
<표 IV-5>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 기술통계량	135
<표 IV-6> ISA 가입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136
<표 IV-7>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	137
<표 IV-8>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 한계효과	138
<표 IV-9>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	139
<표 IV-10>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 기술통계량	140
<표 IV-11>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141
<표 IV-12>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Heckman Selection Model)	142
<표 IV-13>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Random Effect Tobit Model)	142
<표 IV-14> 설문응답자의 저축효과 인식 분석 결과	144
<표 IV-15> 저축효과 인식의 한계효과	145
<표 IV-16> 설문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 분석 결과	146
<표 IV-17> 설문응답자의 저축효과와 자산이동효과 인식이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48
<표 IV-18> 저축효과와 자산이동효과 인식이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149
<표 IV-19> 응답자의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150

<부 록>

<부표 1> 조사 설계	173
<부표 2> 연령대별 ISA 가입계좌 수 및 인구 현황(2017년 기준)	174
<부표 3> 서울/경기/인천 지역 ISA 가입자 현황(추정)(2017년 기준)	174
<부표 4> 수도권 지역 ISA 가입자 표본배분(700명 기준)	175
<부표 5> 수도권 지역 ISA 미가입자 표본배분(안)(300명 기준)	175
<부표 6> 조사내용	175
<부표 7> 응답자 특성	176
<부표 8>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평균 불입액	178
<부표 9> 저축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1)	188
<부표 10> 저축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2)	189
<부표 11>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1)	190
<부표 12>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2)	191
<부표 13> 자산이동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	192

그림 목 차

[그림 II-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 추이	32
[그림 II-2] 월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액 추이	33
[그림 II-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업권별 가입자의 추이	33
[그림 II-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업권별 가입금액 추이	34
[그림 II-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별 가입자의 추이	36
[그림 II-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유형별 납입액의 추이	37
[그림 II-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령별 가입 현황의 추이	39
[그림 II-8] 유형별 성별 가입 현황(2018년 4월 기준)	40
[그림 II-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자산별 납입액의 추이	42
[그림 II-10] 2018년도(전망치)의 조세지출규모	47
[그림 III-1] 주요국의 총저축률 비교	77
[그림 III-2] 주요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81
[그림 III-3] 업권별 계좌당 평균 납입액 추이	93
[그림 III-4] 연령대별 일임형 ISA 가입실적	97
[그림 IV-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및 해지 추이	119
[그림 IV-2] 해지 대비 신규 가입건수 및 금액 비율	120
[그림 IV-3] 신규 가입률과 해지율의 추이	121
[그림 IV-4] 납입액 구간별 가입자 수와 비중(2017. 1월~2018. 4월 평균)	124
[그림 IV-5] 납입액 구간별 계좌당 납입액(2017. 1월~2018. 4월 평균)	126
[그림 IV-6]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률 비교	128
[그림 IV-7] 근로소득자의 분위별 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 분포	152
[그림 IV-8] 사업소득자의 분위별 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 분포	153
[그림 IV-9] 설문응답자의 소득구간별 ISA 가입금액의 분포	153
[그림 IV-10] 설문응답자의 자산구간별 ISA 가입액의 분포	154

<부 록>

[부그림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비율	177
[부그림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	178
[부그림 3] ISA 상품에 대한 인식	179
[부그림 4] ISA 상품 가입상황 및 동기	180
[부그림 5] ISA 상품의 혜택 및 가입의향	181
[부그림 6] ISA 상품 가입 금융기관	181
[부그림 7] ISA 상품 운영방식	182
[부그림 8] ISA 편입 상품(신탁형인 경우)(복수응답)	182
[부그림 9] ISA 상품 가입자격	183
[부그림 10] ISA 상품 가입유형	183
[부그림 11] ISA의 개선방향	184
[부그림 12] ISA의 자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	184
[부그림 13] ISA의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185
[부그림 14] ISA 상품 가입기간(해지자 기준)	185
[부그림 15] ISA 상품을 해지한 가장 큰 이유(해지자 기준)	185
[부그림 16] ISA 상품 재가입의향 여부(해지자 기준)	186
[부그림 17] ISA의 인지정도	186
[부그림 18] ISA 상품에 미가입한 가장 큰 이유	187
[부그림 19] ISA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	187

I. 서론



I. 서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8년도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본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2018년 12월 31일)을 앞두고 동 제도의 연장, 재설계,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행
 - 2017년 조세지출규모: 추정곤란(2015년 ISA 신설 당시 5,500억원 추정)

-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 등의 재산형성지원 등을 위한 종합개인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가 본 심층평가의 대상
 - 가입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
 - 다만, 신규 취업자 등은 가입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을 허용하고,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과세특례: 2018년 12월 31일까지 ISA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각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특례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본 과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먼저 ISA 과세특례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본 후, 정책목적과 대상, 그리고 지원 방식의 적절성을 위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검토함
 - 특례제도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ISA 과세특례제도의 정책목표 달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과 필요한 자료의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함

- 이외에 특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 분석과 함께 제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함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현황과 해외사례를 검토함
 - 제3장은 본 과세특례의 타당성 평가로서 정부개입 근거와 타당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지원방식의 적정성 그리고 타 과세특례제도 및 재정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함
 - 제4장에서는 효과성 평가부분으로 본 과세특례의 활용도(절대적, 상대적 활용도), 경제적 효과로서 저축효과, 자산이동효과 및 자산형성지원효과 그리고 형평성을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부록>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및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분석을 기술함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제도 현황



II.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 (정책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일정 금액을 비과세 및 감면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제공하는 것
 - 대부분의 국가는 저축과 투자 장려를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 현재 저축 및 투자 장려를 위한 과세특례제도 8개와 「소득세법」상 대표적인 지원제도 2개가 운용 중
 - 「조세특례제한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포함한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8개
 - 「소득세법」: 연금계좌 세액공제, 장기저축성 보험차익의 비과세제도 등 2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 개인사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을 유인 및 장려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여러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정책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가 아닌 자로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농어민
 - (조특 §91조의18①1) 직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조특 §91조의18①2) 직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조특 §91조의18①3) 농어민
 - 신규 취업자 및 신규 개인소득자 포함

- (과세특례의 내용) 2015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하여¹⁾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16년 3월부터 실질적인 가입이 가능해졌다.

에 대해서는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이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 2015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시 당시 비과세한도는 일반형·농어민 200만원, 서민형(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 250만원
 - 농어민형이 서민형에 비해 비과세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조특 §91조의18②1) 2017년 개정으로 비과세한도가 확대되었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인 서민과 농어민이 400만원으로 확대
 - 농어민형의 비과세한도가 서민형과 동일하게 개정되어 비과세혜택이 동일해졌으나 타 과세특례제도(농어가목돈마련저축)와 중복문제는 존재

□ (과세특례의 수혜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요건

- (조특 §91조의18③) 1인 1계좌로 신탁업자와 특정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 (조특 §91조의18③3) 편입 가능 금융자산: 예금, 적금, 예탁금, 집합투자증권, 증권, 증서
 - 펀드(집합투자증권, ETF, REITs 등), 파생결합증권(ELS, DLS, ELB, DLB), 예금(예탁금, 예치금, RP 등)
 - 아직까지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및 보험 등은 편입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조특 §91조의18③4) 의무가입 기간: 5년
 -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적은 청년형, 서민형(총급여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자산형성지원 지원금 수혜자는 3년으로 단축
- (조특 §91조의18③5) 납입한도: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원
 - 재형저축 비과세특례와 장기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를 통합하여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들 상품과의 중복수혜 문제는 해결
 - 기존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간 납입한도를 통합하여 관리하며, 연간 2천만원에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제외

- (과세특례의 특징)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일정 기간 경과 후 순이익 기준으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
 -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 편입 금융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
 - 높은 가입한도(연 2천만원, 총 1억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 가능, 기존 소장펀드·재형저축 가입자격(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보다 완화
 - 운용방식에 따라 ① 일임형 ISA, ② 신탁형 ISA로 구분
 - 가입자는 둘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표 II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제도 유형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특징	구체적 운용지시 필수 →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	구체적 운용지시 없어도 가입 가능 →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상품
모델포트폴리오 제시	금지 (별도 자문 형태로는 가능)	허용
편입상품 교체	투자자 지시 필수	일임업자에 위임 가능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중도인출) 2018년부터 계약기간의 만료 전 납입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
 - 단, 납입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 (만기시 해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만기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 부득이한 사유란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 (감면액) ISA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조세지출규모 추정이 곤란하며, 2015년 신설 당시 추정 조세지출규모는 5,500억원으로 추정(국회예산정책처, 2017)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세특례제도는 2015년부터 신설되어 2016년 3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최초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2021년에 추정 가능하며, 따라서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조세지출규모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감면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의 추정방식으로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2. 운영 현황

가. 가입 현황

- 2018년 4월 말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누적가입자는 약 209.8만명이며 누적납입액은 약 4조 6,800억원을 나타냄
 - 총누적가입자 중 91.98%인 약 193만명이 은행에 가입하였으며, 이어 8%인 약 16.8만명이 증권사에 가입
 - 또한 총누적납입액 중 83.34%인 약 3조 9,005억원이 은행이며, 증권사는 16.67%인 약 7,789억원을 나타냄
 - 보험사 누적가입자와 누적납입액은 각각 0.03%, 0.01%로 미미한 수준인데, 이는 2018년 4월 말 현재 34개 ISA 취급기관 중 보험사는 2개사이며, 신탁형 ISA만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입자 수와 납입액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

<표 II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단위: 명, %, 억원, 만원)

	누적가입 실적				
	가입자 수	비중	납입액	비중	가입자당(만원)
은행	1,929,733	91.98	39,005	83.34	202.1
증권	167,772	8.00	7,789	16.64	464.3
보험	600	0.03	6	0.01	100.0
합계	2,098,105	100.00	46,800	100.00	223.1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에서 전체 누적가입자 중 신탁형의 누적가입자가 88.9%인 약 187만명이며, 일임형의 누적가입자는 11.1%인 약 23만명으로 나타남
 - 또한 신탁형의 누적납입액은 87.3%인 4조 865억원이며 일임형은 12.7%로 5,935억원 수준
 - 이렇게 일임형 ISA의 가입실적이 낮은 이유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을 선호하며, 특히 편입자산 중 예·적금 형태로 전체 가입액의 약 64%를 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투자하는 형태인 일임형 ISA가 상대적으로 가입자와 납입액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

<표 II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유형별 가입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단위: 명, %, 억원, 만원)

유형	누적가입 실적				
	가입자 수	비중	납입액	비중	가입자당(만원)
신탁형	1,865,856	88.9	40,865	87.3	219.0
일임형	232,249	11.1	5,935	12.7	255.5
합계	2,098,105	100.0	46,800	100.0	2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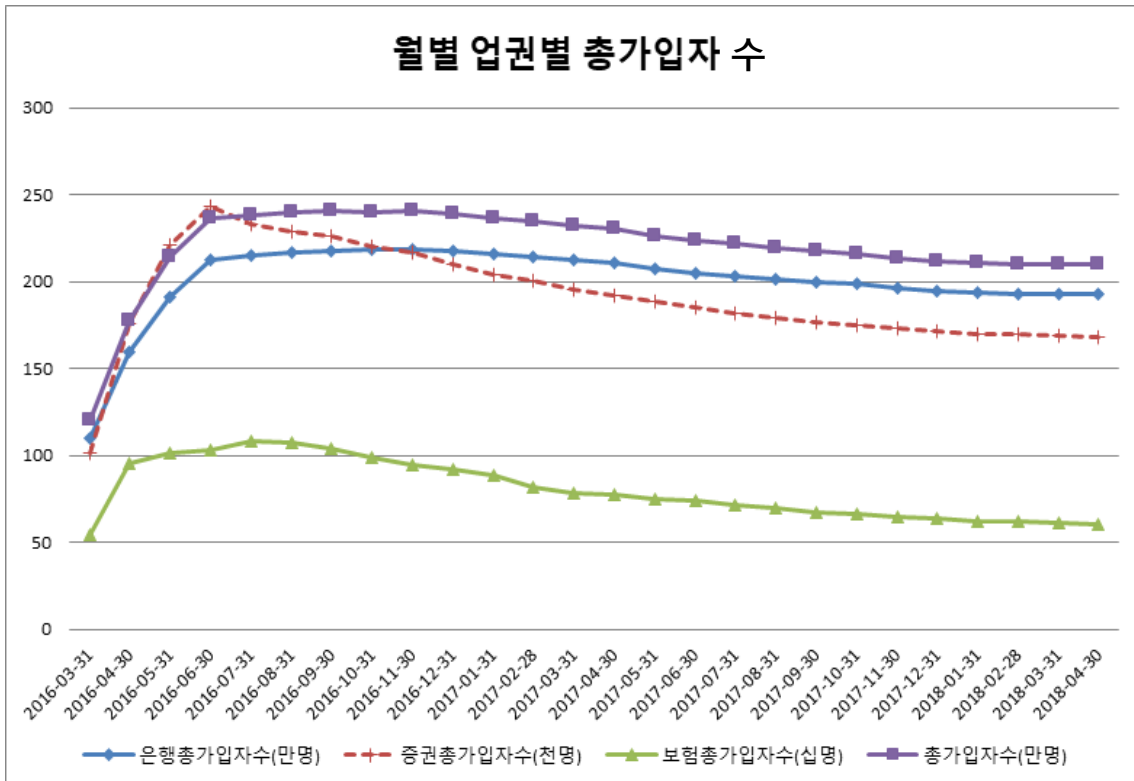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업권별 가입자 추이를 보면, 전체적인 누적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
 - 은행권 가입자 수는 2016년 말까지 증가하다가 2017년 1월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권사 가입자 수는 2016년 6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은행 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
 - 특히 2016년 7월부터는 은행권 가입자의 감소폭보다 증권사 가입자의 감소폭이 더 큰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²⁾
 - 또한 보험사 가입자 수도 2016년 8월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

2) [그림 II-1]에서 은행권 가입자와 증권사 가입자의 단위가 다름에 주의해야 함

[그림 II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 추이

(단위: 만명, 천명, 십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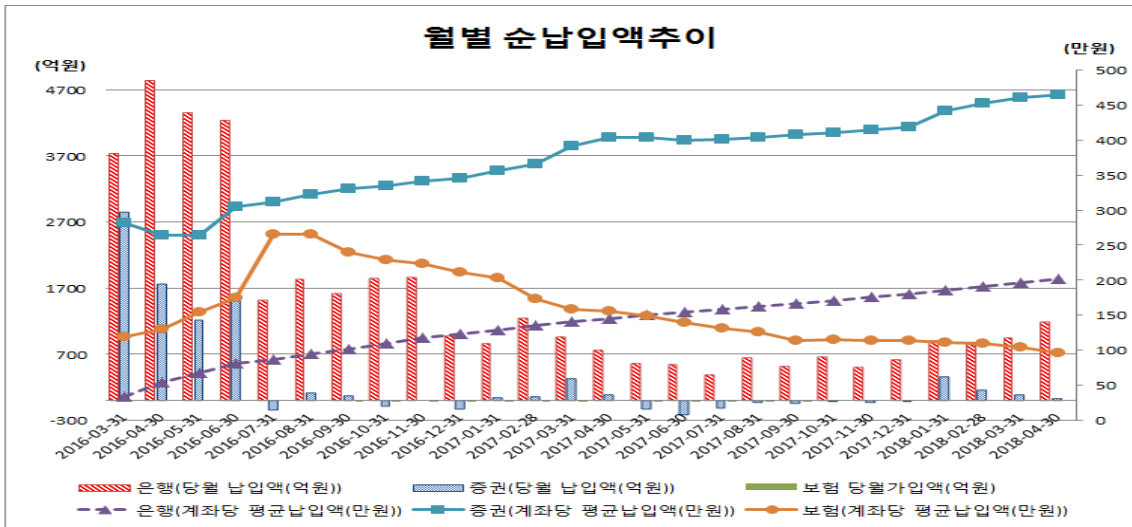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월별 순납입액³⁾ 추이에서 2016년 7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월별 납입액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부터는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6년 6월 은행의 순납입액이 4,248억원이었던 것이 7월에 64.1%가 감소한 1,524억원이었으며, 2016년 12월 973억원, 2017년 12월 62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8년 4월에 1,195억원을 나타냄
 - 증권사의 월별 순납입액은 2016년 6월 1,557억원이었던 것이 7월에 108.9%가 감소한 -138억원이었고, 이후 2016년 12월에는 -135억원, 2017년 12월 -6억원 그리고 2018년 4월 32억원을 보임
 - 특히 2017년 말까지 지속적인 월 순납입액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8년 비과세한도 상향 조정, 중도인출제도 도입 및 의무가입기간 단축 등으로 납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3) 여기서 순납입액은 추가 납입액과 해지(인출)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그림 II -2] 월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액 추이

(단위: 억원,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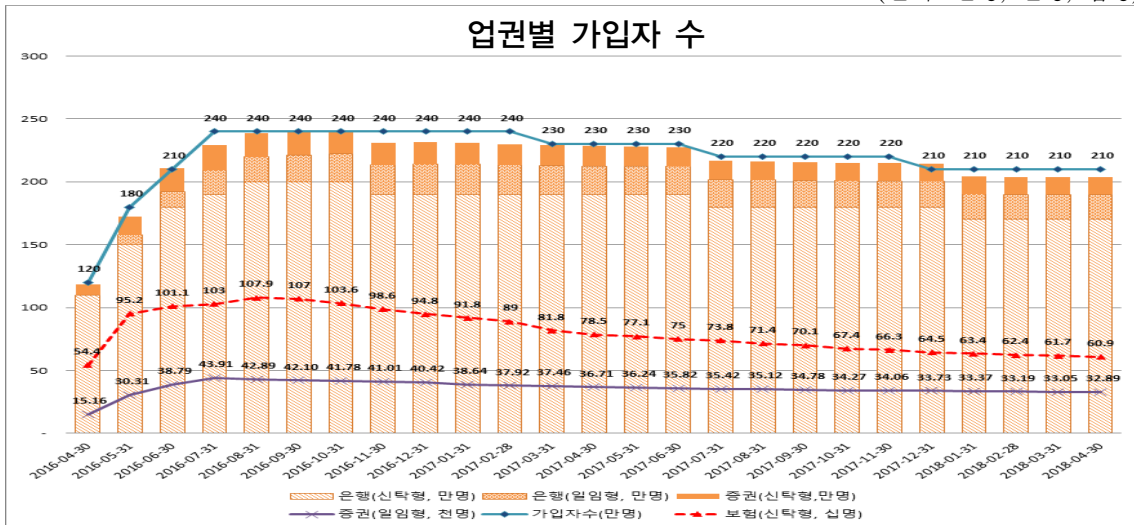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월별 업권별 가입자 추이에서 전체적으로 2016년 6월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9월부터 감소 추세
 - 은행권의 경우, 2016년 6월까지 240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다가 2017년 1월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증권사의 경우에도 2016년 6월까지 약 43.9천명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그림 II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업권별 가입자의 추이

(단위: 만명, 천명, 십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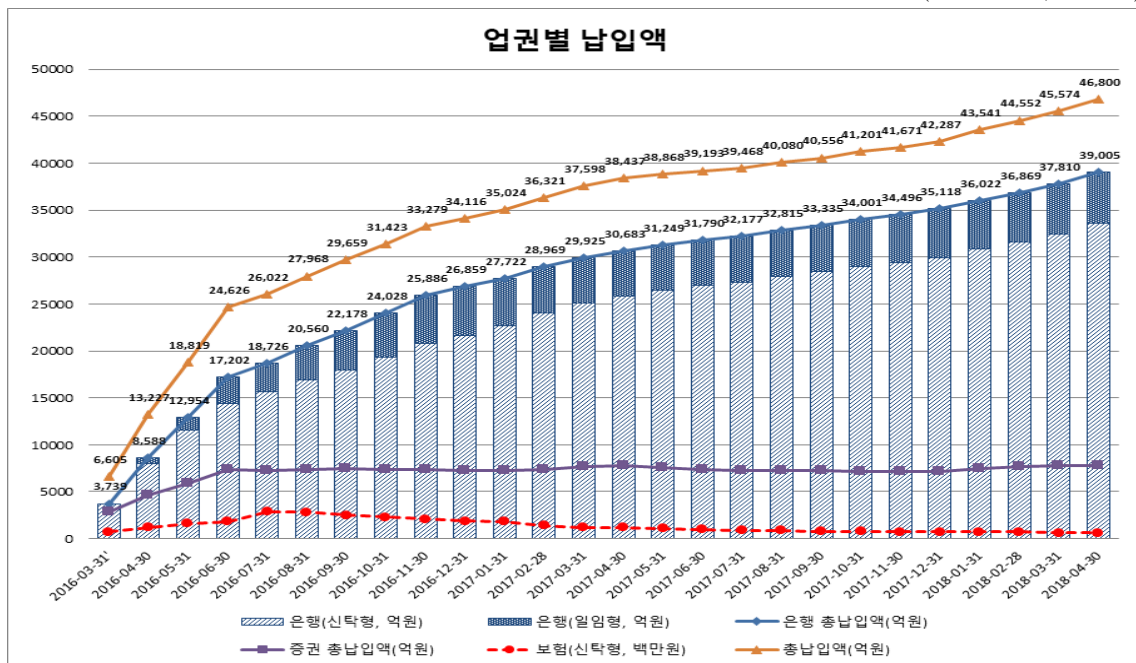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업권별 납입액의 추이에서 총납입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증가 정도(증가율)는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추세
 - 총납입액의 증가 추세는 은행권 납입액의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증권사 납입액은 큰 변동폭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
 - 특히 은행권의 납입액 중 신탁형 비중은 2016년 5월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일임형 비중이 증가
 - 보험사 납입액은 2016년 7월 이후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 큰 폭의 감소 추세

[그림 II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업권별 가입금액 추이

(단위: 억원, 백만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나. 가입유형별 가입 현황

-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 등 가입유형별 가입자 수와 가입액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가입유형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용도를 파악하고자 함
- 2018년 4월 말 현재 가입자 유형별 현황에서 서민형이 66.6%인 약 139.8만명,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이 31.8%인 약 66.6만명 그리고 근로·사업소득자 청년형이 1.5%인 약 3.2만명 순

- 서민형 가입자는 2017년 3월 62.3%에서 2017년 말 66.2%로 증가하였고, 2018년 3월 66.6% 수준까지 증가
 - 유형별 가입자 추이에서와 같이, 2017년 3월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일반형 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한 가입자를 서민형으로 일괄 유형 재분류하여 2017년 2월의 전체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자 비중이 42.0%에서 2017년 3월에 62.3%로 증가
 - 이때,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대상자 중 일반형으로 가입한 약 100만명을 서민형으로 일괄 전환
 - 반면에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의 2017년 3월의 전체 가입자 중 비중이 35.6%였던 것이 2017년 말 32.1%까지 감소하였고 2018년 3월 현재 31.8% 수준
 - 특히 2017년 3월 서민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일반형 가입자가 서민형 유형으로 재분류되었으나 이후에는 그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
- 가입자 유형별 납입액도 서민형이 59.2%인 약 2조 7,707억원,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이 38.8%인 약 1조 8,143억원 그리고 근로·사업소득자 청년형이 1.6%인 730억원 순
- 그러나 가입자 1인당 가입액은 소수의 가입자인 농어민의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⁴⁾가 1,111만원으로 가장 크며, 이어 농어민 일반형이 1,153만원 그리고 농어민 435만원 수준
 - 이렇게 농어민의 1인당 가입액이 큰 이유는 다른 유형의 가입자가 상당 부분 소액가입자이며, 농어민이 농협, 수협 및 축협 등 조합의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있어 해당 조합에 고액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
 - 이에 반해, 서민형은 가입자 1인당 198만원이며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 272만원, 근로·사업소득자 중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가 258만원 수준
 - 이러한 결과는 서민형 가입자 중 소액 가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

4) 여기서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희망키움통장 I·II,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부여되는 자를 의미함. 희망키움 I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이며, 희망키움II 가입대상은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임. 또한, 청년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만 15~34세)이 대상임

<표 II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유형별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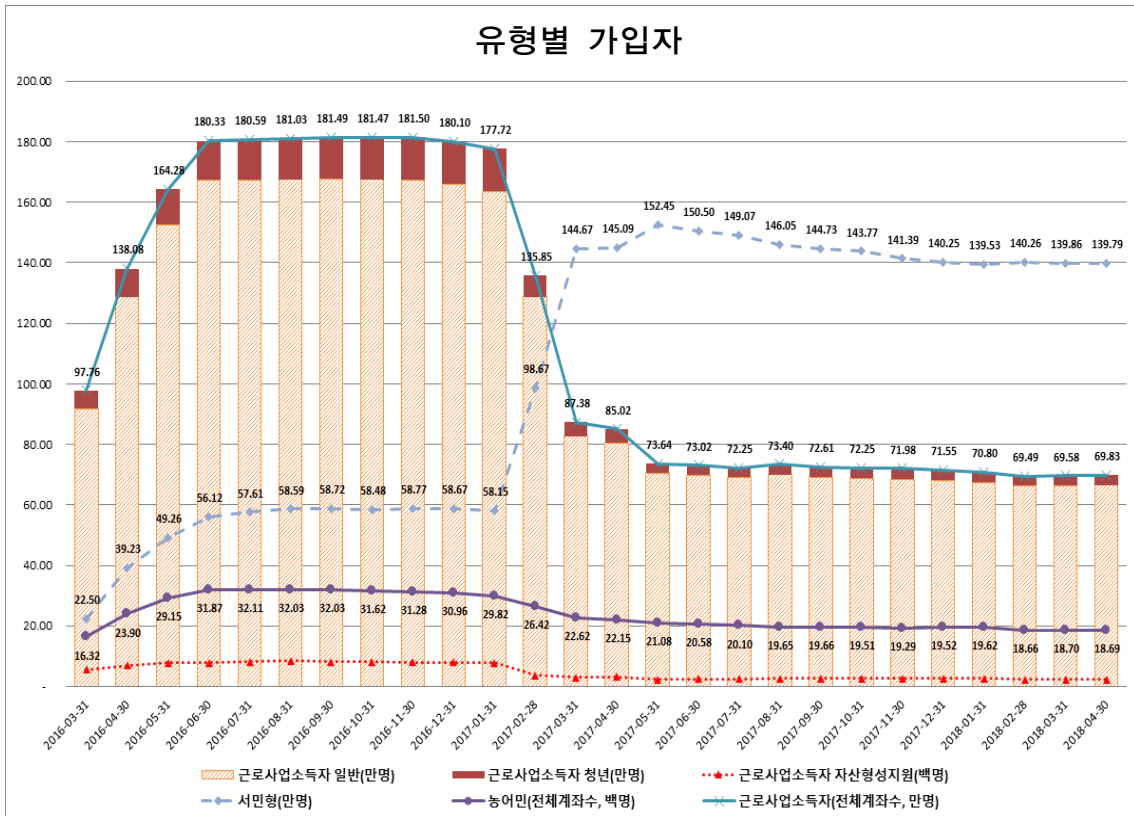
(단위: 명, %, 억원, 만원)

구분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서민형
	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가입자 수 (비중)	666,264 (31.76)	31,803 (1.52)	233 (0.01)	1,848 (0.09)	23 (0.00)	9 (0.00)	1,397,925 (66.63)
납입액 (비중)	18,143 (38.77)	730 (1.56)	6 (0.01)	213 (0.46)	1 (0.00)	1 (0.00)	27,707 (59.20)
가입자당	272.3	229.5	257.5	1,152.6	434.8	1,111.1	198.2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그림 II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유형별 가입자의 추이

(단위: 만명, 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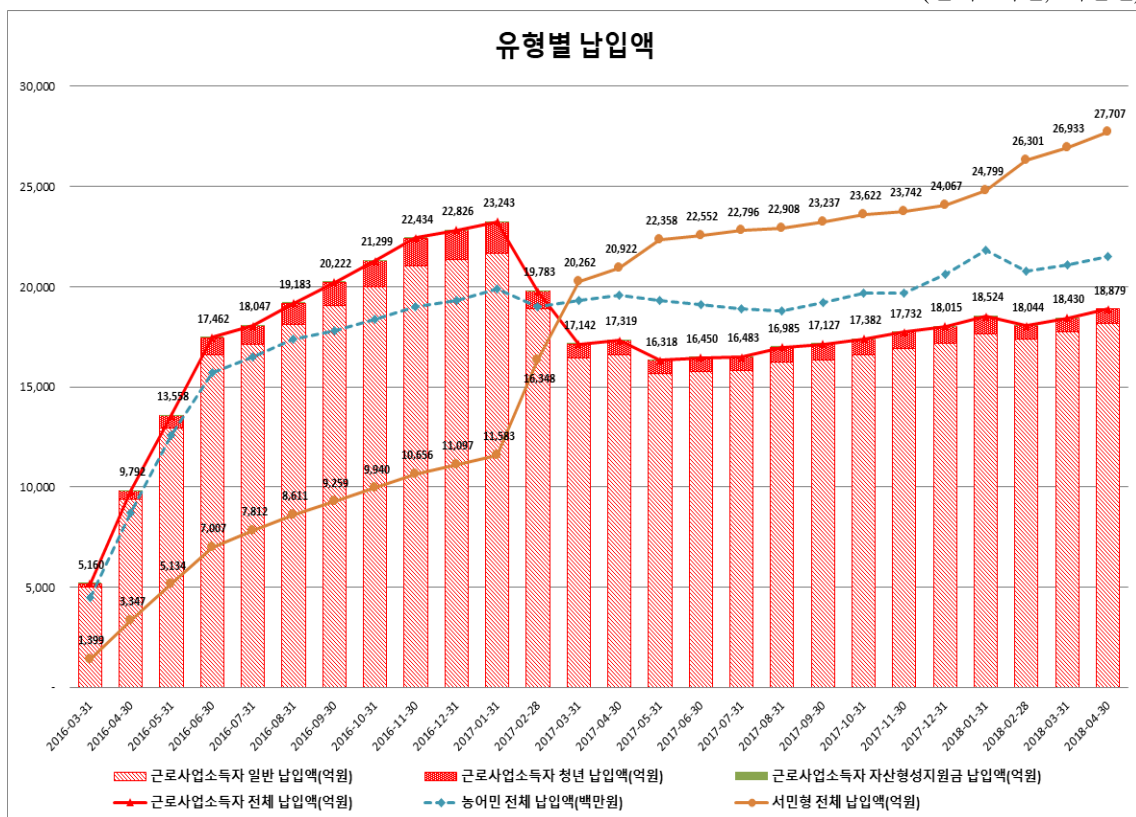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가입자 유형별 납입액은 전체적으로 2017년 2월에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일괄 유형분류가 있었던 2017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민형 납입액이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근로·사업소득자 전체 납입액과 농어민 납입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 추세

- 서민형 전체 납입액은 2017년 3월 2조 262억원에서 2017년 12월 2조 4,067억원, 2018년 4월 2조 7,707억원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반면에 근로·사업소득자 전체 납입액은 2017년 5월 1조 6,318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 12월 1조 8,015억원, 2018년 4월 1조 8,879억원까지 증가
- 또한 농어민 전체 납입액은 2017년 8월 약 188억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017년 12월 약 206억원, 2018년 4월 약 2조 1,500억원까지 증가
- 이러한 추세는 2017년 3월 일반형 중 서민형으로 일괄 유형 재분류한 후, 서민형 가입자와 납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
- 전체적인 가입자나 납입액의 증가가 아닌 단순 유형 분류로 인한 현상이며, 이 유형 분류는 제도 시행 초기 금융기관에 일단 일반형 계좌를 개설하고, 국세청을 통해 실제 서민형 가입조건의 충족을 확인받아, 일괄 서민형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그림 II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유형별 납입액의 추이

(단위: 억원, 백만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다. 가입자의 연령별 및 성별 가입 현황

- 2018년 4월 말 가입자 연령별 가입 현황에서, 가입자 수는 40대가 29.7%(약 62만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납입액은 50대가 31.2%(약 1조 4,617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입자는 40대가 29.7%, 30대 27.8%, 50대 22.6%이며 20대가 10.8%, 60대 이상 9.1% 순을 나타내는 반면, 납입액은 50대가 31.2%, 40대 24.9%, 60대 이상 20.4%이며 30대가 14.6%, 20대 8.8% 순
 - 50대 이상은 전체 가입자 중 비중에 비해 전체 납입액 중 비중이 높은 반면, 40대 이하 연령대에서는 가입자와 납입액은 전체 가입자 대비 그리고 전체 납입액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이는 가입자 1인당 납입액이 50대 308만원, 60세 이상 50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금융자산이 많은 50대 및 60대가 일반과세 금융상품에서 ISA로 자산을 이동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표 II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령별 가입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단위: 명, 억원, 만원, %)

구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신탁형	가입자 (비중)	444 (0.0)	202,979 (10.9)	519,258 (27.8)	551,897 (29.6)	420,766 (22.6)	170,512 (9.1)
	납입금액 (비중)	18 (0.0)	3,707 (9.1)	6,073 (14.9)	10,089 (24.7)	12,616 (30.9)	8,362 (20.5)
	가입자당	405.4	182.6	117.0	182.8	299.8	490.4
일임형	가입자 (비중)	146 (0.1)	22,683 (9.8)	64,171 (27.6)	70,308 (30.3)	54,418 (23.4)	20,523 (8.8)
	납입금액 (비중)	4 (0.1)	423 (7.1)	753 (12.7)	1,554 (26.2)	2,001 (33.7)	1,200 (20.2)
	가입자당	274.0	186.5	117.3	221.0	367.7	584.7
합계	가입자 (비중)	590 (0.0)	225,662 (10.8)	583,429 (27.8)	622,205 (29.7)	475,184 (22.6)	191,035 (9.1)
	납입금액 (비중)	22 (0.0)	4,130 (8.8)	6,826 (14.6)	11,643 (24.9)	14,617 (31.2)	9,562 (20.4)
	가입자당	372.9	183.0	117.0	187.1	307.6	500.5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본 제도의 가입대상이 만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20세 미만 가입자는 단 590명으로 가입액은 22억원 수준에 불과하나 가입자 1인당 납입액은 약 373만원으로 높은 수준

-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또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적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적을 수 있지만, 가입자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보다 ISA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가입하여 1인당 납입액이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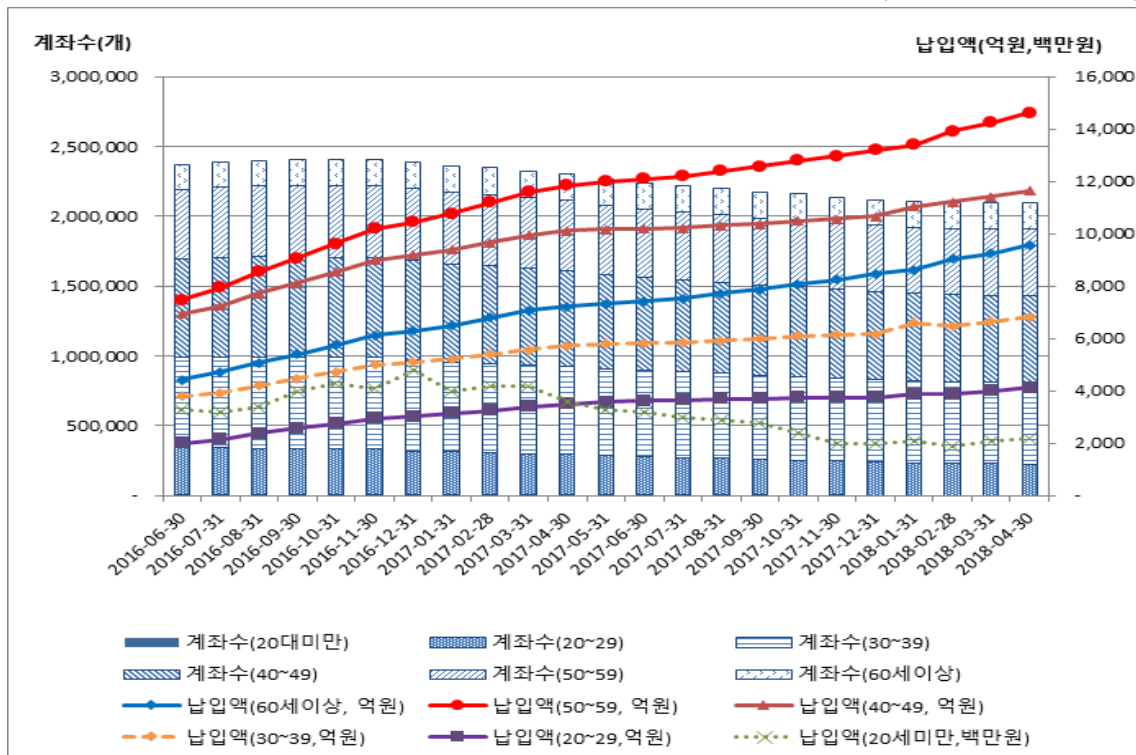
□ 가입자 연령별 가입추이에서는 40대 이상 연령대의 가입자는 2016년 6월 이후 월별 변동폭이 적은 반면, 30대 이하 연령대의 가입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16년 11월 이후 50대의 납입액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이어 60세 이상의 납입액도 40대 이하의 납입액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임

○ 그러나 40대 이하의 납입액은 50대 이상의 납입액에 비해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20대 미만의 납입액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그림 II -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령별 가입 현황의 추이

(단위: 개, 억원,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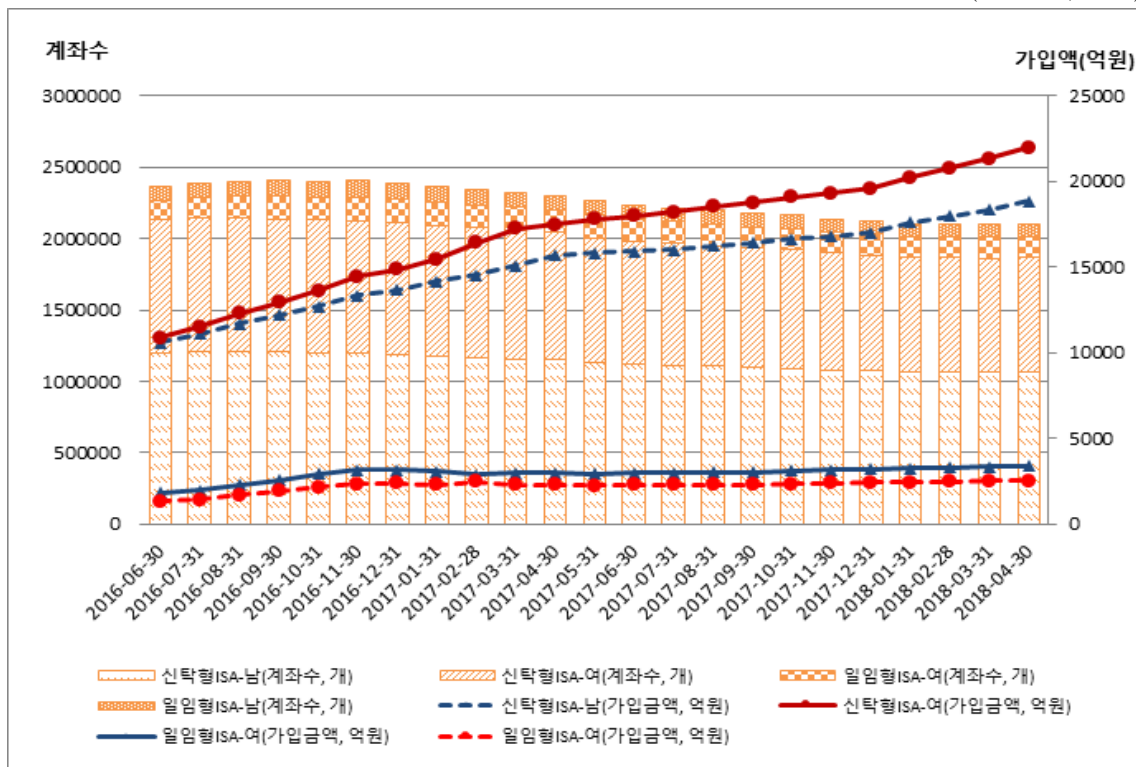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연령별 가입자 수와 납입액 추이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일임형에 비해 신탁형에 많이 가입하며, 신탁형은 여성이, 일임형은 남성의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신탁형 가입금액에 대한 여성의 비중이 2016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임형 가입금액에 대한 남성의 비중은 큰 변동이 없음

[그림 II -8] 유형별 성별 가입 현황(2018년 4월 기준)

(단위: 개, 억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라. 편입자산의 현황

- 2018년 4월 말 신탁형과 일임형 전체의 편입자산 현황에서 예적금 등이 63.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파생결합증권 16.21%, 채권형펀드 6.8% 순
- 채권형펀드는 6.8%, 주식형펀드 4.4% 그리고 혼합형펀드는 2.83%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펀드의 납입액이 큼
 - 주식형펀드는 2017년 8월부터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채권형펀드와 혼합형펀드는 대체로 일정 수준의 비중을 유지

-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예적금 등 71.53%와 파생결합증권 10.09%,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46.17%와 예적금 등 24.72% 그리고 보험사는 예적금 등 50%와 채권형펀드 33.33%가 주를 이룸
- 이 결과는 기존 은행 이용자들은 은행을 통해서 ISA에 가입은 하되, 다양한 편입자산(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보다는 예·적금에 편중된다는 것으로 ISA의 원래 도입취지와는 다른 현상으로 볼 수 있음

<표 II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편입자산별 납입액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보험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예적금 등	28,469	71.53	2,008	24.72	3	50.00	30,480	63.60
RP	73	0.18	573	7.05	0	0.00	646	1.35
주식형펀드	1,519	3.82	590	7.26	0	0.00	2,109	4.40
국내	442	1.11	199	2.45	0	0.00	641	1.34
해외	1,077	2.71	391	4.81	0	0.00	1,468	3.06
혼합형펀드	1,075	2.70	281	3.46	0	0.00	1,356	2.83
국내	732	1.84	225	2.77	0	0.00	957	2.00
해외	343	0.86	56	0.69	0	0.00	399	0.83
채권형펀드	3,081	7.74	176	2.17	2	33.33	3,259	6.80
국내	2,663	6.69	93	1.15	1	16.67	2,757	5.75
해외	418	1.05	83	1.02	1	16.67	502	1.05
MMF	1,143	2.87	49	0.60	0	0.00	1,192	2.49
ETF등 상장펀드	144	0.36	474	5.84	0	0.00	618	1.29
파생형	86	0.22	39	0.48	0	0.00	125	0.26
기타펀드	191	0.48	182	2.24	1	16.67	374	0.78
파생결합증권	4,017	10.09	3,750	46.17	0	0.00	7,767	16.21
합계	39,798	100	8,122	100	6	100	47,92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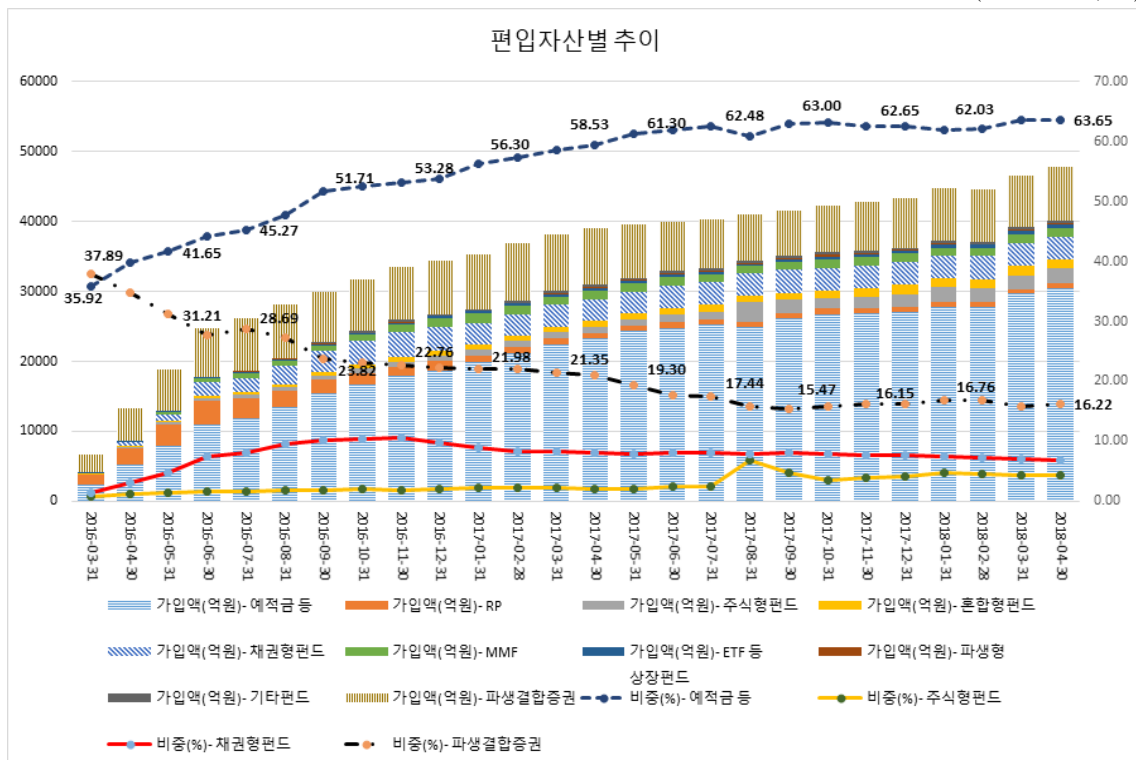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 월별 편입자산별 납입액 추이에서 2016년 3월 파생결합증권의 납입액이 예적금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예·적금 등의 가입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반면, 파생결합증권의 비중은 점진적인 감소 추세
- 이 결과는 은행과 증권사 모두 예·적금과 파생결합증권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여주며, 다양한 편입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토록 하는 ISA의 도입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유형별 편입자산의 현황에서 신탁형 중에서는 예·적금 등의 납입액이 은행 83.02%(2조 8,439억원), 증권사 25.83%(1,952억원) 및 보험사 50%(3억원)이며, 일임형의 경우, 은행은 채권형펀드가 44.93%(국내 38.7%+해외 6.23%),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이 31.03%로 가장 높은 비중
 - 신탁형의 경우, 은행에서 예·적금 등이 83.02%인 2조 8,439억원, 다음으로 파생결합증권이 11.73%로 4,017억원이고,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이 47.3% 정도인 3,575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이어 예·적금 등이 25.83%인 1,952억원 순
 - 일임형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채권형펀드 44.93%(2,490억원) 다음으로 MMF가 20.39%로 1,130억원, 주식형펀드가 18.68%로 1,035억원 순이며,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 31.03%(175억) 다음으로 주식형펀드가 17.73%로 100억원, 채권형펀드가 11.17%로 63억원, 예적금 등이 9.93% 56억원 순
 - 이러한 편입자산의 구성 현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들이 신탁형인 경우에는 예·적금 등 및 파생결합증권 그리고 일임형인 경우에는 채권형펀드, MMF 및 주식형펀드를 통한 자산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II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자산별 납입액의 추이

(단위: 억원, %)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표 II -7> 유형별 편입자산의 현황(2018년 4월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은행		증권		보험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신 탁 형	예적금 등	28,439	83.02	1,952	25.83	3	50.00	30,394	72.68
	RP	0	0.00	553	7.32	0	0.00	553	1.32
	주식형펀드	484	1.41	490	6.48	0	0.00	974	2.33
	국내	139	0.41	159	2.10	0	0.00	298	0.71
	해외	345	1.01	331	4.38	0	0.00	676	1.62
	혼합형펀드	503	1.47	238	3.15	0	0.00	741	1.77
	국내	456	1.33	195	2.58	0	0.00	651	1.56
	해외	47	0.14	43	0.57	0	0.00	90	0.22
	채권형펀드	591	1.73	113	1.50	2	33.33	706	1.69
	국내	518	1.51	48	0.64	1	16.67	567	1.36
	해외	73	0.21	65	0.86	1	16.67	139	0.33
	MMF	13	0.04	11	0.15	0	0.00	24	0.06
	ETF등상장펀드	119	0.35	437	5.78	0	0.00	556	1.33
	파생형	17	0.05	26	0.34	0	0.00	43	0.10
	기타펀드	73	0.21	163	2.16	1	16.67	237	0.57
	파생결합증권	4,017	11.73	3,575	47.30	0	0.00	7,592	18.15
소계	34,256	100.00	7,558	100.00	6	100.00	41,820	100.00	
일 입 형	예적금 등	30	0.54	56	9.93	0	0.00	86	1.41
	RP	73	1.32	20	3.55	0	0.00	93	1.52
	주식형펀드	1,035	18.68	100	17.73	0	0.00	1,135	18.59
	국내	303	5.47	40	7.09	0	0.00	343	5.62
	해외	732	13.21	60	10.64	0	0.00	792	12.97
	혼합형펀드	572	10.32	43	7.62	0	0.00	615	10.07
	국내	276	4.98	30	5.32	0	0.00	306	5.01
	해외	296	5.34	13	2.30	0	0.00	309	5.06
	채권형펀드	2,490	44.93	63	11.17	0	0.00	2,553	41.81
	국내	2,145	38.70	45	7.98	0	0.00	2,190	35.87
	해외	345	6.23	18	3.19	0	0.00	363	5.94
	MMF	1,130	20.39	38	6.74	0	0.00	1,168	19.13
	EIF 등 상장펀드	25	0.45	37	6.56	0	0.00	62	1.02
	파생형	69	1.25	13	2.30	0	0.00	82	1.34
	기타펀드	118	2.13	19	3.37	0	0.00	137	2.24
	파생결합증권	0	0.00	175	31.03	0	0.00	175	2.87
소계	5,542	100	564	100	0	0	6,106	100.00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검색일자: 2018. 5. 25.)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가. 유사 과세특례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저축지원’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번호는 10번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저축지원 분야 조세특례의 감면액과 비중은 2016년 1조 5,115억원(4.04%), 2017년 1조 5,008억원(3.88%) 그리고 2018년에도 1조 5,878억원(3.99%)으로 평균 약 4% 수준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표 II -8>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22,426	5.99	24,911	6.44	26,791	6.73
2	연구개발	24,976	6.67	27,108	7.01	26,709	6.71
3	국제자본거래	27	0.01	33	0.01	34	0.01
4	투자촉진	16,397	4.38	12,195	3.15	10,048	2.52
5	고용지원	3,619	0.97	5,339	1.38	6,421	1.61
6	기업구조조정	1,135	0.30	1,209	0.31	1,286	0.32
7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8	지역균형발전	20,071	5.36	23,391	6.05	22,950	5.77
9	공익사업지원	4,754	1.27	4,890	1.26	5,182	1.30
10	저축지원	15,115	4.04	15,008	3.88	15,878	3.99
11	국민생활안정	118,900	31.76	124,883	32.32	131,806	33.12
12	근로·자녀장려	16,223	4.33	15,697	4.06	17,576	4.41
13	기타직접국세	13,742	3.67	14,141	3.66	14,316	3.60
14	간접국세	89,877	24.00	90,505	23.41	91,131	22.89
15	외국인투자	1,876	0.50	1,727	0.45	1,590	0.40
16	제주국제도시육성	2,927	0.78	2,608	0.67	2,671	0.67
17	기업도시	56	0.01	106	0.03	111	0.03
18	지역발전	-	-	-	-	-	-
19	농협구조개편	415	0.11	422	0.11	443	0.11
20	공적자금 회수	-	-	-	-	-	-
21	수협구조개편	70	0.02	20	0.01	21	0.01
22	사업재편 계획	-	-	-	-	-	-
23	기타	21,830	5.83	22,380	5.79	23,089	5.80
	합계	374,436	100.0	386,573	100.0	398,053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중·저소득자 수혜 조세지출액은 2016년 16조 9,696억 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45.32%를 차지하고 있어, 조세특례의 제1의 수혜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 과세특례제도에 있어 중·저소득자 혜택이 중요
 -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7조 6,512억원, 18조 3,805억원으로 45.66%, 46.19%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 특히 고소득자 수혜 조세지출은 2016년 8조 9,707억원에서 2017년 9조 1,775억원, 2018년 9조 4,604억원으로 증가폭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낮은 수준

〈표 II -9〉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저소득자	169,696	65.4	176,512	65.8	183,805	66.0
	② 고소득자	89,707	34.6	91,775	34.2	94,604	34.0
	계	259,403	100.0	268,287	100.0	278,409	100.0
(2) 기업	① 중소기업	63,053	56.3	66,269	57.7	69,629	60.0
	② 중견기업	5,536	4.9	5,294	4.6	5,186	4.5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27,667	24.7	22,663	19.7	20,545	17.7
	④ 기타기업	15,784	14.1	20,706	18.0	20,724	17.8
	계	112,040	100.0	114,932	100.0	116,084	100.0
(3) 구분곤란		2,993		3,354		3,560	
총계		374,436		386,573		398,05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조세특례제한법」상 2018년 저축지원 분류기준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8개이며, 조세지출 전망치는 총 1조 5,050억원으로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42.32%인 6,369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23.08%로 3,474억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14.27% 순을 나타냄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해외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7년 말 일몰종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규모는 해지 또는 만기가 되어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조세지출규모가 파악되지 않음
 - 이와는 별도로 「소득세법」상으로도 연금계좌와 장기저축성보험 등으로 중·저소득자에게 과세혜택을 부여

<표 II -10>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18년 전망	비중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148	14.27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310	2.06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111	0.74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0	0.00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474	23.08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20	4.12
7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6,369	42.32
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9	해외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종료)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합계	15,050.05	1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또한 조세특례제도 중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 수혜자를 ① 근로소득자, ② 사업소득자, ③ 농어민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및 서민으로 구분
 - 『2017년 국제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는 약 1,774만명이며 근로소득세수는 약 31조 9,740억원으로 내국세 전체 약 209조 4,013억원 중 15.27%이며 소득세 약 70조 1,194억원의 45.6%를 차지
 - 이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서민형으로 분류되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는 약 1,406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79.23%이며, 이 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약 767만명인 54.56%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청년형으로 분류되는 만 15~29세는 약 363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20.48%이며, 이중 약 202만명인 55.63%가 결정세액이 없음
 - 또한 사업소득자는 약 588만명이며 원천분 사업소득세수는 약 2조 3,941억원으로 내국세 전체의 1.14%, 전체 소득세의 3.41% 수준이며 여기에 신고분의 종합소득세수까지 포함할 경우 약 17조 3,839억원 수준으로 내국 전체의 8.3%, 전체 소득세의 24.8% 수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서민형으로 분류되는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자는 약 476만명으로 전체 사업소득자의 80.8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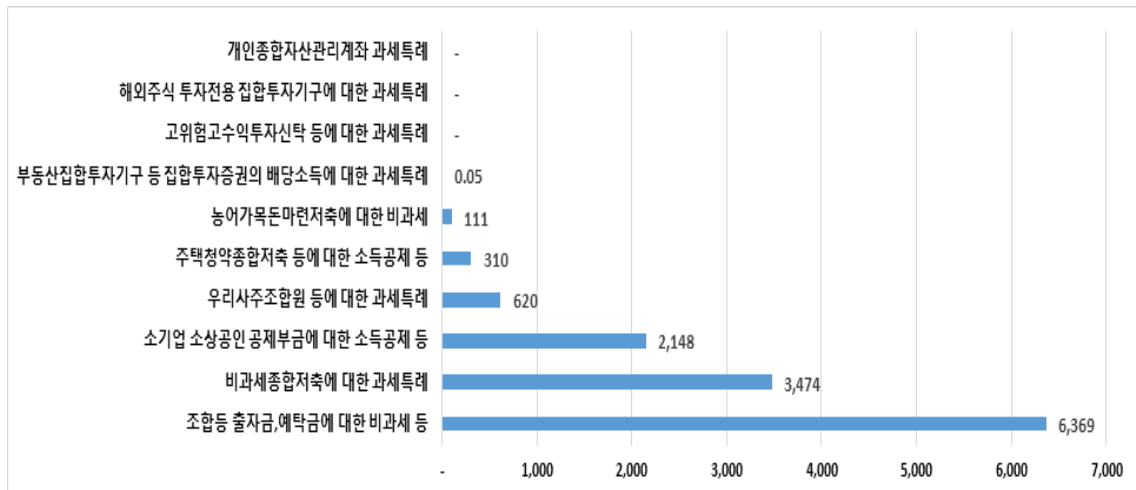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청년형 대상이 되는 만 15~29세는 약 41만명으로 전체 사업소득자의 6.94% 수준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위상

- 『조세지출예산서』상의 수치에 따른 저축지원 과세특례의 상대적인 조세지출규모 비교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의 위상을 평가할 수 있으나, 조세지출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한 상황
 - 조세지출규모의 외형으로 볼 때, 저축지원 과세특례 중 가장 큰 규모는 조합 등 출자금과 예탁금이며 이어서 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등의 순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세지출은 중도해지 또는 만기 인출 시에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추정하기에 곤란

[그림 II -10] 2018년도(전망치)의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조세지출규모의 비교가 아닌 가입자와 납입액 수준을 비교해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와 납입액 수준은 조합 예탁금과 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및 연금계좌 다음으로 큰 수준인데, 이는 제도 시행기간이 약 2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와 납입액 수준 면에서 다른 과세특례에 비해 현저히 낮지 않은 수준은 아님

- 가입자 기준으로는 조합 출자금 43.69%, 조합 예탁금 21.94%, 비과세종합저축 15.9% 및 연금계좌 10.12%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7.14%
- 또한 납입액 기준으로는 조합 예탁금이 46.49%, 비과세종합저축 28.42%, 조합 출자금 21.37% 및 연금계좌 1.84%에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4%
- 이러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제도 시행기간이 약 2년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짧은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가입자나 납입액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표 II -11> 주요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자 및 납입액

(단위: 명, 억원, %)

구분	가입자		납입액		비고(자료기준연도)
	인원 수	비중	금액	비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98,105	7.14	46,800	1.40	2018.4월 말 자료
조합 예탁금	6,447,095	21.94	1,552,818	46.49	인원 2015년 말 자료 금액 2013년 말 자료
조합 출자금	12,837,794	43.69	713,826	21.37	
비과세종합저축	4,521,000	15.39	949,457	28.42	2013년 말 자료
연금계좌	2,974,121	10.12	61,496	1.84	2015년 말 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46,000	1.18	11,177	0.33	
우리사주조합	89,058	0.30	2,845	0.09	
소기업소상공인	68,845	0.23	1,519	0.05	
투자조합 출자 등	1,880	0.01	317	0.01	
계	29,383,898	100	3,340,255	100	

주: 비과세종합저축은 기존 생계형저축이며, 각 금융상품별 자료기준연도가 상이함
 자료: 이상엽·한종석(2017) 및 홍범교 등(2014)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제작함

4. 해외사례

가. 미국

- (개요) 은퇴, 의료, 교육자금을 목적으로 비과세저축상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납입금 혹은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음

- (세제지원방식) 은퇴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에는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인출 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며, 의료비 및 교육비 저축은 목적에 따른 지출 시에 비과세
 - (은퇴) 은퇴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은 IRA와 저소득층을 위한 Saver's credit⁵⁾으로 구성되며, IRA 중 'Traditional IRA'는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Roth IRA'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며, 저소득층은 은퇴저축 등에 납부한 금액 중 최대 50%까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Traditional IRA)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인출할 때까지 이자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단, 납세자의 직장에 퇴직금 적립계획 여부에 따라 감면한도가 다른데, 퇴직적립계획이 있는 경우 총과세대상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공제대상 금액이 감소
 - 본인의 직장에 퇴직금 적립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장이 추가적으로 고려됨

<표 II -12> 납세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한도(퇴직금 적립계획이 있는 경우)(2018)

(단위: USD)

납세자 유형	총과세대상소득(modified AGI)	소득공제한도
미혼 가구주 미망인	63,000 이하	납입금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63,000 초과 ~ 73,000 미만	일부 소득공제
	73,000 이상	소득공제대상 아님
기혼 (부부 합산)	101,000 이하	납입금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101,000 초과 ~ 121,000 미만	일부 소득공제
	121,000 이상	소득공제대상 아님
기혼 (부부 분리)	10,000 미만	일부 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대상 아님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18-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검색일자: 2018. 4. 9.)

5) Low and moderate-income saver's credit

<표 II -13> 납세자 유형에 따른 소득공제한도(퇴직금 적립계획이 없는 경우)(2018)

(단위: USD)

납세자 유형	배우자 직장의 퇴직금 적립계획 유무	총과세대상 소득(modified AGI)	소득공제한도
미혼, 가구주 미망인	-	소득수준 제한 없음	납입금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기혼 (부부 합산 및 분리)	X	소득수준 제한 없음	납입금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기혼 (부부 합산)	O	189,000 이하	납입금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189,000 ~ 199,000	일부 소득공제
		199,000 이상	소득공제대상 아님
기혼 (부부 분리)	O	10,000 미만	일부 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대상 아님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2018-ira-contribution-and-deduction-limits-effect-of-modified-agi-on-deductible-contributions-if-you-are-not-covered-by-a-retirement-plan-at-work>, 검색일자: 2018. 4. 9.)

- (Roth IRA)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인출 시 인출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비과세)
- (Saver's credit) 납세자 유형 및 총과세대상소득에 따라 은퇴저축(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 그 밖의 401(K), SIMPLE IRA, SARSEP, 403(b), 501(c), 457(b)plan)에 납입한 금액의 10%, 20%, 50%를 소득세에서 공제
 - 단, 세액공제한도는 2,000달러(부부 합산 과세대상자는 4,000달러)

<표 II -14> 은퇴자금마련을 위한 저축 세액공제율 및 기준 소득(AGI)(2018)

(단위: USD)

세액공제율	기혼(부부 합산)	가구주	미혼, 기혼(부부 분리)
50%	38,000 이하	28,500 이하	19,000 이하
20%	38,001~41,000	28,501~30,750	19,001~20,500
10%	41,001~63,000	30,751~47,250	20,501~31,500
0%	63,000 이상	47,250 이상	31,500 이상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18. 4. 9.)

- (의료) Archer MSA 또는 HSA에 납입한 금액 중 의료비 용도로 인출한 금액만큼 소득공제하며, 의료비 용도로 인출한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 추가 과세함

- (교육) 교육비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은 Education IRA, QTPs, 교육채권 등으로 구성
 - (Education IRA) Coverdell ESA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여 30세 이하의 수혜자가 당해연도에 적격한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단, 인출금이 적격교육비 이상인 경우 과세될 수 있으며 10%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음
 - (QTPs: Qualified tuition program) 해당 프로그램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여 수혜자가 적격교육기관에 교육비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
 - (교육채권)⁶⁾ US savings bonds를 본인, 배우자,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출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비과세

- (정책대상자) 은퇴자금마련, 의료 및 교육비용을 위한 저축에는 모두 소득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밖에 연령제한 및 수혜자제한 등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음
 - (은퇴) Traditional IRA는 소득제한과 연령제한을 두며, Roth IRA 및 저소득층 은퇴저축은 소득제한을 두고 있음
 - (Traditional IRA) 과세대상 상여금이 있는 70.5세 미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과세대상소득에 따라 세제혜택한도가 다름
 - (Roth IRA) 연령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기혼, 미혼, 가구주에 따라 총과세대상소득이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만 가입 가능(기혼 부부 합산소득 189천달러 미만, 기혼 개별소득 1만달러 미만, 미혼 120천달러 미만)
 - (Saver's credit) 소득조건을 충족하고(기혼 부부 합산 63,000달러 미만, 가구주 47,250달러 미만, 미혼 31,500달러 미만), 만18세 이상의 다른 비과세혜택을 받는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만 대상으로 함
 - (의료) Archer MSA 또는 HSA에 저축하면서 동시에 자기 부담률이 높은 건강보험(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에 가입한, medicare와 같은 다른 의료보험 등을 통해 혜택을 받지 않는 영세고용주의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
 - (교육) Education IRA, 교육채권은 소득제한 및 수혜자제한을 두며 QTPs는 사용처제한만 있음
 - (Education IRA) 개인은 총과세대상소득이 110,000달러(합산 과세대상자는 220,000달러)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기관이 저축한 경우는 소득기준이 없으나, 단, 교육비수혜대상자가 18세 이하여야 하며 30세 이전에는 인출이 되어야 함

6) Exclusion of interest on savings bonds redeemed to finance educational expenses

- (QTPs) 적격교육기관(초, 중, 고등 교육기관)의 등록 및 출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저축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모두 허용되며, 대상자의 연령제한, 소득제한 등은 없음
- (교육채권) 1989년 12월 31일 이후 발행된 US saving bonds를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를 위한 교육비지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채권발행일 당시 소유주 나이 24세 이상, 총과세소득이 93,150달러 미만에 해당해야 함

□ (의무보유기간) Roth IRA의 경우만 5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고 그 밖의 의료, 교육 등 저축에는 의무보유기간이 없으며, 인출금은 가능하지만 목적 외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함

- (은퇴)⁷⁾ Traditional IRA는 의무보유기간이 없고,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나, 70.5세 이상이 되는 해의 4월 1일부터는 매년 계산되는 최소인출규정액(RMD)을 반드시 인출해야 하며, 최소인출규정액은 계좌잔고를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됨
 - (Roth IRA) 5년 이상 가입하고 59.2세 이상이면 개별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인출이 가능하고, 인출기한을 연장시킬 수도 있음
 - (Saver's credit)⁸⁾ 의무보유기간 조건은 없음
- 의료 및 교육은 의무보유기간 조건이 없으나, 다만 목적 이외로 인출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함

□ (가입한도) 목적별로 연령, 소득, 수혜자 등 조건에 따라 납입한도가 상이하며, 1인 1계좌 이상으로 납입할 수는 있지만 혜택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짐

- (은퇴) IRA 공통으로 납입한도는 5,500달러(2015~2018년)와 해당연도의 과세대상 상여금 중 적은금액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납입한도를 상향하여 6,500달러까지 가능
 - Roth IRA는 총과세대상소득 기준에 따라 납입한도가 다름
 - Saver's credit은 납입한도는 따로 없지만, 최대 세액공제액이 2,000달러(부부 합산 과세대상자는 4,000달러)

7) 미국 국세청 590-A, 2017 웹페이지,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17_publink1000230570 검색일자 2018. 5. 14.)

8)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18. 5. 15.)

<표 II -15> 납세자 유형에 따른 Roth IRA 납입한도(2018)

(단위: USD)

납세자 유형	총과세대상소득(modified AGI)	납입한도
기혼 (부부 합산)	189,000 미만	공통 적용한도
	189,000 이상 ~ 199,000 미만	소득수준 올라감에 따라 납입한도 낮아짐
	199,000 이상	납입할 수 없음
기혼 (부부 분리)	10,000 미만	소득수준에 올라감에 따라 납입한도 낮아짐
	10,000 이상	납입할 수 없음
미혼 가구주 미망인	120,000 미만	공통 적용한도
	120,000 이상 ~ 135,000 미만	소득수준 올라감에 따라 납입한도 낮아짐
	135,000 이상	납입할 수 없음

자료: 미국 국세청,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amount-of-roth-ira-contributions-that-you-can-make-for-2018>, 검색일자: 2018. 4. 9.)

- (의료) HSA 납입한도는 HDHP의 유형, 나이, 가입 및 탈퇴 시기 등에 따라 결정되며, Archer MSA 납입한도는 HDHP 연간공제한도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 (HSA) 2018년 기준으로 개인 보험의 경우(self-only HDHP coverage) 3,450달러 까지, 가족 보험의 경우(family HDHP coverage) 6,900달러까지 납입 가능하며 55세 이상인 경우 납입한도를 1,000달러 상향하여 적용하되, 고용주의 HSA 납입금액 및 Archer MSA 납입금액에 따라 HSA 납입한도는 축소됨
 - (Archer MSA) 납세자(고용인) 및 고용주는 연간 HDHP 공제한도의 최대 75% 까지 납입 가능하며,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 이상으로 납입할 수 없음
- (교육) Education IRA는 연간 수혜자별 납입한도와 납입자별 납입한도가 구분되어 있으며, 2017년의 두 기준별 모두 납입한도는 2,000달러
 - 단, 총과세대상소득이 95,000달러~110,000달러인 경우 납입한도는 줄어들고, 110,000달러 이상이면 Coverdell ESA에 납입할 수 없음
 - QTPs는 별도의 기준 없음

9)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IRA(2018b, p. 43.) 참조

- (편입대상 금융상품) 금융상품의 종류는 은행의 예금, 주식, 채권, ETF, 연금 등¹⁰⁾
- (계좌이동) 은퇴저축의 경우 동일 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의료 및 교육비마련저축은 1년에 한 번만 이동 가능
 - (은퇴) Traditional IRA와 Roth IRA 간 이동과 동일제도 내에 다른 상품으로 이동이 가능하지만 다른 은퇴 plan에서 롤오버된 금액은 Saver's credit으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없음¹¹⁾
 - (Traditional IRA) Roth IRA로 이동하거나 Traditional IRA 내의 다른 금융상품으로 변경이 모두 가능
 - (Roth IRA) Traditional IRA로 가입한 SEP, SIMPLE IRA를 Roth IRA로 변경 가능하고, Roth IRA의 금융상품 간 변경 가능
 - (Saver's credit)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 그 밖의 401(K), SIMPLE IRA, SARSEP, 403(b), 501(c), 457(b)plan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롤오버된 금액은 Saver's credit을 받을 수 없음
 - (의료) HSA 혹은 Archer MSA에서 인출 후 60일 이내에 이동해야 페널티를 피할 수 있으며, HSA는 1년에 한 번만 가능, 단 HSA 계좌 간에 금액을 이동하는 것은 계좌이동으로 보지 않으며 IRA에서 HSA로 이동하는 것도 계좌이동으로 보지 않음¹²⁾
 - (교육) Education IRA는 12개월 단위로 한 번만 롤오버가 가능¹³⁾
- (현황) 2017년 기준 IRA의 가입 가구 수는 126.2백만가구이며, HSA의 가입 계좌 수는 22.21백만개(covdell ESA 통계자료 못찾음, 529plan¹⁴⁾)로 ICI 통계페이지에 있음
 - (은퇴) 매년 IRA owner survey를 시행하는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26.2백만가구가 IRA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Traditional IRA에 가입한 가구는 35.1백만가구, Roth IRA에는 24.9백만가구가 가입

10) IRA Asset, <Figure 7.16> (http://www.icifactbook.org/ch7/17_fb_ch7#portfolios, 검색일자: 2018. 5. 15.)
 11) table I-4 Rollover Chart,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en_US_2017_publink1000231030, 검색일자: 2018. 5. 14.)
 12) <https://www.hsaedge.com/2016/10/08/how-to-rollover-hsa-funds/>
 13) <https://finance.zacks.com/can-coverdell-ira-rolled-over-7311.html>
 14) https://www.ici.org/research/stats/529s/529s_17_q4

<표 II -16> 2017년 기준 IRA 가입 현황

(단위: 백만가구, %, 십억달러)

	가입 가구 수	가구비중	자산규모 ¹⁾
Traditional IRA	35.1million	27.8	6.695
Roth IRA	24.9million	19.7	660

주: 1) 자산규모는 2016년 기준

자료: 1. Investment Company Institute(http://www.icifactbook.org/ch7/17_fb_ch7#portfolios, 검색일자: 2018. 5. 15.)

2.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The Role of IRAs in US Households' Saving for Retirement, 2017", <Figure2> 2017. 12.

- (의료) Health savings accounts의 총자산은 예금자산과 투자자산으로 구성되며, 2017년 예금자산은 36.9십억달러, 투자자산은 8.3십억달러규모, 총계좌 수는 2017년 12월 기준 22.21백만개¹⁵⁾

나. 영국

- (개요) 저축장려, 주택마련, P2P 시장 성장, 노후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저축 시 비과세 혹은 보조금의 혜택을 주며,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직원사주제도는 주식 매입 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 (세제지원방식) 일반적인 ISA는 이자·배당·자본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주택구입이나 노후자금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저축장려 및 P2P 성장도모) Cash ISA와 Stock ISA, Junior ISA와 Innovation finance ISA는 모두 연간 20,000파운드 한도(2018년 기준)에서 비과세
 - Junior ISA는 2018년 기준 한 사람당 연간 4,260파운드 한도에서 비과세
 - (주택마련) Help to Buy ISA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250,000파운드 이하(런던 450,000파운드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정부로부터 적립액의 25%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노후자금마련) Lifetime ISA는 첫 주택구입이나 60세 이후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4,000파운드 한도 내에서 적립할 경우 적립금의 25%, 연간 최대 1,000파

15) Devenir Research, 2017 year end HSA market statistics and trends, 2018. 2. 22.

(<https://www.devenir.com/wp-content/uploads/2017-Year-End-Devenir-HSA-Market-Research-Report-Executive-Summary.pdf>, 검색일자: 2018. 5. 15.)

을 드를 50세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첫 주택구입 시 Help to Buy ISA 계좌와 Lifetime ISA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중 하나에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재산형성) Save AS You Earn(SAYE)은 직원사주제도로, 근로자는 3년 또는 5년을 만기로 하는 SAYE 저축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저축에 불입된 저축액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주식 매입 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며,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과세에서 제외됨
 - 단, SAYE의 옵션을 행사 후 주식을 매각할 때 이득을 보았다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식을 구매 후 연금플랜으로 이전하거나 90일 이내에 ISA로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됨
 - SAYE의 고용주는 SAYE 플랜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근로자의 옵션이득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정책대상자) ISA는 연령조건 외에 소득조건은 없으며 SAYE는 모든 근로자 대상
 - (저축장려 및 P2P 성장도모) Cash ISA는 16세 이상 거주자, Stock ISA 및 Innovative Finance ISA는 18세 이상 거주자, Junior ISA는 18세 미만 거주자로,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일반 ISA로 전환됨
 - (주택마련) Help to Buy ISA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6세 이상 거주자
 - (노후자금마련) Lifetime ISA는 18~40세 미만의 거주자로 50세까지 자금적립이 가능함
 - (근로자 재산형성) SAYE 자격기준은 모든 근로자로, 다만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고용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5년 이상으로 설정할 수는 없음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이 없으며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 (가입한도) 저축장려형 ISA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해져 있으나 가입한도는 없고, 주택마련형 ISA 및 SAYE는 한도가 있음
 - Cash ISA, Stock ISA, Junior ISA 등 저축액한도는 없으나 연간 일정 한도액만큼만 비과세혜택

- Help to Buy ISA는 최대 1,000파운드까지 예치가 가능하고 매달 최대 200파운드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 주택구매 시 최대 3,000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Lifetime ISA는 연간 4,000파운드 한도에서 적립 가능
 - (근로자 재산형성) SAYE 저축액한도는 최소 월 5파운드에서 최대 월 20파운드이며, 반드시 본인의 임금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함
- (편입대상 금융상품) ISA는 주식, EEA 주식, 증권, 영국국채, 계약형투자신탁, 회사형투자신탁, 회사채펀드, 투자신탁, 해약환급금, 예치금, 머니마켓펀드, 펀드오브펀드 등의 상품들이 있음¹⁶⁾
- (계좌이동) Junior ISA 가입자가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 ISA로 자동으로 전환, SAYE 저축으로 주식을 구매 후 연금플랜으로 이전하거나 ISA로 이전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로 ISA로 이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
- (현황) Cash ISA 와 Stock ISA 가입계좌 수는 2016~2017년 11.1백개로, 2015~2016년의 12.7백만개보다 1.6백만개 감소, Junior ISA 계좌 수는 794천개로 전연도의 738천개보다 증가¹⁷⁾
- 2016~2017년 총규모는 62십억파운드로, 2015~2016보다 18십억파운드 감소, 이중 858백만파운드가 Junior ISA로 가입

16)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pril 2018, <chart 1><chart 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검색일자: 2018. 5. 15.)

17)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pril 2018, p. 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검색일자: 2018. 5. 15.)

<표 II -17> Adult ISAs 유형별 계좌 수 및 적립액

(단위: 천개, 백만파운드, %)

구분	계좌 수				적립액			
	Cash	Stock & Shares	Innovative Finance	합계	Cash	Stock & Shares	Innovative Finance	합계
2008~'09	12,234	2,960	-	15,194	30,383	9,711	-	40,094
비중	80.5	19.5	-	100.0	75.8	24.2	-	100.0
2009~'10	11,426	3,011	-	14,437	31,437	12,542	-	43,979
비중	79.1	20.9	-	100.0	71.5	28.5	-	100.0
2010~'11	11,859	3,387	-	15,246	38,197	15,515	-	53,712
비중	77.8	22.2	-	100.0	71.1	28.9	-	100.0
2011~'12	11,187	2,863	-	14,050	37,222	15,546	-	52,768
비중	79.6	20.4	-	100.0	70.5	29.5	-	100.0
2012~'13	11,682	2,924	-	14,606	40,901	16,459	-	57,360
비중	80.0	20.0	-	100.0	71.3	28.7	-	100.0
2013~'14	10,481	2,992	-	13,473	38,821	18,439	-	57,260
비중	77.8	22.2	-	100.0	67.8	32.2	-	100.0
2014~'15	10,288	2,711	-	12,999	60,951	22,288	-	83,239
비중	79.1	20.9	-	100.0	73.2	26.8	-	100.0
2015~'16	10,118	2,539	-	12,657	58,694	21,129	-	79,823
비중	79.9	20.1	-	100.0	73.5	26.5	-	100.0
2016~'17	8,480	2,589	2	11,071	39,191	22,325	17	61,533
비중	76.6	23.4	0.0	100.0	63.7	36.3	0.0	100.0

자료: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ugust 2017, p. 20.

<표 II -18> Junior ISAs 유형별 계좌 수 및 적립액(2011년 11월 도입)

(단위: 천개, 백만파운드, %)

구분	계좌 수			적립액		
	Cash	Stock & Shares	합계	Cash	Stock & Shares	합계
2011~'12	n/a	n/a	71	n/a	n/a	115
2012~'13	204	92	296	294	99	393
비중	68.9	31.1	100.0	74.8	25.2	100.0
2013~'14	310	122	432	431	147	578
비중	71.8	28.2	100.0	74.6	25.4	100.0
2014~'15	365	145	510	405	177	582
비중	71.6	28.4	100.0	69.6	30.4	100.0
2015~'16	497	241	738	522	399	921
비중	67.3	32.7	100.0	56.7	43.3	100.0
2016~'17	569	225	794	525	333	858
비중	71.7	28.3	100.0	61.2	38.8	100.0

자료: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ugust 2017, p. 21.

다. 캐나다

- (개요) 개인이 비과세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s)와 은퇴, 교육,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지원제도(Registered Savings Plan) 및 공동공인연금제도 등 운영
- (세제지원방식) 투자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을 부여
 - (TFSA) 납입금에 대한 조세혜택은 없으나 중도인출금 및 투자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도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다음 해의 납입한도가 증가
 - (저축지원) 은퇴자금마련, 교육자금마련, 장애인지원 등으로 구분
 - 은퇴자금마련 저축지원제도는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고,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중도인출금은 원칙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지만 Home Buyers' Plan, Lifelong Learning Plan에 따라 주택구매 및 평생교육 등을 위하여 은퇴자금마련 저축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금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 교육자금마련 저축지원제도는 납입금에 대한 과세혜택은 없으나 해당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은 인출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 장애인지원저축은 납입금에 대한 과세혜택은 없으나 적립금을 수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 (공동출자 공인연금) 노후자금을 위한 저축지원으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인출금 및 연금수당은 과세소득에 포함
- (정책대상자) 18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 저축지원제도는 60세 미만 장애인이 대상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TFSA는 매년 납입한도가 주어지며, 납입한도 이하로 납입하면 미사용 한도액은 이연이 가능하고, 중도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다음 해의 납입한도가 증가

- (저축지원) 은퇴자금마련 저축의 납입한도는 전년도 소득의 18%(2016년 기준 최대 25,370캐나다달러)이며 해당 한도액은 전년도 미사용 한도액 및 Registered Pension Plan, Deferred Profit-Sharing Plan에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달라짐
 - 교육자금마련 저축의 경우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혜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평생 5만캐나다달러까지만 납입할 수 있고 연간 한도액은 없음
 - 장애인 저축지원제도 납입한도는 평생 20만캐나다달러로 수혜자가 59세가 되는 연말까지 납입할 수 있음
- (공동출자 공인연금) 은퇴자금마련 저축지원제도(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납입한도 이내 납입 가능

□ (편입대상 금융상품) 투자가능 금융상품은 예금, 뮤추얼펀드, 상장주식, 채권, 일부 중소기업 주식 등이 포함

□ (계좌이동)¹⁸⁾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등록된 계좌와 등록되지 않은 계좌 간에 동등한 가치로 유가증권을 교환할 수 없음

□ (현황) 2015년 기준으로 도입 당시와 비교하여 가입자 수는 약 789만명이 늘어 약 163.04% 증가하였고, 적립액은 약 429.62억캐나다달러가 늘어 약 226.55% 증가

<표 II -19> TFSA 현황

(단위: 명, 개, 캐나다달러)

연도 ¹⁾	가입자 수	계좌 수	적립액	가입자당 평균 적립액 ²⁾
2009	4,839,870	5,290,710	18,963,461,000	4,195
2010	6,861,900	7,928,970	25,398,608,000	4,991
2011	8,366,100	10,054,470	31,105,422,000	5,359
2012	9,596,830	11,854,760	33,503,195,000	5,426
2013	10,714,620	13,853,600	40,163,568,000	5,938
2014	11,740,770	15,105,640	45,836,554,000	6,292
2015	12,731,020	16,999,190	61,925,669,000	7,826

주: 1) 연도는 과세연도를 의미함

2) 가입자당 평균 적립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자료: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dition)¹⁹⁾

18) Canada Revenue Agency, Transfer from your RRSP,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ount-tfsa-guide-individuals.html#p3021_26463, 검색일자: 2018. 5. 15.)

라. 프랑스

- (개요) 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금형성, 은퇴자금마련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비과세

- (세제지원방식) 대다수의 일반 저축상품들(A저축, 청색저축, 지속성장저축(LDDS), 보통예금저축(LEP))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단, 중기적금(CAT)과 청소년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은퇴자금마련을 위한 일반 은퇴저축(PERP)의 경우만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
 - 공제한도는 매년 달라지며 2017년 기준으로는 ① 연간 근로소득에서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 ② 3,862유로 중 더 작은 금액을 소득공제 한도로 봄

- (정책대상자) 청소년저축 및 지속성장 및 연대저축은 연령제한이, 보통예금저축은 소득제한이 있으나 기타 저축들은 일반 프랑스 거주민을 대상으로 함
 - A저축 및 청색저축은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두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는 없음
 - 프랑스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조합이 가입대상으로 연령제한이 없어서 미성년자의 가입도 가능
 -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지속성장 및 연대저축(LDDS)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납세자이면서 성인만 가입대상
 - 저소득층지원을 위한 보통예금저축(LEP)은 가입대상요건에 소득요건이 있으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소득한도가 정해짐
 - 예를 들어, 독신자의 경우 가족계수가 1이며, 부부의 경우 2, 여기에 부양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0.5가 가산되고 세 번째 아이부터는 1씩 가산됨

19)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programs/about-canada-revenue-agency-cra/income-statistics-gst-hst-statistics/tax-free-savings-account-statistics.html>, 검색일자: 2018. 4. 16.(이하 동일)

<표 II -20> 가족계수별 보통예금저축에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단위: 유로)

가족계수	소득한도
1	19,468
1.5	24,665
2	29,863
2.5	35,061
3	40,258
3.5	45,456
4	50,654

주: 이후 가족계수 0.5씩 증가할 때마다 소득한도는 5,198유로씩 증가
 자료: 프랑스 행정부 공식 웹사이트(<https://www.service-public.fr>, 검색일: 2018. 4. 24.)

- 청소년저축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12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이 가입대상
 - 그 밖의 단·중기적금, 보통은퇴저축 등은 연령제한, 소득제한 등이 없이 프랑스 거주민을 대상으로 함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은 없고, A저축은 현금인출기에서 최대 인출가능한 금액이 500유로이며, 7일간 총 800유로 인출이 가능
- 단, 중기적금(CAT)은 최소 한달 이상의 적금기간이 있어야 하며, 보통은퇴저축(PERP)은 의무보유기간은 없으나 은퇴연령까지 인출이 불가능
- (가입한도) 단·중기적금(CAT)은 납입한도와 가입한도가 따로 없으며, 그밖에 A저축, 청색저축, 지속성장저축(LDDS), 보통예금저축(LEP), 청소년저축은 최소 및 최대 납입한도가 정해져 있음
- A저축 납입한도는 최소 10유로 이상 최대 22,950유로이고, 우체국에서 가입하면 최소 1.5유로 이상만 납입할 수 있으며, 조합의 경우는 최대 76,500유로까지 납입 가능
 - 청색저축의 납입한도는 최소 15유로 이상이며, A저축과 마찬가지로 최대 22,950유로까지 납입 가능하고, 법인은 최대 76,500유로까지 납입 가능
 - 지속성장 및 연대저축(LDDS)은 최소 15유로 이상 최대 12,000유로까지만 납입 가능

- 보통예금저축(LEP)은 최소 30유로 이상 최대 7,700유로까지 납입 가능
- 청소년저축은 최소 10유로 이상 최대 1,600유로까지 납입 가능
- 단·중기적금(CAT)은 특별한 납입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가입시점에 총적금액을 모두 불입해야 함

□ (편입대상 금융상품) 예·적금상품

- (계좌이동) A저축과 청색저축은 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동시에 가입할 수 없어서 이동이 불가능하며, 청소년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A저축이나 청색저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²⁰⁾
 - 한편 A저축(청색저축, 청소년저축)과 지속성장저축(LDDS) 및 보통예금저축(LEP)은 동시에 보유할 수 있고, A저축 등으로 비과세한도가 만족되면 지속성장저축 혹은 보통예금저축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²¹⁾

- (현황) Banque de France(201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입 현황은 A저축이 248.4십억유로, 지속가능저축(LDDS)이 101.3십억유로, 보통예금저축(LEP)이 44.9십억유로²²⁾

마. 호주

- (개요) Super fund(Superannuation contribution)를 통해서 저소득층자금형성, 은퇴저축, 주택자금마련이 되도록 지원
 - Super fund에 납입하는 방식은 세전납입(concessional)과 세후납입(non-concessional) 방식이 있으며, 방식에 따라 전체 납입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20) Hello Bank FAQ,
(<https://www.hellobank.fr/faq/peut-on-cumuler-un-livret-jeune-et-un-livret-a.html>, 검색일자: 2018. 5. 16.)

21) Hello Bank FAQ,
(<https://www.hellobank.fr/faq/cumuler-un-livret-a-et-un-livret-de-developpement-durable-et-solidaire-ldds-est-ce-possible.html>, 검색일자: 2018. 5. 16.)

22) Banque de France, RAPPORT ANNUEL DE L'OBSERVATOIRE DE L'ÉPARGNE RÉGLEMENTÉE EXERCICE 2016, 2017. july, p. 14, <G4>
(https://publications.banque-france.fr/search-es?term=Livret&f%5B0%5D=bdf_facet_changed%3A1483225200-1514761199, 검색일자: 2018. 5. 15.)

- 저소득층지원을 위한 LISTO(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는 세전납입식이며, Super fund에 세전납입식으로 납입한 총액의 15%(최대 500호주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은퇴저축장려를 위한 Super co-contribution은 세후납입식으로, 납입액에 따라 최대 500호주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FHSS(First Home Super Saver)는 Super fund를 통해 주택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세전납입식과 세후납입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마련을 위해 자금 인출 시 원천징수되나, 징수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제지원방식) LISTO와 Super co-contribution은 납입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이며, FHSS는 과세이연 및 인출금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주는 방식
- (은퇴) LISTO와 Super co-contribution은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LISTO는 세전납입식으로 Super fund에 납입한 총액 중 15%, 최대 500호주달러를 환급하는데, 연금을 쓸 수 있는 나이인 60세 이상에 해당하거나 퇴직한 경우 연금계좌로 환급하지 않고 납세자에게 직접 환급
 - Super co-contribution은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대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환급하는데, 2017~2018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6,813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 500호주달러를 지원받고, 36,813호주달러 이상부터 51,813호주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에 비례하여 지원금액이 감소하며, 연간 51,813호주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없음
 - (주택)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Super fund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한 회계연도 내에서는 본인의 납입액 중 최대 15,000호주달러까지, 전체연도로는 최대 30,000호주달러까지 가능함. 또한 인출금에서 90일 은행어음에 3%p를 가산한 만큼의 이자를 받음
 - 단, 인출 시 세금이 한계세율(17%)로 원천징수되지만, 세금환급신청 시 FHSS 인출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30%만큼 공제받을 수 있고, 또한 FHSS 인출금액은 ‘가족보조 및 자녀양육비’를 위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세전납입식으로 납입하는 경우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월급에서 지불되도록 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 경우 납입액의 15%씩 공제되는 것
 - 단, 세전납입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인출될 때엔 납입액의 85%만 인출 가능

- (정책대상자) LISTO와 Super Co-contribution의 환급을 받기 위해선 소득제한이 있으며, 주택마련을 위한 FHSS에는 신청 연령제한만 있음
 - (은퇴) LISTO에는 소득요건만 있으며, Super co-contribution에는 소득, 연령 등 요건이 필요
 - LISTO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37,000호주달러 이하면 되고 연령제한은 없음
 - Super Co-contribution은 회계연도 내에 적어도 하나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자로서, 총소득의 10% 이상이 근로 또는 자영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고, 연간 소득이 51,813호주달러 미만이며, 71세 미만, 회계연도 동안 일시적인 비자를 받지 않아야 하고, 세금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함²³⁾
 - (주택) Super contribution에 가입한 18세 이상의 FHSS 보조금 신청자²⁴⁾
 - 과거 주택에 대한 지분 또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호주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 동일 제도(FHSS)의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거래완료 후 1년 이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의무보유기간) Super Co-contribution과 FHSS 모두 의무보유기간 없음
 - FHSS는 의무보유기간이 없으나, 2017년 7월에 제도가 시작되어 2018년 7월부터 인출이 가능한 상황이고 자금 신청은 18세 이상만 가능

- (가입한도) 호주 국세청은 세후방식(non-concessional)과 세전방식(concessional)으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음²⁵⁾
 - Super Co-contribution은 세후방식한도의 적용을 받으며 2018~2019년 기준으로는 총 10만호주달러까지 납입 가능
 - FHSS 가입은 연령제한이 없으나, 세전방식인 경우, 2018~2019년 기준으로 총 2만 5천호주달러까지만 납입 가능

23)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igibility for the super co-contribution,”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super-co-contribution/?anchor=Eligibilityforthesupercocontribution#BK_10eligibleincometest, 검색일자: 2018. 5. 16.)

24) Australian Taxation Office,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https://www.ato.gov.au/Individuals/Super/Super-housing-measures/First-Home-Super-Saver-Scheme>, 검색일자: 2018. 5. 16.)

25)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ntribution cap,”
 (<https://www.ato.gov.au/Rates/Key-superannuation-rates-and-thresholds/?anchor=Concessionalcontributionscap#Concessionalcontributionscap>, 검색일자: 2018. 5. 16.)

□ (편입대상 금융상품)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헤지펀드를 포함한 자산 및 인 프라 투자²⁶⁾

□ (계좌이동)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현황) 2017년 12월 기준 민간연금(Superannuation)의 총자산은 2.6조호주달러이며 총 계좌 수는 28.6백만개, Super co-contribution의 수혜자는 45만명이며 총액은 142.8 백만달러

<표 II -21> 가입 현황

(단위: 백만호주달러)

	계좌 수	총액
Superannuation(2017년말 기준) ¹⁾	28.6백만개	2,615,000
Super co-contribution(2016~17) ²⁾	451,137명	142.8

자료: 1)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https://www.superannuation.asn.au/resources/superannuation-statistics>, 검색일자: 2018. 5. 16.)

2) 호주국세청 『Annual Report 2016~17』,
(<https://www.ato.gov.au/About-ATO/Research-and-statistics/In-detail/Super-statistics/Super-co-contribution/Annual-reports---Super-co-contribution>, 검색일자: 2018. 5. 16.)

바. 일본

□ (개요) 일반 국민들의 투자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NISA와 결혼, 주택마련, 교육, 노후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형저축, 장애인 비과세로 구성

□ (세제지원방식) 투자장려를 위한 NISA는 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주택마련 및 연금재형저축과 장애인특례의 경우는 일정 한도의 납입액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 (NISA) 일반 국민들의 투자유도를 위해 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가 운용되고 있으며 모두 소액상장주식에 관한 배당·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일반 NISA와 주니어 NISA의 비과세대상은 주식·투자신탁의 분배금, 상장주식 등의 배당, 양도차익

26)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https://www.superannuation.asn.au/resources/superannuation-statistics>, 검색일자: 2018. 5. 16.)

- 적립 NISA의 비과세대상은 장기 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공모주식 투자신탁 (신탁기간 20년 이상, 비매월분배형펀드(非毎月分配型ファンド)등)의 배당 및 양도차익
 - (재형저축) 일반재형저축은 사업자가 노동자를 대신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며, 그 중 주택저축 및 연금저축은 5년 이상 적립된 경우 총 550만엔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상품은 납입금액 385만엔까지 비과세
 - (장애인비과세)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특정 유가증권 등 네 종류의 저축원금 합계액 350만엔 혹은 국채 및 지방채의 액면 총액 350만엔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정책대상자) NISA와 재형저축은 사용자와 가입자의 연령제한이 있음
- (NISA) 일반 NISA와 적립 NISA는 20세 이상의 거주자를, 주니어 NISA는 20세 미만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재형저축) 일본 내 거주하는 55세 미만의 노동자(계약체결 당시 연령)로 근무 기업에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주택) 적립금을 주택건설, 주택구입, 공사비가 75만엔 이상인 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연금) 60세 이후의 연금지급 개시까지 인출하지 않음을 요건으로 함
 - (장애인) 소액예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신고서’를, 소액채권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를 금융기관을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서 장애자수첩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한 대상자
- (의무보유기간) NISA는 1년, 재형저축은 5년의 의무보유기간이 있음
- (NISA) 1년 단위로 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일반 NISA와 주니어 NISA는 중도매각이 가능함. 최장 5년간 비과세되며 비과세기간 종료 시 새로운 비과세투자자로 전환 가능
 - 하지만 주니어 NISA는 18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20세 이상이 되어 금융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니어 NISA를 폐지해야 함
 - 적립 NISA는 비과세기간이 20년이나, 기간 종료 시 인출하여야 하고, 새로운 비과세투자자로 전환할 수 없음

- (재형저축) 주택저축과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한 경우
 - (장애인)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공통적으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며 상품에 따른 납입한도는 상이
- (NISA)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NISA와 적립 NISA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으며, 연간 한도액은 일반 NISA가 매년 120만엔으로 가장 큼
 - 일반 NISA의 연간 한도액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0만엔이며, 총 투자액의 한도는 120만엔씩 비과세기간 5년을 적용하여 600만엔
 - 주니어 NISA의 연간 한도액은 80만엔이며, 총투자액 한도는 400만엔, 해당 상품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투자 가능
 - 적립 NISA의 연간 한도액은 매년 40만엔으로 총투자액 한도는 800만엔, 2018년부터 2037년까지 투자 가능
 - (재형저축) 노동자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일반재형저축과 재형주택저축, 재형 연금저축에 동시가입 가능
 - 주택저축은 예적금의 경우 원리금 550만엔까지, 보험료 납입누계액 550만엔까지의 이자에 비과세, 연금저축은 예적금은 550만엔까지이나 보험료는 385만엔까지만 비과세
 - (장애인) 한도는 없지만 총 350만엔까지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 (편입대상 금융상품) 상품 목적(투자장려, 주택 및 노후를 위한 목돈마련)에 부합하도록 각 계좌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구성
- (NISA) 일반 NISA 계좌로 매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국내주식(국내 ETF, REIT), 외국주식(해외 ETF, REIT), ETN, 신주예약권부사채(워런트 증권), 주식투자신탁이며, 비상장주식, 예금, 채권, 공사채투자신탁, MMF, MRF, e-워런트 상장주가 지수선물, FX(외환증거금 거래), 금·백금 등은 대상이 아님
 - 주니어 NISA 계좌로 매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상장주식, 상장신주예약권부사채,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권, 상장투자신탁의 수익권(ETF), 상장부동산투자법인의 투자계좌(REIT) 등이며 국채와 지방채 등 특정 공사채와 공모공사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적립 NISA 계좌로는 수수료가 낮고 빈번하게 분배금을 지급하는 장기·적립·분산투자에 적합한 공모주식펀드와 상장주식투자펀트(ETF)에 한정

- (재형저축) 비과세대상저축은 예적금(정기예금·정기적금 등), 합동운용신탁, 유가증권(국채 등 공사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금융채권, 주식투자신탁), 생명보험, 생명공제, 손해보험
 - (장애인) 비과세대상저축은 예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및 특정유가증권이 대상이며, 비과세대상채권은 국채 및 지방채
- (계좌이동) NISA 내에선 연간단위로 계좌이동이 가능하며, 적립 NISA는 일반계좌와의 이동이 제한적임. 재형저축은 동시에 가입가능하고 비과세한도를 서로 사용할 수 있음
- (NISA) 일반 NISA는 비과세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다른 비과세계좌로 이관하거나 일반계좌로 이관할 수 있음
 - 그러나 적립 NISA 계좌 이외의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적립 NISA 계좌로 옮길 수는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불가능
 - 일반 NISA와 적립 NISA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연간단위로 변경이 가능
 - 주니어 NISA의 비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입자가 18세 이상인 경우 특정계좌나 일반계좌로 이관할 수 있음.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입자가 20세 이상이 된 경우는 일반 NISA가 개설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관할 수 있음
 - (재형저축) 일반재형저축, 재형주택저축, 재형연금저축 동시에 가입하여 비과세 한도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연금저축의 예적금은 550만엔까지 비과세이나 보험료 불입액은 385만엔까지 비과세되므로, 나머지 165만엔은 재형주택저축의 비과세한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과세저축신고서’ 혹은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가능
- (현황) 2017년 9월 말 기준 NISA의 계좌 수는 11백만개이며 매입액은 1,187,161천만엔이며 주니어 NISA의 계좌 수는 약 24만개이고 매입액은 5,616천만엔

<표 II -22> 일본 NISA 가입 현황

(단위: 개, 만엔)

	계좌 수	매입액
NISA	11,019,033	1,187,161,145
주니어 NISA	241,306	5,616,717

주: 2016년 및 2017년까지 이용한도에서의 매입금액의 합계

자료: 日本 金融庁, NISA・ジュニアNISA 口座の利用状況調査(平成29年 9月末時点)(<https://www.fsa.go.jp/>)

사. 해외사례의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국민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미국은 은퇴(IRA와 Saver's credit), 의료(Archer MSA 또는 HSA), 교육(Education IRA와 QTPs) 자금을 목적으로 비과세저축상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납입금 혹은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음
 - 영국은 저축장려(ISA), 주택마련(Help to Buy ISA), P2P 시장 성장(Cash ISA와 Stock ISA, Junior ISA와 Innovation finance ISA), 노후자금(Lifetime ISA)마련을 목적으로 저축 시 비과세 혹은 보조금의 혜택을 주며, 근로자 자산형성을 위한 직원사주제도(SAYE)는 주식 매입 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 캐나다는 개인이 비과세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s)와 은퇴, 교육, 주택자금마련을 위한 저축지원제도(Registered Savings Plan) 및 공동공인연금제도 등 운영
 - 프랑스는 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금형성, 은퇴자금마련 등을 목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비과세
 - 호주는 Super fund(Superannuation contribution)를 통해서 저소득층자금형성, 은퇴저축, 주택자금마련이 되도록 지원
 - 일본은 일반 국민들의 투자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NISA와 결혼, 주택마련, 교육, 노후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형저축, 장애인 비과세로 구성

- 이러한 해외 주요국은 편입자산의 범위에 주식과 채권까지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편입자산은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의 경우 편입자산에 주식과 채권까지 포함하고 있음
 - 캐나다는 주식 중에서 상장주식과 일부 중소기업주식을 포함
 - 호주는 주식은 포함하지만 채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프랑스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지 않고 예적금만을 편입자산으로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편입자산에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하게 구성하는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보유기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및 호주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는 중도인출도 허용
 - 일반적으로 저축이 자산형성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투자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맞지만, 유동성 제약이 큰 저소득층에는 의무보유기간이 제도의 활용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부터 중도인출제도가 도입되어 저축자의 유동성 제한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됨
 - 일본의 경우에는 NISA는 1년의 의무보유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는 저축자의 유동성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기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따라서 국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보유기간 5년(3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타당성 평가는 서민 및 농어민 등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근거의 타당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
 - 정부개입 근거의 타당성 평가는 저축지원과 재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책목적이 적절한지와 정부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
 - 지원대상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러한 지원대상을 소득자로 한정하는 것에 어떠한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를 평가
 - 또한 지원방식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과세특례방식, 의무가입기간, 중도인출, 납입한도, 편입자산, 운용방식 및 손익통산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타 조세지출제도 및 재정지출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평가
 - 다양한 과세특례 및 조세지출제도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과 관련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를 파악
 -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 실태를 분석
 - 각종 재정지원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

1. 정부개입 근거의 타당성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서민(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은 서민 및 농어민에 대한 저축지원의 필요성과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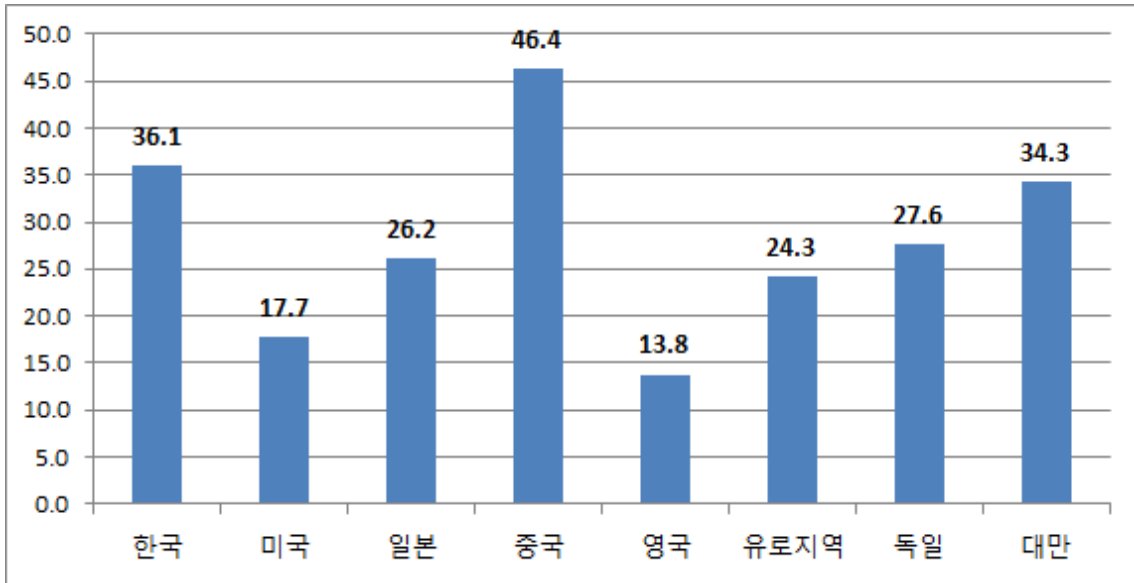
- 먼저,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
 - 거시경제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 미시경제 관점에서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

-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2016년 현재 36.3%로 미국, 일본, 영국 및 유로지역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
 - 중국 46.4%, 대만 34.3%에 이어 한국은 36.1%로 미국 17.7%, 일본 26.2%, 영국 13.8% 및 유로지역 국가평균 24.3%보다 높은 수준
 - 한국의 총저축률은 2008년 32.9%에서 2012년 34.2%, 2016년 36.1% 그리고 2017년 36.3%의 수준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또한 가계저축률은 2010년 4.1%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8.1%였으며,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2017년에는 7.6% 수준
 - 그러나 이는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축률 증가는 소득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거불안, 고용불안 및 노후불안 등 미래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

[그림 III-1] 주요국의 총저축률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접속일자: 2018. 6. 10.

- 그러나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최근 투자재원에 대한 가계저축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자본시장 개방과 글로벌화로 인해 낮아지고 있음
 - 국제적 자본이동이 저축-투자 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계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는 국제적 자본이동성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됨
 - 결국, 국제적 자본이동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서 국가경제에 있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계저축률 제고의 중요도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오용협·이인구, 2007)

- 한편, 저축이 미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존재하며, 저축에 대한 과세는 저축의 세후수익률을 인하시키기 때문에 미래 소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현재 소비를 줄여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저축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소비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현재의 저축에 과세를 할 경우, 미래 소비를 제약하여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이는 미래 소비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축에 대한 과세는 저축을 감소시켜 미래 소비를 축소하는 대체효과를 지님(Besley and Meghir, 2001)

- 또한 저축에 대한 과세로 인해 세후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동일한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세후소득의 감소에 대응하여 현재 소비의 감소와 저축의 증가를 유발하는 소득효과도 존재
 - 따라서 저축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후수익률 하락은 저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체효과가 나타나며, 동시에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나므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한 총효과의 크기를 단정할 수 없음 (전병목·홍범교, 2006)

- 그리고 금융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서민 및 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
 -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의 종합소득은 6% 세율인 반면, 금융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세부담 비교에서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접점(5,22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금융소득의 세부담이 비금융소득에 비해 높으며, 7,220만원까지 금융소득의 평균세율이 14%로 일정하다가 초과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1억 1천만~1억 3천만원 구간의 비금융소득자와 금융소득자의 세부담 차이가 가장 큰 구간(3.2~3.9%)(이상엽·윤성만, 2016)
 - 따라서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5,22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

- 이상의 저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은 투자재원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저축이 미래 소비의 페널티라는 점 그리고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성의 제고 측면에서 저축에 대한 정부개입의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
 - 현재 국제적 개방경제라 하더라도 완전한 국제적 자본이동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축의 투자 촉진과 경제성장의 유인효과는 존재하며, 총저축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가계저축률은 총저축률 수준에 못 미치는 상황

- 이와 더불어, 미래 소비의 재원이 되는 현재의 저축에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미래 소비의 가격인상에 따른 현재 저축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또한 저소득층 등 금융소득이 적은 국민의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저축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는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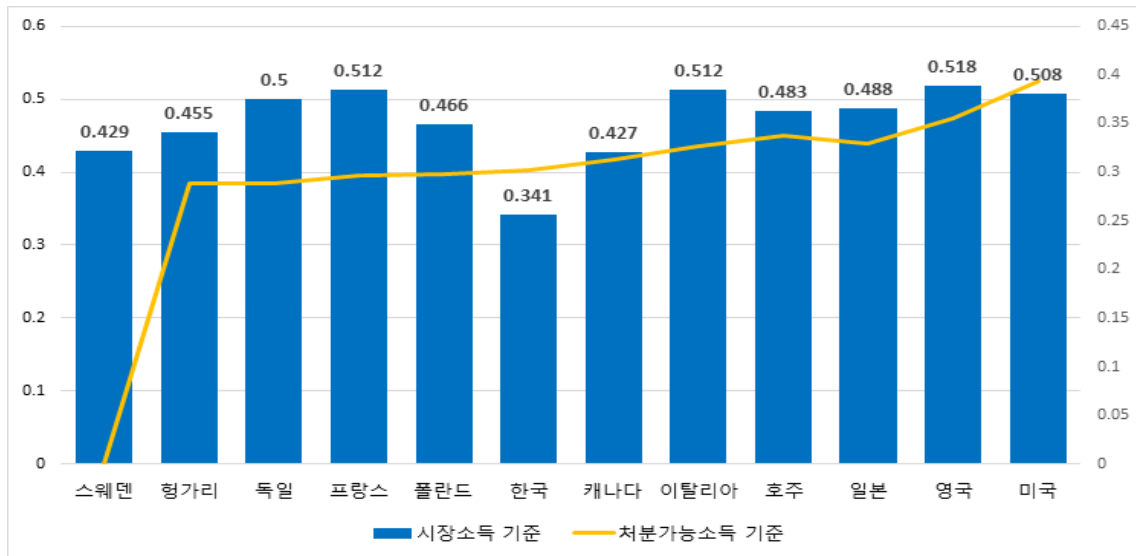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Sherraden(1991)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과정에서 네 가지 측면의 제도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제기
 - 첫째, 저소득층은 대부분이 면세점에 있기 때문에 저축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금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는 자산 관련 조세제도는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보게 되는 역진적인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둘째, 대부분의 자산형성은 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노동에 대한 기회가 고소득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
 - 셋째, 정부의 공공부조가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만을 보유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저축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억제하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음
 - 넷째, 일부 최저소득층은 은행계좌를 가지지 못함(unbanked)으로써 금융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저소득층에게 단순히 공공부조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현금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의 인적·물적 자산형성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탈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창근, 2007)
 - 또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응(매칭)하여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함(신동면, 2009)

- 이러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대표적인 이론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 관점, 사회정책(Social Policy) 관점 및 제도적 저축이론(Institutional Theories of Saving)을 들 수 있음
 - 사회투자 관점: 자산은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자산은 단지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증가시켜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Sherraden(1991)은 저소득층에게 저축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들도 자산형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회정책 관점: 개인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행동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임
 - 자산형성이 저소득층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이므로 적은 액수의 보조금 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제도적 저축이론: Sherraden(2006)은 소득수준, 개인의 선호도 및 정부정책 등 제도적인 요인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 이때, 사회·경제적 관계, 규칙 및 인센티브, 그리고 조직과 가구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규, 절차 및 국가 기관 등이 제도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방안 중의 하나로 금융소득 불평등 수준을 개선하는 것임
 - 한국은 2014년 기준 OECD 35개 국가 중에서 8번째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이며, 통계청 자료로도 지니계수가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각각 0.302와 0.341로 OECD 주요국가 평균 0.3228과 0.4869보다 낮은 수준
 - 특히, 최제민 외(2018)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원인의 하나로 금융소득 불평등효과의 감소로 주장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금융소득 불평등 수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후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에 정부개입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III-2] 주요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자료: 통계청(<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 접속일자: 2018. 6. 8.

-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 및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지원은 단순 가계저축률의 제고목적이기보다는 서민(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의 저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과 노후자금의 마련을 도모한다는 정책목적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및 일정 규모의 소득자에게 차등적 과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 저축률의 제고보다 특정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성격이며, 특정 소득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높임으로써 노년기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투입규모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의 저축·자산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2. 지원대상의 적정성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지원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이 중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를 서민형으로 분류하고 농어민형과 함께 추가적인 과세혜택을 부여

- 이러한 지원대상의 적정성 검토는 크게 지원대상 범위에 특정 소득유형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특정 소득유형 중 일정 금액 이하 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규모를 달리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 지원대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유형계층과 농어민층이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다른 소득유형계층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검토
 - 또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서민형)와 농어민에게 비과세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만 15세 이상 인구는 44,122천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가 28,029천명, 취업자(근로·사업소득자) 26,868천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을 63.5% 수준
 - 국내 경제활동인구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포함되며, 이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음
 - 취업자 중 근로소득자는 약 21,172천명이며, 사업소득자는 21.2%인 약 5,696천명임
 - 또한 근로자 중에는 근로소득자(상시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50.58%인 약 13,590천명, 임시·일용직근로자가 24.1%인 약 6,475천명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4.13%를 차지
 - 특히 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 취업자 중에는 상시근로자인 근로소득자 50.58%와 개인사업자인 사업소득자 21.2%가 포함
 - 따라서 전체 취업자의 71.78%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III-1> 경제활동인구(2018년 4월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인구 수
15세 이상 인구	44,122
경제활동인구	28,029
취업자(근로자, 사업자)	26,868
실업자	1,161
비경제활동인구	16,093
경제활동참가율	63.5
실업률	4.1
고용률	60.9

자료: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8. 6. 1.)

- 또한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는 1,042천가구, 어가는 53천가
구이며, 농업종사자는 약 2,420천명, 어업종사자는 약 122천명 수준
 -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농가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6.1%로 1,698천명
이며 취업자는 6.2% 1,678천명으로 비농가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 비중이 낮
은 수준
 - 그러나 비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2.7%인 데 반해 농가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78.8%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농어민 전체를 본 과세특례의 지원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국가의 농어
민 보호·육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²⁷⁾

〈표 III-2〉 농가와 비농가의 경제활동인구 비교(2018년 4월 기준)

(단위: 천명, %)

구분	계	농가		비농가	
		인구	비중	인구	비중
15세 이상 인구	44,122	2,155	4.9	41,967	95.1
경제활동인구	28,029	1,698	6.1	26,331	93.9
취업자	26,868	1,678	6.2	25,190	93.8
실업자	1,161	20	1.7	1,141	98.3
비경제활동인구	16,093	457	2.8	15,637	97.2
경제활동참가율	63.5	78.8	-	62.7	-
실업률	4.1	1.2	-	4.3	-
고용률	60.9	77.9	-	60.0	-

자료 : 통계청(<http://kosis.kr>, 접속일자: 2018. 6. 1.)

- 만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을 소득기준과 같은 가입요건 없이 모든
국민을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존재
- 한편, 저축여력이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은 본 과세특례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
도 존재

27)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할 만큼 농어민 보호·육성정책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연금계좌 가입률은 10% 미만인 반면,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개인연금계좌 가입률은 60% 이상으로 나타남(이상엽·한종석, 2015)
 - 이는 저소득자이며 기축적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를 활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져, 과세특례의 실효성이 저해되며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히 존재
-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소득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특례혜택을 차등화하더라도, 지원대상 범위 내에서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원대상자가 아닌 개인이 수혜를 받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존재(이상엽·한종석, 2015)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가입자의 과세혜택이 커짐에 따라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또한, 금융소득 또는 금융자산이 많은 개인의 경우에는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친지 등을 통해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
 - 특히, 기축적된 금융자산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본 과세특례를 활용하여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구간을 회피하는 등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무색케 할 가능성도 존재
 - 그러나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 등을 정책대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
- 위의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적정성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
- 첫째, 직전년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함으로써 기축적된 금융자산가들의 가입을 제한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해시키는 부작용을 차단
 -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의 혜택을 제한

- 셋째, 일반형의 경우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
 - 한편,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과 농어민(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한편,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가 아닌 임시직 근로자, 주부 및 은퇴자에 대한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고용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임시직 등에 속한 근로자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임시직 근로자 등은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아니어서 불가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 경제활동인구 중 임시·일용직근로자가 24.1%인 약 6,475천명 수준
 - 또한 주부인 무급가족종사자가 4.13%인 약 1,110천명이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자로 미분류하는 실정
 - 은퇴자의 경우에도 상당 부분 금융소득에 의존하여 생계유지가 필요하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성이라는 문제가 존재

- 특히, 일부 은퇴자(65세 미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존재
 - 65세 이상의 은퇴자 및 주부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나, 현재 법정 의무 정년이 60세이고,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이 임금근로자의 경우 52세, 자영업자의 경우 53세인 점을 고려하면 일부 은퇴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제한됨

- 특히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 발생시점을 당해 또는 직전연도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발생시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년 이상(전전연도)의 휴직자와 일시적인 퇴직자에게는 휴직 또는 실업기간이 2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가입대상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음

- 한시적 휴직자와 퇴직자와 같은 경력단절자에 대한 노동관련 정책지원 방향과 과세특례제도가 부합되지 않는 문제도 존재
- 따라서 최근 노동 관계법상에서도 일시적인 실업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이내의 휴직자 또는 퇴직자를 ISA의 가입대상자로 한다해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²⁸⁾

3. 지원방식의 적정성

가. 과세특례방식의 적정성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 과세특례방식은 크게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 기간 동안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면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며, 간접감면은 준비금,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가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크게 소득공제(세액공제)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등이 존재
 - 소득공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금, 우리사주조합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개인연금계좌가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더불어 조합 등의 출자금,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있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은 발생한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혜택을 부여
-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방식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계층에게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 2017년 『국세통계연보』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774만명 중 56.37%인 약 1,000만명이 면세점에 있으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약 639만명, 평균 결정세액이 115만원 이하 수준²⁹⁾

28)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 따라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민 및 중산층에게는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현상은 개인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비해 저소득계층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만큼 결정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에 만약 세액공제가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근로소득자 중 43.64%에게는 효과가 없지만 결정세액이 있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 약 639만명에게는 면세점 이하 또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

- 실질적으로 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저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보다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비과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저소득층 가입률이 소득공제대상 금융상품의 가입률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임
 - 비과세혜택이 있는 조합 등의 예탁금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 1천만원 이하자의 가입률이 약 10.93%이고 전체 비과세 예탁금의 약 67.24%를 점유
 - 반면,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1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가입률(0.49%, 0.08%)이 매우 낮고, 전체 공제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0.26%, 0.01%) 또한 낮은 수준

- 한편, 「조특법」상 과세특례방식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재정지원형태의 매칭(대응) 지원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저축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
 - 매칭지원은 저소득층의 저축지원을 위해 저축자의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동일한 계좌에 적립해주는 방식
 - 그러나 정부의 매칭비율을 높일 경우, 전체적인 참여율과 납입액은 늘어나지만 실제 저소득층의 참여율은 높아지지 않는다는 실증연구의 결과(Duflo et al., 2006; Harvey et al., 2007)

29) 『2017 국세통계연보』 4-2-4의 자료를 참고할 것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편입자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저율분리과세방식으로 정책대상자에게 상당한 과세혜택을 부여
 - 이러한 지원내용의 적정성 검토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세부담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2년 전체 금융소득자는 약 5,136만명이며, 이 중 비과세 한도 2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전체의 약 87.6%로 대부분을 차지
 - 특히, 금융소득 50만원 이하자의 실효세율이 7.93~12.75%로 다른 소득구간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과세 혜택으로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
 -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200만원(400만원) 초과자는 9% 분리과세혜택으로 인해 현행 종합소득 실효세율보다 낮아지는 효과도 존재
 - 더구나,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 4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전체 금융소득자의 약 93.7% 수준
 - 여기에 만 14세 이하자와 근로·사업소득자를 제외하더라도 금융소득자 대부분이 비과세혜택을 받는 수준
 - 결과적으로 현행 비과세한도로 대부분의 서민이나 농어민들은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

- 또한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9% 저율분리과세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충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의 가입유인으로 작용
 - 비과세한도초과 금융소득에 14%가 아닌 9% 세율로 분리과세함으로써 1,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의 실효세율(9.32~18.14%)을 인하시키는 효과
 - 특히, 저율분리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의 한계구간에 있는 소득자 1,500만~2,000만원 이하자에게 큰 가입유인으로 작용 가능

<표 III-3> 금융소득구간별 금융소득자 인원 현황(2012년 기준)

(단위: 만원, 명, %)

금융소득구간	평균세부담	실효세율	인원 수	비중
0원	0	0	1,432,873	2.79
10만원 이하	101	12.75	33,413,158	65.06
50만원 이하	527	7.93	5,870,157	11.43
100만원 이하	718	5.91	2,716,809	5.29
500만원 이하	857	6.42	6,260,473	12.19
1,000만원 이하	1,890	9.40	919,298	1.79
1,500만원 이하	4,990	11.26	323,552	0.63
2,000만원 이하	7,045	12.28	195,158	0.38
2,000만원 초과	41,114	18.14	225,973	0.44
계	-	-	51,357,451	100

자료: 이상엽·윤성만(2016),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이라는 문턱효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에 근접한 금융소득 수준인 고액자산가 또는 고소득자에게는 타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종합과세 기준금액 범위에서 벗어날 유인이 존재
 - 특히,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으며,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접근성이 높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감소와 정부의 상당한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나. 의무가입기간과 중도인출의 허용

- 의무가입기간은 과세특례 금융상품별로 상이하며, 의무가입기간이 없는 과세특례 금융상품도 존재
 -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보유기간이 5년이고, 장기저축성 보험의 경우 10년으로 의무보유기간이 설정됨
 - 반면, 비과세종합저축 등은 의무가입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저소득 계층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보유에 어려움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결과
 - 이러한 사유로 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지만, 2018년부터 농어민, 서민 및 청년의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최소 의무가입기간이 없는 조합 등의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등에 비해 서민형, 농어민형 및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의무가입기간 3년은 상대적으로 긴 편임

-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없거나 짧을수록 금융자산이 적거나 저축실적이 없었던 계층에 대한 저축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은 정책대상자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비해서 조세지출규모가 큼

-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 또는 가계의 저축수준이 은퇴를 대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의 저축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음
 - 국내 개인 및 가계의 노후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음
 -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가입률은 10% 미만 수준
 - 장기저축성 보험 중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서도 납입액의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현재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제도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노후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결론적으로, 개인연금계좌와 같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필요는 있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해서는 입출금을 자유롭게

게 할 수 있도록 허용(현재 중도인출제도 시행 중임)함으로써 서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

-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중복수혜를 제한하거나 제도를 단순화한다는 가정하에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
- 이로 인해 서민, 중산층 등이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미국은 Roth IRA만 5년 의무가입기간이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 의무가입기간에 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 이러한 측면에서 2018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중도인출을 허용한 것은 이러한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이라고 판단
 -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민·중산층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은 적절

다. 납입한도

- 각 과세특례 금융상품별 납입한도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상품의 납입한도의 설정은 자산이동효과와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가입한도에 따라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연납입한도가 2천만원, 조합 등 예탁금 3천만원, 조합 등 출자금 1천만원
 -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일시납저축성 보험 1억 5천만원,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 월 150만원 등
 - 납입한도의 규모에 따라 기존 저축자들에게 귀속되는 혜택이 결정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의 개인당 평균잔고가 약 223만원(10만원 이하 가입자 제외시 78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납입한도 2,0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
 - 또한, 현재 1,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7.6%인 16만명에 불과하나, 이들의 가입금액이 전체 가입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

면 고소득층이나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납입한도는 세수손실이라는 조세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자산이동효과를 제한하는데 효과적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액자산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음
 - 연간한도 또는 월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이 금융자산을 일반과세 계좌에서 과세특례 계좌로 일시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이 점진적으로 적립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간납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총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 고액자산가들이 더 많은 자산이동이 가능한 반면,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할 경우 자영업자 또는 비정기적인 소득이 많은 계층을 차별하는 문제가 존재
 -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에게는 월납입한도처럼, 짧은 기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수입이 정기적인 계층에 비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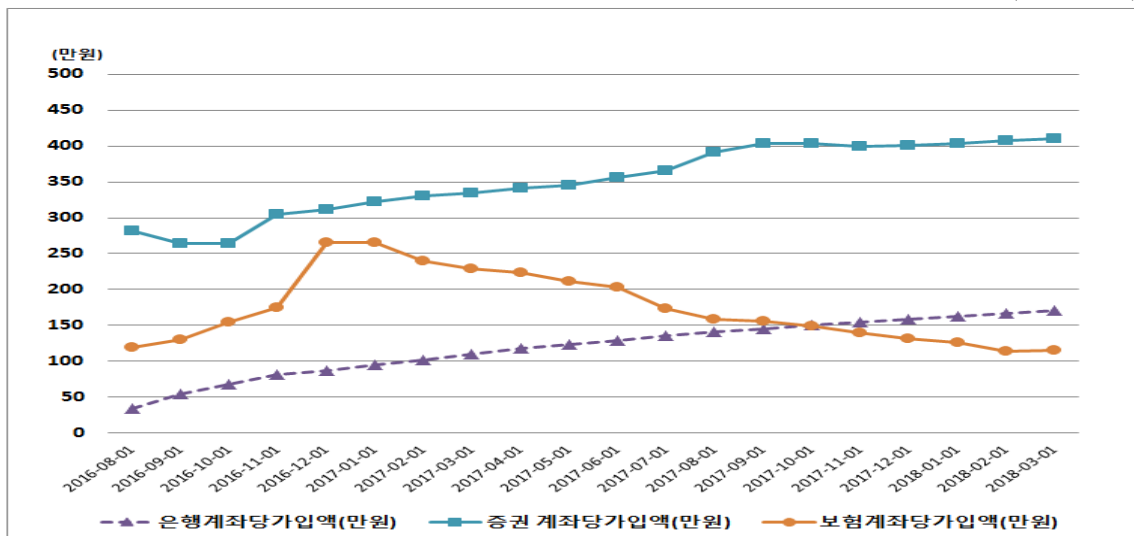
- 즉, 총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나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모두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
 - 이는 가입한도까지 즉시 납입할 수 있는 개인이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
 - 총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기존의 축적된 자산을 이동시킴으로써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
 - 분기·월납입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금융소득에 비과세하고 납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수직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는 단점

-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할 경우, 납입한도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은 발생하나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같이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
-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총납입한도, 연간납입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계좌에서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서는 200만원(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저율분리과세
-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 2천만원, 5년간 총 1억원의 납입한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자에게는 높은 수준이며, 이 한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저축여력이 높은 계층은 일부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당 평균 납입금액은 223만원으로 연납입한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업권별로 은행권은 계좌당 202만원, 증권사는 464만원 및 보험사는 100만원 수준

[그림 III-3] 업권별 계좌당 평균 납입액 추이

(단위: 만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접속일자: 2018. 6. 14.)

- 누적납입액(투자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자 일반형은 267만원, 농어민 일반형은 1,137만원 및 서민형은 193만원 수준에 불과
 - 도입 후 2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납입금액은 각각 134만원, 568만원 및 97만원 수준에 불과
- 따라서 이러한 납입실적을 고려할 때, 현재 실적대비 연 2천만원 납입한도는 과도한 수준으로 연납입한도의 하향 조정을 고려할 필요
 - 이러한 조정으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라. 편입자산

- 개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과세특례별 투자대상 금융상품이 서로 상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반면, 조합 등의 예탁금 등은 특정 상품에 한정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퇴직연금은 투자금지대상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자산 범위에 포함
- 저축수준이 낮은 계층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위험선호도가 낮은 개인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험선호도를 가진 개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 또한 최근 일반적인 자산형성의 방법이 단일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운영 및 관리하는 추세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게끔 다양한 편입자산 구성이 필요
 -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자산형성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투자금융상품까지 편입자산 범위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
-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퇴직연금이 투자 가능한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퇴직연금이 실질적 노후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활성화를 추진

- Negative 운용규제방식으로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 보장자산을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는 방식
-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 비보장자산들을 제외하고 모든 원리금 비보 장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투자금지대상: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채권, 파생상품형펀드, 고위험 파생결 합증권 등

-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펀드(ETF, REITs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 편입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 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이는 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 성향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호가 다르기 때 문에 특정 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했다는 점 에서 긍정적
 - 다만, 주식, 해외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따라서 금융업권 간 공정한 경쟁 및 투자자원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 능한 모든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투자대상을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보험까지 확 대하는 것이 바람직
 -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일본은 편입자산에 주식과 채권까지 포함하는 등 다 양한 편입자산을 운용 중
 - 현재는 주식, 보험 등 일반 개인들의 직접투자대상 자산 편입을 제한하고 있 으나 배당 목적의 주식투자, 보장 성격이 강한 보험까지 편입자산을 확대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이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 가입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마. 운용방식 유형: 신탁형과 일임형

-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서비스는 대부분이 고액자산가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데, 본 과세특례는 일임형 ISA를 통해 서민 및 농어민까지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계됨
 -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들은 고액자산가 또는 고액가입자를 대상으로 PB 서비스를 통해 금융, 부동산, 절세 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서민이나 중산층에 대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따라서 일임형 ISA 유형을 통해 서민이나 농어민까지 금융기관의 종합자산관리서비스와 유사한 투자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일임형 ISA는 가입자의 구체적인 운용지시가 없이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편입자산의 선택 및 운용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현재 대부분이 금융기관 설계 모델포트폴리오에 따라 자산이 운용됨
 - 모델포트폴리오는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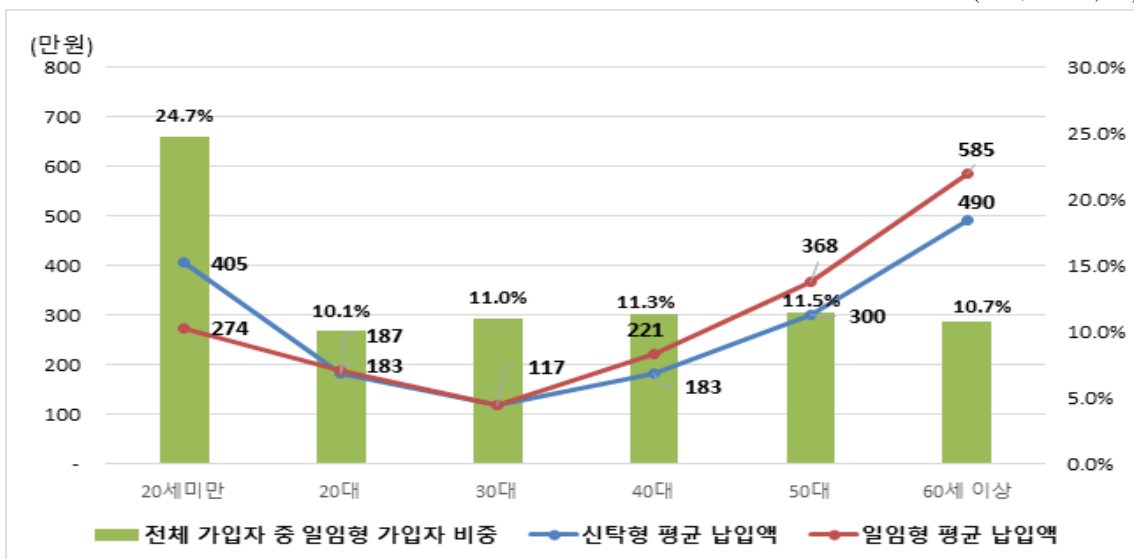
- 그러나 일임형 ISA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가입자 수와 납입액 실적이 신탁형 ISA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 실질적인 일임형 ISA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됨
 - 일임형의 가입자는 전체의 11.1% 약 23만명이며, 일임형은 12.7%로 5,935억원 수준
 - 업권별 일임형 가입실적으로 보면, 은행 가입자의 10.3%, 총납입액의 13.8%가 일임형이며, 증권사 가입자의 19.5%, 총납입액의 6.7%로 절대적으로 신탁형의 활용도가 높은 상태
 - 보험사의 경우, 투자일임업 승인받은 기관이 없는 상태로 일임형 가입실적은 없는 상황(2018년 4월 말 10개 은행, 15개 증권사가 승인)
 - 이렇게 일임형의 가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편입자산 중 예·적금 형태로 전체 가입액의 약 64%를 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금융기관에 일임하여 투자하는 형태가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

- 연령대별 ISA 가입실적에서 10대 이하 가입자의 일임형 가입자가 24.7%로 가장 높고, 일임형 평균 납입액은 30대까지 줄어들다가 40대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로 기축적된 금융자산이 많은 고연령대일수록 납입액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

- 20대 이상 연령대는 평균 10%대이며, 평균 납입액은 30대가 117만원, 50대가 368만원 그리고 60대 이상이 585만원으로 증가
- 이 결과는 일임형에 대한 선호도는 10대가 높으며, 40대 이상 가입자 중 저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자들이 일임형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그림 III-4] 연령대별 일임형 ISA 가입실적

(단위: 만원, %)



자료: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 접속일자: 2018. 6. 14.)

바. 손익통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간 간 그리고 편입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하다는 점에 그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기간 간 통산: 가입기간 동안 각각의 편입자산에서 발생한 전체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저축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로 수용성이 높음
 - 편입자산 간 통산: 예·적금, 펀드, 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편입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저축자의 실질적인 이익에 과세하는 효과
- 이러한 손익통산을 통해 예금과 투자 간 조세중립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중립적 자산운용을 유도하여 금융시장의 업권별 균형발전에 기여 가능

- 또한 세제혜택 및 편의성이 대폭 보장된 금융상품 도입에 따라 실물자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금융시장으로 유입효과도 기대 가능

3. 유사·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가. 조세지원제도와 유사·중복성 검토

- 2018년 저축지원 분류기준의 조세지출전망치는 총 1조 5,050억원으로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42.32%인 6,369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23.08%인 3,474억원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14.27% 순
 - 저축지원 분류기준상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규모는 해지 또는 만기가 되어야 산정이 되기 때문에 조세지출규모가 파악되지 않음
- 현재 저축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제도가 개별적으로 도입이 되어 서로 조화롭지 못하며 중복적인 부분이 존재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현재 8개 항목이 있으며,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이 운용 중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해외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7년 말로 일몰종료

〈표 III-4〉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18년 전망	비중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2,148	14.27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310	2.06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111	0.74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불가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474	23.08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620	4.12
7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6,369	42.32
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9	해외주식 투자전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추정불가	
	합계	15,050	1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저축지원 조세지출제도로 「조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 2, 제87조의 6, 제88조의 2, 제88조의 4, 제88조의 5, 제89조의 3 등이 있으며, 일부 중복가입이 가능
 - 이러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사업들은 정책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8개 상품과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은 중복가입이 가능
 - 만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수혜 가능
 - 만 65세 이하의 근로소득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및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국세청 근로소득 분위별 납세자료(10,000명)상 2개 이상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복가입자 비중은 15.2%이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가입액 비중은 전체의 35.8%로 소수의 가입자가 큰 금액을 중복가입한 상황
 - 특히 미중복 가입자 1인당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은 108천원인 데 반해, 중복 가입자 1인당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은 495천원이며, 특히 4개 중복가입자는 1인당 1,286천원의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표 III-5> ISA 가입자 중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복가입 현황(N=10,000명, 근로소득자)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중복가입					
	미가입	1개	소계	2개	3개	4개
가입자	5,714	2,763	1,523	1,243	251	29
(비중)	57.1	27.6	15.2	12.4	2.5	0.3
가입액	-	297.9	753.8	515.1	201.4	37.3
(비중)	-	14.2	35.8	24.5	9.6	1.8
1인당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천원)		108	495	414	802	1,286

주: 1. 가입 개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종합저축, 조합등 출자금과 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 등 6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 개수를 의미
 2. 가입액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합계액을 의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이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기축적된 자산이 많거나 저축여력이 높은 소수의 저축자가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중복가입 현황에서 ISA와 중복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가입한 저축자가 51.6%로 가장 높으며, ISA와 중복가입한 저축자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그 예탁금 전체 금융소득의 57.9%로 가장 높게 분석됨

○ 중복가입자가 가장 많은 상품은 조합 등 출자금 45.1%, 조합 등 예탁금 23.9%이며, ISA와 중복가입 금융상품은 조합 등 출자금 51.6%, 조합 등 예탁금 28.8%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10.2%로 나타남

<표 III-6>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중복가입 현황(N=10,000명)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중복가입자				가입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전체 중복		ISA 가입자		전체 중복		ISA 가입자	
	인원 수	비중	인원 수 (비중)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비중
비과세종합저축	393	6.4	60 (15.3)	10.2	149	14.2	19 (12.8)	15.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064	17.4	0 (0.0)	0.0	1.1	0.1	0 (0.0)	0.0
조합 등 출자금	2,761	45.1	305 (11.0)	51.6	130	12.4	14 (10.8)	11.2
세금우대저축	439	7.2	56 (12.8)	9.5	131	12.5	19 (14.8)	15.5
조합 등 예탁금	1,459	23.9	170 (11.7)	28.8	641	60.9	73 (11.3)	57.9
합계	6,116	100	591 (9.7)	100	1,052	100	126 (11.9)	100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또한 ISA와 중복가입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은 조합 등 예탁금이 57.9%로 가장 높으며, 이어 세금우대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이 15.5% 그리고 조합 등 출자금이 11.2%로 나타남
 - 즉, 조합 등 예탁금의 전체 금융소득 중 ISA와 중복가입한 저축자의 예탁금 금융소득이 57.9%이며, ISA와 중복가입한 세금우대저축 가입자 그리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금융소득이 각각 15.5%, 11.2%라는 의미
 - 그리고 금융상품 중 ISA와 중복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비과세종합저축임
- 이러한 중복수혜가 가능한 복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많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
- 저소득층은 단일의 과세특례 금융상품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입한도까지 저축액 부족
 - 따라서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별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통합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가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일몰종료되는 과세특례 금융상품들을 통합 가능

〈표 III -7〉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 현황

구분	도입 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조특법〕 제86조의3)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대표·소상공인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 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인 무주택근로소득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업인의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농기소득 보전 〔조특법〕 제87조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수익률 확보로 리츠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형 임대주택 관리업 육성 및 임대주택시장 안정화〔조특법〕 제87조의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한 자	-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 배당소득 5% 저율과세 - 액면가액 2억원 이하: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지원〔조특법〕 제88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노인, 장애인 등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자의 재산형성 촉진,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 노사 간의 협력체제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조특법〕 제88조의 4)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한 우리사주조합원	- 출자금액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구분	도입 목적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p>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p>	<p>농업인·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저축의욕 고취(「조특법」 제88조의 5, 제89조의3)</p>	<p>농협·수협·신협 등의 조합원·회원 등</p>	<p>- 배당소득 비과세(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 이자소득 비과세(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p>						
<p>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p>	<p>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조특법」 제91조의 18)</p>	<p>ISA에 가입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농어민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p>	<p>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p> <table border="1" data-bbox="612 262 807 1032"> <thead> <tr> <th>소득수준</th> <th>비과세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td> <td>250만원</td> </tr> <tr> <td>그 외</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소득수준	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250만원	그 외	200만원
소득수준	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250만원								
그 외	200만원								
<p>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p>	<p>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장기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p>	<p>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자 등</p>	<p>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일시납 보험: 1인당 총보험료 1억원 이하 • 월적립식 보험: 1인당 월보험료 150만원 이하</p>						
<p>연금계좌세액 공제</p>	<p>국민의 자발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연금저축 장려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소득세법」 제59조의3)</p>	<p>연금저축에 가입한 자</p>	<p>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연 400만원* (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을 추가) 한도로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경우 15%) *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공제한도는 300만원</p>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나.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현행 조세지출과 더불어 재정사업으로 서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용 중에 있음
- (농어민목돈마련저축) 금융위원회의 사업으로 농어민 자산형성을 지원
 - (정책대상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일반 저축 가입대상자, 저소득 저축 가입대상자, 저축 가입제한자의 요건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III-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요건

구분	요건
일반 저축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헥타르 초과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자 - 5톤 초과 20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양식어업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어선원 - 5헥타르 초과 10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저소득 저축 가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농업인 (단,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는 제외함) -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거나 어선을 소유하지 않은 어업인 -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 이하 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농업인 - 5헥타르 이하의 산림과 토지(합산분)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저축 가입 제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자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연도의 중위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가입자 외 세대원 소득 불포함)

자료: 농협 홈페이지,
[https://img.nonghyup.com/nhc/file/ebank/product/guide/%EB%86%8D%EC%96%B4%EA%B0%80%EB%AA%A9%EB%8F%88%EB%A7%88%EB%A0%A8%EC%A0%80%EC%B6%95_%EC%83%81%ED%92%88%EC%84%A4%EB%AA%85%EC%84%9C\(%EB%86%8D%C2%B7%EC%B6%95%ED%98%91\).pdf](https://img.nonghyup.com/nhc/file/ebank/product/guide/%EB%86%8D%EC%96%B4%EA%B0%80%EB%AA%A9%EB%8F%88%EB%A7%88%EB%A0%A8%EC%A0%80%EC%B6%95_%EC%83%81%ED%92%88%EC%84%A4%EB%AA%85%EC%84%9C(%EB%86%8D%C2%B7%EC%B6%95%ED%98%91).pdf),
 검색일: 2018. 4. 23.)

- (지원방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서 가입자의 소득수준, 저축기간, 계약만료여부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

<표 III-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단위: %)

사유	저축 구분	계약(저축) 기간	장려금 지급률(평균잔액 기준)
계약 만료	일반저축	3년	2.7
		5년	7.5
	저소득저축	3년	9
		5년	24
중도 해지	일반저축	3년 이상	0.54
		4년 이상	3.36
	저소득저축	3년 이상	3.75
		4년 이상	6.8
사망, 천재지변 등	일반저축	3년	2.7
		5년	7.5
	저소득저축	3년	9
		5년	24

자료: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 (의무보유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 기간은 3년 또는 5년
 - (가입한도)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 한도는 240만원으로 월납 저축은 5천원 이상, 분기납 저축은 1만 5천원 이상, 6개월납 저축은 3만원 이상 저축해야 함
- (희망·내일키움 통장)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근로빈곤층의 목돈마련을 지원
- (정책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I)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자 생계·의료 수급가구(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희망키움통장 II)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
 - (지원방식)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장려금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만원 저축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36만원으로, 3년 만기 탈수급 시 3인 가구 최대 2,200만원 적립, 월 5만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은 월평균 18만원

- (희망키움통장 II)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 저축액과 동일비율로 지원, 3년 만기 시 평균 720만원
 -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은 본인저축액과 동일비율로 지원되며, 추가적으로 내일키움장려금은 시장진입형의 경우 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은 본인저축액의 1:0.5이 지원, 내일키움수입금은 사업단별 차등지급되는데 월 최대 15만원이 추가 지원됨
 - (의무보유기간) 희망키움통장 I은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 있고, 희망키움통장 II는 통장 3년 유지에 교육이수 조건이 추가로 있으며, 내일키움통장은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해야 하며 교육이수도 해야 함
 - (가입한도) 월 저축액이 정해져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I과 내일키움통장은 5만원 혹은 10만원을 선택하여 월불입할 수 있고, 희망키움통장 II는 월불입액 한도 10만원
- (디딤씨앗통장)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
- (정책대상자)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아동 및 만 12~17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2018년부터 신규가입 가능)
 - (지원방식)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매월 일정금액 저축 시 국가에서 1:1 매칭지원금 적립, 최대 월 4만원 지원
 - 단, 자금의 사용용도가 대학(대학원)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꿈나래통장) 서울특별시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적립지원을 위한 사업
- (정책대상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만 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동일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³⁰,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희망두배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

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CDA) 등 참여가구³¹⁾는 신청할 수 없음

- (지원방식) 수급자 여부에 따라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0.5 비율로 대응지원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매월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중 선택하여 저축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

- (정책대상자) 정책대상자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이들을 고용한 기업으로 하며 구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음

<표 III-10>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¹⁾

청년	기업
(취업 요건)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 취업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한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소비 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는 제외	

주: 1)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8)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검색일: 2018. 4. 23.)

30)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31)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지원방식)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업지원금으로 90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으로 700만원을 지원. 단 기업은 지원받은 700만원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지원을 위해 적립해야 함
 - (의무보유기간) 2년
 - (가입한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2년간 300만원, 즉 매월 12만 5천원을 불입해야 하고, 기업은 청년을 위해 정부지원금 중 400만원을 적립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보건복지부에서 생계수급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사업
- (정책대상자) 신청 당시 생계수급 가구의 만 15~34세인 청년이 근로·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일 경우
 - (지원방식) 매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월소득 81만원 기준 평균 30만원, 월소득의 37%)을 지급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3년 이내 생계탈수급을 조건으로 하고, 가입 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연속 6회 소득하한에 미달하는 경우 중도 해지되며,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주거, 교육, 취·창업으로 제한하여 증빙이 필요함
-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정책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 중인 청년으로,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며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포함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신용유의자인 경우, 보건복지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은 불가능함³²⁾

32)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 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타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 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 영광군 청년희망플러스통장),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구,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지원방식) 매월 근로소득으로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혹은 3년 저축하는 경우 동일 금액을 적립금으로 지원
 - (의무보유기간) 2년 또는 3년
 - (가입한도) 월 10만원 혹은 15만원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정책대상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및 대상자,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등은 제외
 - (지원방식) 경기도 예산 등으로 매월 저축액의 1:1.72 매칭 지원
 - (의무보유기간) 3년
 - (가입한도) 매월 10만원
-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정책대상자)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34세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참여자, 자영업자, 청년 디딤돌 카드 가입자 등은 제외
 - (지원방식)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1 매칭 지원
 - (의무보유기간) 3년
 - (가입한도) 매월 10만원, 단 저축금액은 학자금 대출 상환(교육비), 주택(임대보증금), 결혼 자금, 창업 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이후 사용 용도 증빙 필요함
- (국군장병 희망적금) 국방부는 청년장병의 제대 후 취·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 (정책대상자)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 복무 간부

는 중복가입 가능)는 신청 불가능하며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함

- (지원방식) 대상 은행과의 협약 적금금리(현 5.3~5.8%) 외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희망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도록 「조특법」을 개정할 예정³³⁾
 - 월 20만원 납입, 21개월 복무 시 약 4만원의 세금혜택이 가능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월 20만원이나 4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

4. 타당성 평가 요약

- 타당성 평가는 크게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함
-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
 - 거시경제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 미시경제 관점에서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
 - 다만,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6.3%(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투자재원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저축이 미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페널티 성격이 존재하므로 저축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소비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현재의 저축에 과세를 할 경우, 미래 소비를 제약하여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금융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4%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

33) 국방부 보도자료(2018. 3. 21.) p. 14.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 (지원 대상의 적절성)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 첫째, 직전연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셋째, 일반형의 경우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지원 방식의 적절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방식이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보다는 서민·중산층에게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과세·감면방식은 적절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 『2017년 국세통계연보』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774만명 중 43.64%인 774만명이 면세점에 있으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약 639만명, 평균 결정세액이 115만원 이하 수준³⁴⁾
-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이 서민·중산층에게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은 3년

34) 『2017 국세통계연보』 4-2-4를 참조할 것

-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로 장기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임
- (중도인출 허용)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민·중산층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은 적절
- (가입한도)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가입한도는 조세지출규모와 자산이동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가입한도에 따라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이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의 개인당 평균잔고가 약 223만원(10만원 이하 가입자 제외 시 78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가입한도 2,0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
- 또한, 현재 1,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7.6%인 16만명에 불과하나, 이들의 가입금액이 전체 가입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이나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편입대상 금융상품)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펀드(ETF, REITs 포함), 과생결합증권(ELS, ETN 등),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 편입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이는 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 성향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다만, 주식, 해외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유사·중복 여부) 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저축지원 조세지출제도로 「조세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6,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등이 있으며, 일부 중복가입이 가능
- 이러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사업들은 정책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8개 상품과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은 중복가입이 가능
 - 만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수혜 가능
 - 만 65세 이하의 근로소득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및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국세청 근로소득 분위별 납세자료(10,000명)상 2개 이상 중복가입자 비중은 15.2%이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금융소득 비중은 35.8%로 소수의 가입자가 큰 금액을 중복가입한 상황
 - ISA와 중복가입자는 9.7%, ISA와 중복 가입하여 발생한 비과세·감면 소득은 11.9%
- ISA 가입자 중 조합 등 출자금의 중복가입자가 51.6%로 가장 높으며,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금액이 15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 또한 ISA 가입자 중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자는 각각 10.2%와 9.5%이며, 중복가입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전체의 각각 15.5%씩으로 나타남

- 조합 등 출자금이나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및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가입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계좌와 중복가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

-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등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 매칭지원하고 있어 본 제도와의 중복성은 일부 존재
 - 재정지출사업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자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자에 비해 제한적
 - 이런 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 본 제도와의 중복수혜가 가능

- 본 제도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에 대한 타당성은 일부 존재하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사·중복수혜 문제의 해결이 필요
 - 저축이 투자의 재원 역할을 하며, 타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정부의 저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제도의 가입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고소득층, 즉 이미 금융자산을 축적한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은 의문
 -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방식이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비해 서민·중산층의 저축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행 지원방식은 적절
 - 그러나 현재 각기 다른 목적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축지원에 대한 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본 연구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효과성 분석은 크게 제도의 실효성, 경제적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으로 구분

- 제도의 실효성은 본 과세특례제도의 신규 가입자와 해지자의 행태 분석을 통한 제도의 활용 실태 분석을 분석하고, 본 제도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적 활용도와 유사 과세특례제도와 비교하여 본 과세특례제도를 얼마나 활용하는지를 평가하는 상대적 활용도로 구분
 - 제도의 활용 실태 분석에서는 가입자 수 및 납입액의 추세와 신규 가입자와 해지자의 규모와 납입액을 분석하고, 계좌의 이탈률과 신규 가입률을 분석하여 금융시장에서의 본 과세특례제도의 선호도를 평가
 - 절대적 활용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지원대상자(정책대상자)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와 한도액에 비해 어느 정도의 저축수준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가
 - 또한 상대적 활용도는 유사 과세특례인 연금계좌(연금저축)와 비교하여 정책대상자들이 어느 정도의 활용 수준인지 그리고 저축액 수준은 어느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

- 경제적 효과성 분석에서는 국세청 납세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모형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제도가 저축지원효과와 자산이전현상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정책목적인 자산형성지원효과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그리고 형평성 분석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수혜자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입률)와 어느 정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가입액)를 분석함

1. 제도의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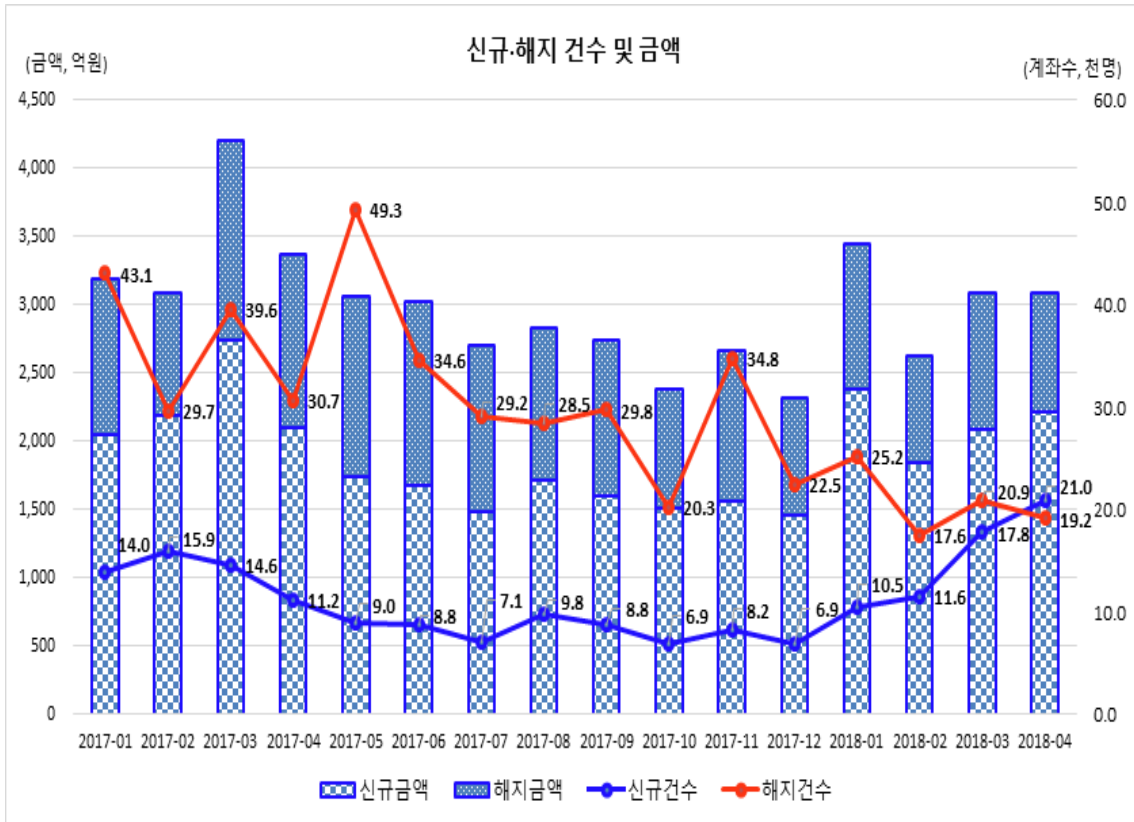
가. 제도의 활용 실태 분석: 신규 가입자 및 해지자 행태를 중심으로

- 2018년 4월 말 현재 총가입자수는 약 210만명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19만명 감소하고 있으나, 총가입액은 4조 6,800억원으로 약 8,363억원 증가
 - 총가입자가 최고치였던 2016년 8월의 약 243만명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6년 말 약 241만명, 2017년 6월 약 228만명, 2017년 말 약 207만명, 2018년 3월 약 207만명이었으나, 2018년 4월 약 210만명으로 다시 증가세
 - 총납입액은 본 과세특례제도 초기 3개월 동안 전월 대비 4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2016년 6월 2조 4,626억원이었으며, 이후 2017년 4월까지 전월대비 증가율이 7%대에서 2%대를 체감하였고, 2017년 5월부터 2017년 말까지 전월대비 증가율이 1% 수준으로 2017년 말 4조 2,287억원
 - 이러한 수준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기존 가입자의 월적립식으로 인한 납입액 증가 수준으로 본 과세특례의 신규 납입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2018년 1월부터는 전월대비 증가율이 2%대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 2018년 4월 말 현재 약 4조 6,800억원 수준
 - 이러한 현상은 2018년부터 개정된 비과세한도 증액, 중도인출제도 등 저축자에 대한 과세혜택을 확대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및 해지 추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해지건수가 신규 가입건수에 비해 높으나 신규 가입금액이 해지금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2017년 1월 해지한 가입자가 43.1천명인 데 반해 신규 가입은 14천명이었으며, 2017년 11월에는 해지 34.8천명, 신규 8.2천명이었으나 2018년 1월에는 해지 25.2천명, 신규 10.5천명으로 그 차이가 감소
 - 특히 2018년 3월에는 해지 20.9천명, 신규 17.8천명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2018년 4월에는 해지 19.2천명, 신규 21천명으로 반전 현상
 - 또한 2017년 1월 신규 가입금액과 해지금액이 각각 2,050억원과 1,142억원으로 대체로 신규 가입금액이 해지금액을 상회하는 추세
 - 특히 2018년 1월부터는 신규 가입금액이 해지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그림 IV-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및 해지 추이

(단위: 억원, 천명)



자료: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 계좌 해지 대비 신규 가입건수 및 금액비율 현황과 같이, 해지 대비 신규 가입건수와 가입금액의 비율이 2017년 12월까지 작은 변동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1월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
 - 해지 대비 신규 가입건수는 2017년 2월 53.5%였던 것이 2017년 12월 30.7%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2월 65.9%로 증가하였고, 2018년 4월 현재 109.4%로 신규 가입건수가 해지건수를 추월
 - 이렇게 2018년에 신규 가입 추세가 회복된 이유는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비과세한도를 종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청년형, 서민형, 농어민형의 의무가입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한 정책효과로 판단
 - 또한 해지 대비 신규 가입금액의 비율이 100%를 넘으며 2017년 2월 244.4%였으나 2017년 11월 142.9%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내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18년 1월 224.2%, 2018년 3월 253.1%로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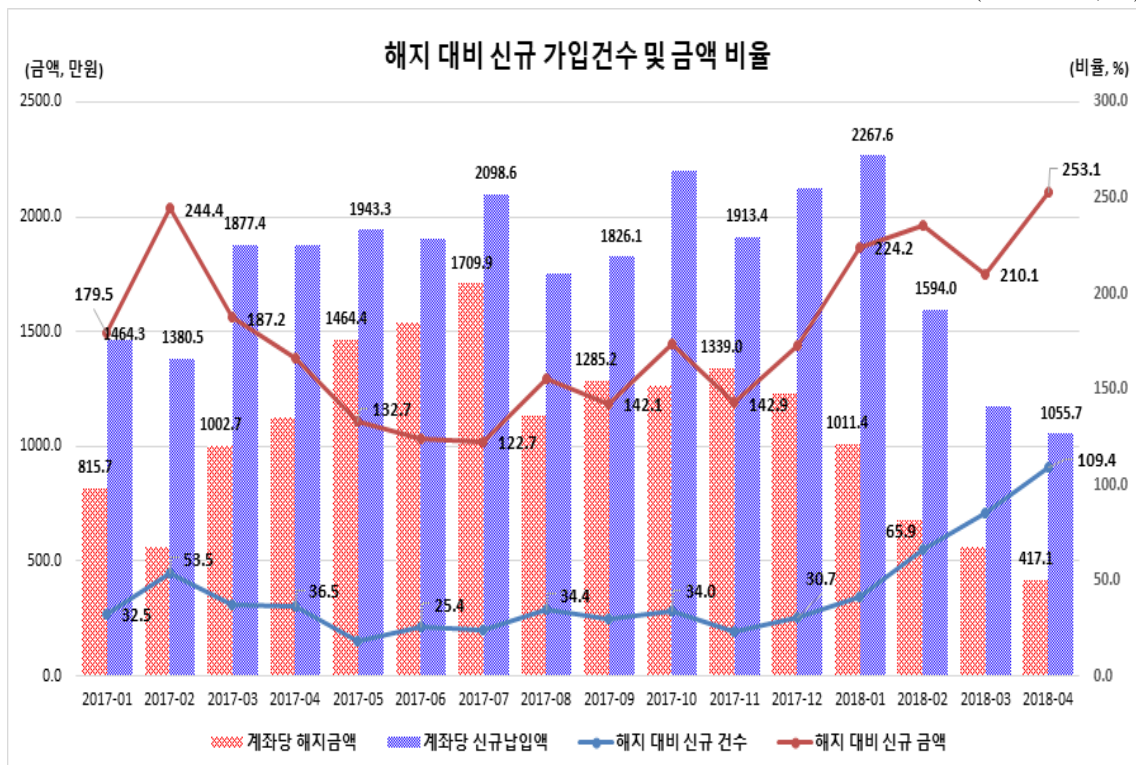
- 해지 대비 신규 가입건수가 2017년 말까지 25~66%였고, 해지 대비 신규 가입금액이 123~245%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해지건수는 많지만 해지금액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시사

□ 따라서 신규 가입자와 해지자의 납입액을 비교하면, 대체로 해지자의 평균 납입액보다 신규 가입자의 평균 납입액이 높은 수준

- 2017년 해지자의 납입액이 평균 약 1,206만원인 데 반해 신규 가입자의 납입액은 평균 약 1,863만원이며, 2018년(1월~4월)은 각각 666만원, 1,523만원 수준
- 해지자의 평균 납입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저축여력이 낮은 계층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해지하거나 절세혜택이 큰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자산이동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특히 해지자의 납입액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현격히 하락(1,206만원에서 666만원)한 것에서도 저축여력이 낮은 계층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신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계층일 가능성도 존재

[그림 IV-2] 해지 대비 신규 가입건수 및 금액 비율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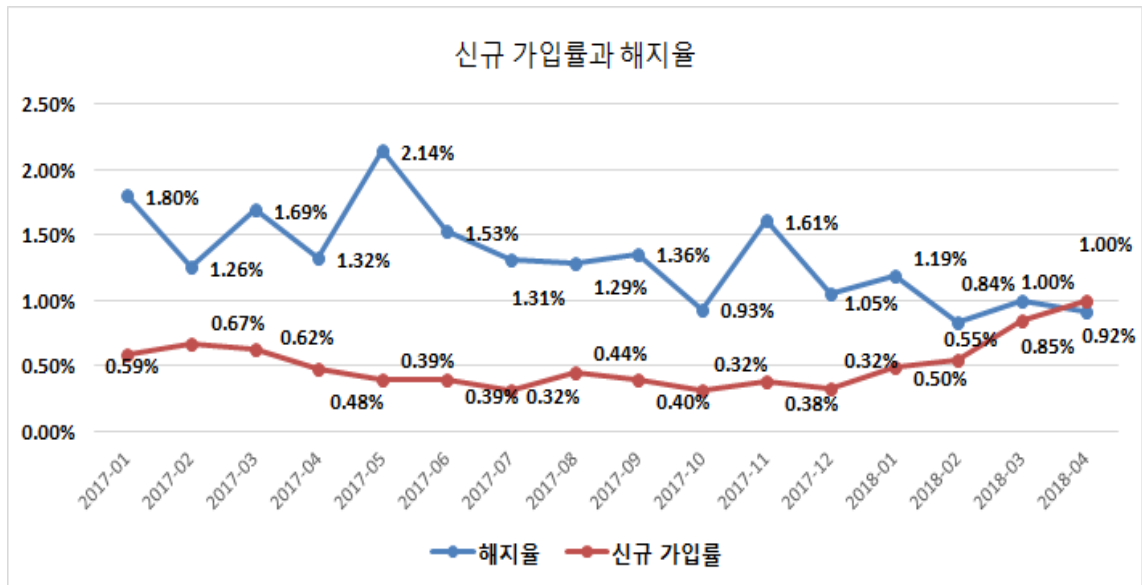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 신규 가입률과 해지율의 추이 그래프와 같이, 신규 가입률에 비해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2018년 4월에는 신규 가입률이 높아지는 추세로 전환
 - 신규 가입률[=신규 가입계좌 수:(월말 총계좌 수-신규 가입계좌 수+해지계좌 수)]은 2017년 1월~6월까지 0.52%, 2017년 7월~12월까지 0.36%로 감소하였으나 2018년 1월~4월까지 다시 0.72%로 상승하여 2018년 4월 현재 1%
 - 2017년 1월부터 해지율과 신규 가입률의 차이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2018년 4월에 반전
 - 이에 반해 해지율[=해지계좌 수:(월말 총계좌 수-신규 가입계좌 수+해지계좌 수)]은 2017년 1월~6월까지 평균 1.62%, 2017년 7월~12월까지 1.26%로 감소하다가 2018년 1월~4월 0.98% 대폭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4월 현재 0.92% 수준

[그림 IV-3] 신규 가입률과 해지율의 추이

(단위: %)



주: 신규 가입률 = 신규 가입계좌 수:(월말 총계좌 수-신규 가입계좌 수+해지계좌 수), 해지율=해지계좌 수:(월말 총계좌 수-신규 가입계좌 수+해지계좌 수)

자료: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 위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신규 가입자와 해지자의 행태 분석 결과, 소액 가입자의 해지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소액 가입자가 해지하고 고액 가입자가 신규 가입하는 현상이 현저함

- 그러나 최근 해지율과 신규 가입률의 차이가 축소되어 본 과세특례의 선호도가 개선되고 있음

나. 절대적 활용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절대적 활용도는 잠재적 가입대상자인 전체 근로·사업소득자 중에 얼마만큼이 본 과세특례를 활용하고 있는지와 전체 소득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이 본 과세특례에 납입되었으며, 연납입액 또는 총납입한도액에 비해 실납입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가입자 기준) 2018년 4월 말 현재 총가입자 수는 약 210만명이며 이 중 서민형 가입자가 약 140만명으로 약 66.7% 차지
 - 2017년 말 기준 총가입자 약 212만명 중 서민형 가입자는 약 140만명으로 66.2%를 차지하였지만 2018년 들어 증가
 - 또한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 31.8%, 농어민 일반형 0.1% 순
 -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
- 2017년 말 기준 전체 근로·사업소득자 중 약 9.6%가 가입하였으며, 서민형은 약 7.8% 가입하였고, 2018년 4월 현재 근로·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가 가입
 - 『2017년 국세통계연보』상 전체 근로·사업소득자의 가입대상자 2,201만명 중 가입자(일반, 서민) 212만명이 가입(2017년 말 기준 9.62%, 2018년 4월 말 기준 9.52%)하였고, 서민형 가입대상자 1,783만명 중 140만명 가입(2017년 말 기준 7.86%, 2018.4월 말 기준 7.84%)
 - 근로·사업소득자 2,201만명은 근로소득자 1,774만명, 사업소득자 588만명에서 근로·사업 중복소득자 151만명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9만명을 차감한 것임
 - 서민형 대상자 1,783만명은 근로소득자 1,406만명과 사업소득자 476만명에서 근로·사업 중복소득자 198만명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45명)를 차감한 것임
 - 전체적인 가입률이 10%에 못미치며 특히 전체 근로·사업소득자에 비해 서민형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본 과세특례제도의 주 정책대상자인 서민들의 활용도가 낮음을 의미

- 총급여 5,0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서민들이 저축여력이 낮은 반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기 때문에 본 과세특례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표 IV-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비교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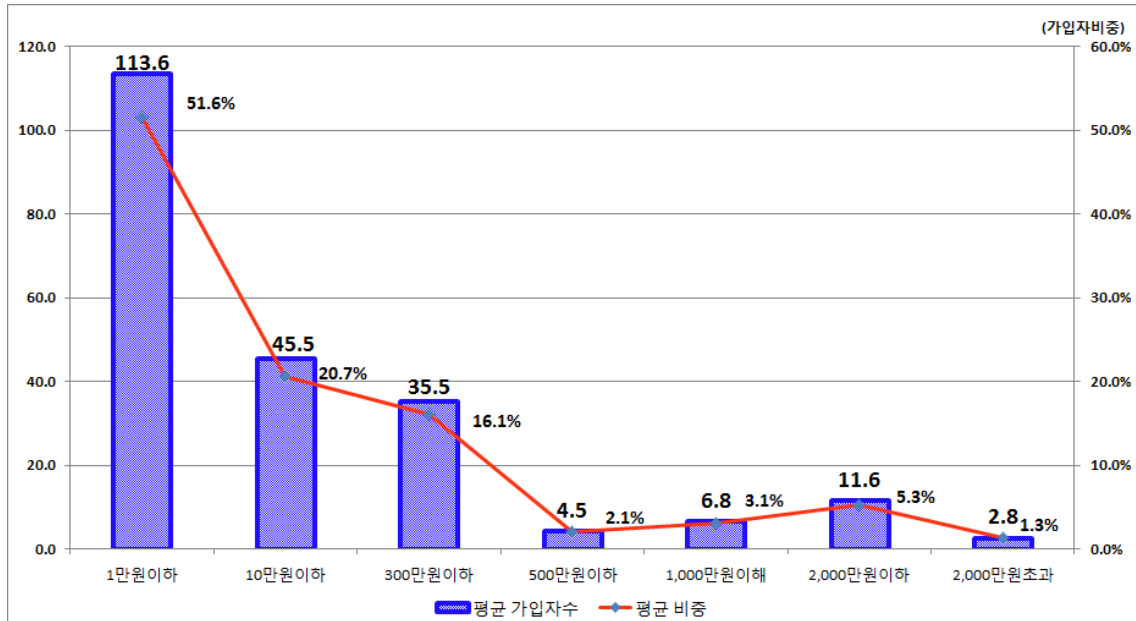
		전체		서민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국세 통계 연보	전체	17,740	5,880	14,056	4,756
	근로·사업소득중복자	(1,513)		(982)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94)		0	
	가입 대상자	22,013		17,830	
실제 가입자	2017년 말 기준	2,118		1,402	
	2018. 4월 말 기준	2,096		1,398	
가입률	2017년 말 기준	9.62		7.86	
	2018. 4월 말 기준	9.52		7.84	

자료: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및 ISA 다모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 2017년 말 만 15세 이상 농어민 총 약 202만명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1,952명이 가입하여 약 0.097% 수준의 가입률을 보임
 - 2018년 4월 말 현재 농어민 가입자 1,880명으로 0.093% 수준의 가입률
 - 「농림어업조사통계」에 따르면 2017년 말 만 15세 이상 농업종사자는 약 193만 명이며 어업종사자는 약 9만명으로 조사
 - 이러한 가입실적은 2015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누적가입자 346천명의 0.5% 수준으로 근로·사업소득자의 활용도보다 저조한 편
- 2018년 4월 2017년 1월~2018년 4월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액 규모별 가입자 수의 분포에서 1만원 이하의 납입액을 가진 가입자가 총 114만명으로 51.6%이며, 1만~10만원 이하 가입자가 46만명으로 20.7%를 차지
 - 전체 가입자의 약 88%가 300만원 이하의 납입액 가입자로 구성
 - 특히 2,000만원 초과 납입액 가입자는 2.8만명으로 전체의 1.3% 수준을 차지
 - 그러나, 2016년 3월부터 약 2년 2개월을 연환산하더라도 연납입액 1,000만원 이하로 연납입액한도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

[그림 IV-4] 납입액 구간별 가입자 수와 비중(2017. 1월~2018. 4월 평균)

(단위: %)



자료: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 (납입액 기준) 2018년 4월 말 전체 누적투자금액(누적 납입액)은 약 4조 6,801억원이며 이 중 서민형 가입자가 2조 7,707억원으로 59.3% 차지
 - 또한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 가입자가 1조 8,143억원으로 38.8%, 근로·사업소득자, 청년형 가입자 730억원으로 1.6% 순
 - 가입자 수로는 서민형이 전체 가입자 중 66.7%인 반면, 누적납입금액은 59.3%로 계좌 수 비중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이는 서민형 가입자의 가입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

- 가입유형별 연납입액은 농어민 일반형이 535만원으로 가장 높고, 농어민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가 513만원, 근로·사업소득자 일반형이 126만원 순으로 높으며, 서민형은 92만원 수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출시 월(2016년 3월)부터 1년간(2016. 3~2017. 2) 농어민 일반형이 738만원, 농어민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는 769만원, 그리고 서민형이 166만원 수준
 - 그러나 2년차(2017. 3~2018. 2)에는 농어민 일반형은 562만원, 농어민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는 556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서민형이 94만원으로 43.42%가 감소
 - 전체적인 계좌당 연납입액이 연납입액 한도 2,000만원보다 하회하는 상황

<표 IV-2> 가입유형별 계좌당 연납입액(연환산 납입액)

(단위: 만원)

구분		'16. 3월~'17. 2월	'17. 3월~'18. 2월	전체 연환산
근로·사업 소득자	소계	145.6	129.84	124.8
	일반	146.7	130.86	125.7
	청년	125.9	107.66	105.9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248.6	129.87	118.9
농어민	소계	719.2	557.34	530.9
	일반	737.5	561.61	535.2
	청년	125.0	217.39	200.7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	769.2	555.56	512.8
서민형		165.7	93.76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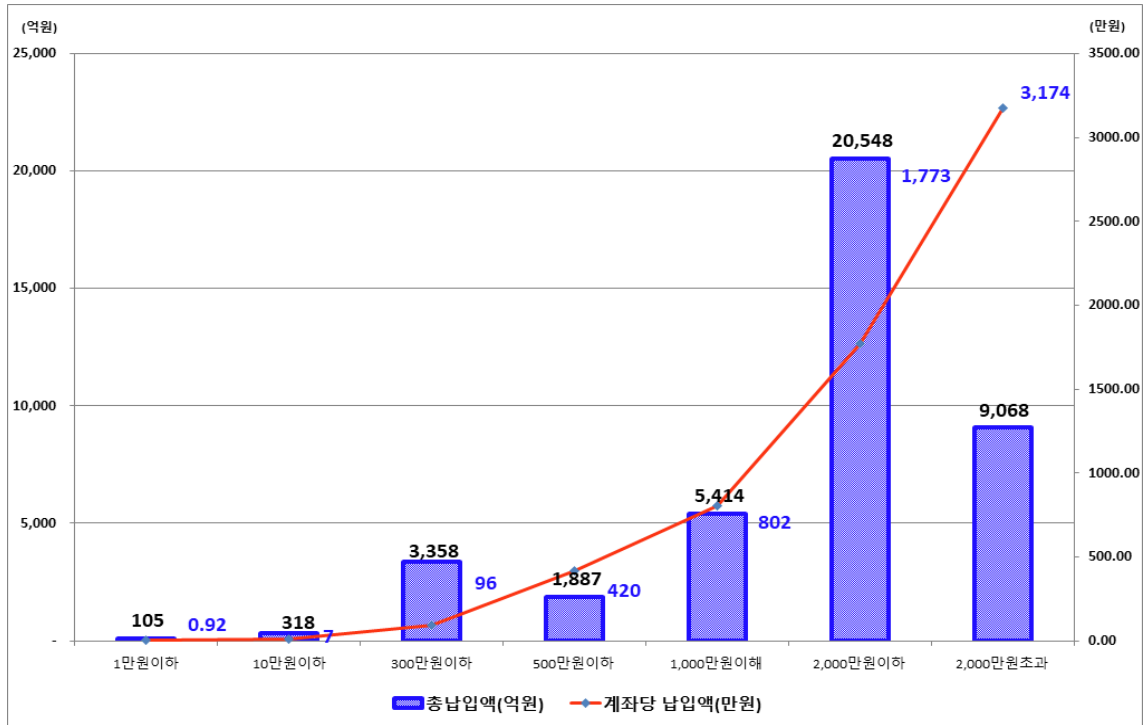
자료: ISA다모아(<http://isa.kofia.or.kr/>)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 2018년 4월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액 규모별 평균 납입액의 분포에서 납입액 1,000만원 초과구간의 납입액이 전체의 72.8%를 차지하고, 300만원 이하 납입액 구간은 9.3%만을 차지하고 있어 저축여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
 - 특히 납입액 1만원 이하의 구간에 전체 가입자 수의 약 52%가 집중되어 있으면서 총납입액이 전체의 0.26% 수준인 것은 저축여력이 부족한 소득계층은 분과세특례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 납입액 1만원 이하의 구간은 105억원으로 계좌당 납입액이 9,200원이며, 1,000만원~2,000만원 구간은 총 2조 548억원으로 계좌당 1,773만원 수준
 - 특히 납입액 2,000만원 초과 구간은 총 9,068억원으로 계좌당 3,174만원이며, 이를 연환산하면 연평균 약 1,587만원을 납입한 수준으로 연납입한도액 2,000만원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에 납입액 1만원 이하의 구간의 계좌당 납입액과 비교하면 저축여력이 높은 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그림 IV-5] 납입액 구간별 계좌당 납입액(2017. 1월~2018. 4월 평균)

(단위: 억원, 만원)



자료: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다. 상대적 활용도

□ (가입자 기준) 유사 과세특례인 연금계좌(연금저축)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자 약 297만명이 가입하여 가입률이 약 12.6%*의 가입률이며, 총급여 5천만원 및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가입자는 약 57.8만명으로 가입률은 약 4.5%**에 불과

○ 연금계좌 가입률의 경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모두 저소득층의 가입률이 낮은 반면,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가입률을 나타냄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4.1% 수준에 지나지 않은 반면,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64.4% 수준이며, 또한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5.8% 수준인 반면 1억원 초과 사업소득자는 60.1% 수준

* 12.6% = (가입자 근로소득자 229만명+사업소득자 68만명)/(근로소득자 1,774만명+사업자 588만명)

** 4.5%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58만명+27만명)/(근로소득자 1,406만명+사업소득자 476만명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9만명)

- 이에 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근로·사업소득자 가입률은 약 9.5%, 서민형은 약 7.8%로 연금계좌에 비해 전체적인 활용도가 낮을 수 있으나, 서민계층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따라서 연금계좌에 비해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용도는 낮으나 서민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활용도 수준을 나타냄

<표 IV-3> 연금계좌(세액공제) 가입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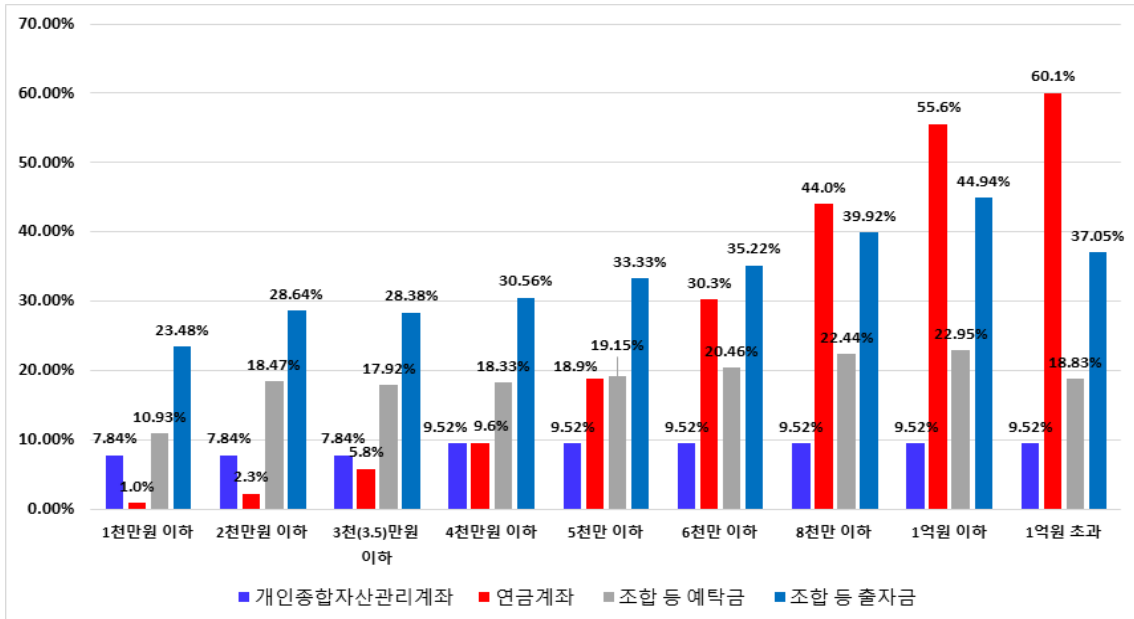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구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전체 가입률
	전체	가입자	가입률	전체	가입자	가입률	
1천만원 이하	3,406,485	303	0.0	2,677,875	61,163	2.3%	1.0
2천만원 이하	4,023,118	24,781	0.6	1,266,579	95,643	7.6%	2.3
3(3.5)천만원 이하	3,144,981	114,207	3.6	811,747	117,219	14.4%	5.8
4천만원 이하	2,049,625	180,276	8.8	146,735	30,874	21.0%	9.6
5천만 이하	1,431,820	258,464	18.1	212,108	52,832	24.9%	18.9
6천만 이하	1,015,129	306,908	30.2	151,463	46,127	30.5%	30.3
8천만 이하	1,375,500	617,178	44.9	197,622	75,131	38.0%	44.0
1억원 이하	640,114	368,336	57.5	120,432	54,439	45.2%	55.6
1억원 초과	653,326	421,067	64.4	295,815	149,173	50.4%	60.1
전체	17,740,098	2,291,520	12.9	5,880,376	682,601	11.6%	12.6

자료: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2017

- 연금계좌 외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의 가입률은 각각 12.6%와 25.1% 수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의 가입률보다 높은 수준
 -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의 가입률도 각각 11.9%와 24.2%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는 서민층의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 따라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 기준으로 연금계좌 및 타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비교한 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전체적인 활용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금계좌보다는 서민층의 활용도는 높은 수준
 - 그러나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활용도에 비해서는 낮은 활용도 수준

[그림 IV-6]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률 비교

(단위: %)



자료: 이상엽·한종석(2017)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제작성

□ (가입액 기준)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자의 가입액(공제대상액)은 약 6조 1,496억원으로 2018년 4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근로·사업소득자 및 서민형 누적가입액 4조 6,596억원 대비 1.32배,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 3.5천만원 사업소득자 가입액(약 1조 795억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서민형의 누적가입액 2조 7,707억원 대비 약 39% 수준

○ 전체적인 가입액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중 서민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용도가 높은 수준

□ 또한 연금계좌의 계좌당 평균 가입액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자가 약 207만원이며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는 약 127만원 수준인 반면, 종합자산관리계좌 근로·사업소득자의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약 125만원, 서민형은 약 92만원으로 낮은 수준

○ 연금계좌의 근로·사업소득자 평균 납입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1.7배이며, 서민형은 1.4배 수준

○ 이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낮은 활용도를 나타내지만 일반형보다 서민층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

<표 IV-4> 연금계좌(세액공제) 계좌당 가입액

(단위: 명, 억원, 만원)

총급여/종합소득 금액 구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전체 평균 가입액
	가입자	가입액	평균 가입액	가입자	가입액	평균 가입액	
1천만원 이하	303	0.4	13.6	61,163	103.8	17.0	17.0
2천만원 이하	24,781	88.8	35.8	95,643	283.1	29.6	30.9
3(3.5)천만원 이하	114,207	1,088.8	95.3	117,219	461.5	39.4	67.0
4천만원 이하	180,276	3,175.4	176.1	30,874	130.7	42.3	156.6
5천만 이하	258,464	5,593.5	216.4	52,832	188.8	35.7	185.7
6천만 이하	306,908	7,458.4	243.0	46,127	166.9	36.2	216.0
8천만 이하	617,178	16,935.3	274.4	75,131	279.5	37.2	248.7
1억원 이하	368,336	10,982.1	298.2	54,439	209.6	38.5	264.7
1억원 초과	421,067	13,743.2	326.4	149,173	606.1	40.6	251.6
전체	2,291,520	59,066	257.8	682,601	2,430.1	35.6	206.8

자료: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2017

2. 경제적 효과성 분석

가. 개요

- 본 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쟁점은 크게 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 및 자산 이동효과로 구분됨
 - 저축효과는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축이 발생하였는지를 의미
 - 여기서 저축효과는 소득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소비를 축소하여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에 납입한 저축액으로 측정되며, 기축적된 자산, 일반과세 금융상품의 투자액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친지 등으로부터의 자산이전 등은 자산이동효과임
 - 또한 소득의 변화가 있을 경우, 소득액 대비 저축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저축효과로도 정의할 수 있음
 - 또한 자산형성지원효과는 신규 저축 또는 타 금융상품으로부터의 자산이동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함으로써 비과세 또는 감면을 통해 자산형성에 지원이 되었는지를 의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혜택을 통해 증가된 세후수익률만큼 자산 형성지원이 되는 것을 의미
 - 자산이동효과는 기축적된 자산, 일반과세 금융상품의 투자액, 금융기관 대출 또는 친지로부터 자산이전 등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함을 의미
 - 이 효과는 저축효과가 아닌 과세금융상품을 단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
- 이러한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소득, 자산 및 저축 등의 자료가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개인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기에는 제한이 존재
- 개인 소득자료의 변동 현황,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변동 현황, 저축 현황 자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액 및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현황 자료가 있어야 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와 ISA 유형 및 가입여부 자료는 수집하였으나 위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자료수집에 제한이 존재하여 간접적인 효과 분석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및 미가입자 대상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첫째, 본 과세특례 서민 등의 저축효과와 자산형성지원효과 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본 과세특례 가입자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먼저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에 소득수준, 금융자산수준,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설문자료를 활용한 본 제도의 가입자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여부와 가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둘째, 직접적인 저축효과 및 자산형성지원효과 분석을 대신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응답자의 간접적인 저축효과와 자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함
 - 설문대상자에게 ISA 가입을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증가시켰는지와 ISA 가입 전에 비해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 간접적인 저축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ISA가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어 가입하였는지와 ISA가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간접적인 자산형성지원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셋째, 직접적인 자산이동효과 분석을 대신하여 자산이동 관련 설문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함
 - 설문대상자에게 ISA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는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산이동효과를 간접적으로 분석함

나. 자료

- 본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및 미가입자 대상 설문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먼저, 국세청 제공 미시자료는 총급여액 기준(근로소득자)과 사업소득 기준(사업소득자)의 2개 표본으로 구분
 - 총급여액 기준 표본(근로소득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자 중 근로소득 기준의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총 10,000명의 표본을 선정
 - 사업소득 기준 표본(사업소득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자 중 사업소득 기준의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총 10,000명의 표본을 선정
- 또한 설문자료는 1,076명(776명이 가입자 및 해지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여부, 가입금액, 가입동기 및 제도인식, 개선안에 대한 자료로 구성
 - 최종 표본배분은 추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수에 따른 단순 비례배분을 통해 총응답 표본 수는 1,076명으로 가입자 669명, 해지자 107명, 미가입자 300명을 선정하였음
 - 서울, 경기 및 인천 지역의 ISA 가입자 표본을 선정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인구 분포와 ISA 계좌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ISA 가입자 수를 추정하였음

다. 분석모형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특성 분석

□ 본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실증분석함

- 첫째,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가입자의 특성 분석을 위한 로짓모형으로 식(1)과 같이 근로소득 수준, 금융자산 수준,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수준 및 연령 등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ISA_i = \alpha_1 + \beta_1 \log(Income)_i + \beta_2 \log(Finance)_i + \beta_3 Tax_Exemption_Dummy_i + \beta_4 AGE_i + \epsilon_i \quad (1)$$

ISA = ISA 가입 더미변수 [0, 1]

$\log(Income)$ = 근로소득(총급여액)의 자연로그값

$\log(Finance)$ = 금융자산의 대용변수로서 금융소득의 자연로그값

$Tax_Exemption_Dummy$ =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더미변수 [0, 1]

AGE = 소득자의 연령

- 둘째,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으로 식(2)와 같이 근로소득수준,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 수준 및 통제변수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1단계 Selection Model에서는 ISA 가입여부를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고, 설명변수로는 월소득액의 자연로그값,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 실물자산의 자연로그값 및 통제변수(여성 더미변수, 연령, 학력 및 가족구성원 수)를 포함
 - 2단계에서는 ISA 가입자의 분포확률변수 Inverse Mill's ratio를 이용하여 ISA 가입금액을 OLS 회귀모형으로 추정하고, 이 모형에 1단계 추정모형의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비과세·감면 금융소득 더미변수 추가 포함)를 포함하여 추정함
 - 또한 ISA 가입금액 하한이 0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과의 관련성을 Tobit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함

$$ISA_i(\text{or } \log(ISA)) = \alpha_1 + \beta_1 \log(Income)_i + \beta_2 \log(Finance_Asset)_i + \beta_3 \log(Real_Asset)_i + Controls + \epsilon_i \quad (2)$$

ISA = ISA 가입 더미변수 [0, 1]
log(ISA) = ISA 가입금액의 자연로그값
log(Income) = 월소득액의 자연로그값
log(Finance_Asset) =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
log(Real_Asset)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자연로그값
Controls = ISA와 ISAg입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x_Exemption_Dummy =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더미변수 [0, 1]
Female = 여성 더미변수 [0, 1]
Age = 응답자의 연령
School = 가입자의 학력으로 중졸 이하이면 “1”, 고졸이면 “2”, 전문대나 대학 재학이면 “3”,
 전문대졸이면 “4”, 대졸이면 “5”, 대학원 이상 졸업이면 “6”
Family_size = 가입자의 가족구성원 수

2)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간접적인 효과성 분석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적인 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
 분석이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는 저축, 자산형성 및 자산이동과 관련된 설문대상
 자의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정책목적인 서민 및 농어민 등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
 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식(3)과 같이, 종속변수를 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
 효과 및 자산이동효과와 관련된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5점 척도)를 분석함
 - 설문응답이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별프로빗모형(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가입
 자의 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 및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함
 - 또한 주요관심변수는 소득수준과 자산수준(금융자산, 실물자산)변수이며, 통제
 변수는 식(3)과 같이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구성

$$\begin{aligned}
 Saving_i &= \alpha_1 + \beta_1 \log(Income)_i + \beta_2 \log(Finance_Asset)_i + \beta_3 \log(Real_Asset)_i \\
 &\quad + Controls + \epsilon_i \\
 AssetDevelopment_i &= \alpha_1 + \beta_1 \log(Income)_i + \beta_2 \log(Finance_Asset)_i \\
 &\quad + \beta_3 \log(Real_Asset)_i + Controls + \epsilon_i \\
 AssetShifting_i &= \alpha_1 + \beta_1 \log(Income)_i + \beta_2 \log(Finance_Asset)_i \\
 &\quad + \beta_3 \log(Real_Asset)_i + Controls + \epsilon_i
 \end{aligned} \tag{3}$$

Saving = 저축효과변수로서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렸다” 또는 “ISA 상품 가입 전에 비해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라는 설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및 매우 그렇다(5)로 측정

Asset Development = 자산형성지원효과로서 “ISA 상품은 재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또는 “서민(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설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및 매우 그렇다(5)로 측정

Asset Shifting = 자산이동효과로서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가입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다”라는 설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및 매우 그렇다(5)로 측정

log(Income) = 월소득액의 자연로그값

log(Finance_Asset) = 금융자산의 자연로그값

log(Real_Asset) =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자연로그값

Controls = ISA 가입자의 저축, 자산형성지원 및 자산이동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

log(ISA) = ISA 납입액의 자연로그값

Tax_Exemption_Dummy =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더미변수 [0, 1]

Female = 여성 더미변수 [0, 1]

Age = 응답자의 연령

School = 가입자의 학력으로 중졸 이하이면 “1”, 고졸이면 “2”, 전문대나 대학 재학이면 “3”, 전문대졸이면 “4”, 대졸이면 “5”, 대학원 이상 졸업이면 “6”

Family_size = 가입자의 가족구성원 수

라. 분석 결과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특성 분석

가) 국세청 미시자료

-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특성변수 중 근로소득자 가입자는 10.6%(1,064명), 사업소득자 8.4%(835명)이며, 총급여액 평균은 33,497천원, 사업소득 평균 16,848천원 수준을 나타냄
 - 근로소득자 분석표본 1만명 중 1,063명과 사업소득자 분석표본 1만명 중 835명이 ISA에 가입함
 - 금융소득(Finance Income)은 근로소득자 표본에서 평균 1,404천원, 사업소득자 표본에서 5,116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 비과세·감면 금융소득(Tax_Exemption)은 근로소득자 표본에서 평균 105천원, 사업소득자 표본에서는 평균 274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 또한 연령(AGE)은 근로소득자 표본에서 평균 43.74세, 사업소득자 표본에서는 평균 63.05세로 나타남

<표 IV-5>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 기술통계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근로소득 표본 (N=10,000)	ISAg가입여부	0.106	0.308	0	0	1
	총급여액(Income)	33,497	34409	0	24,000	621,367
	log(Income)	16.863	1.121	0	16.995	20.247
	금융소득 (Finance Income)	1,404	32,545	0	27	2,839,692
	log(Finance)	10.334	2.941	0	10.210	21.767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Tax_Exemption)	105	296	0	0	3,935
	Tax_Exemption_Dummy	0.365	0.482	0	0	1
	연령(AGE)	43.74	12.633	19	43	118
사업소득 표본 (N=10,000)	ISAg가입여부	0.084	0.277	0	0	1
	사업소득(Income)	16,848	108,457	-8,538,209	6,128	2,745,867
	log(Income)	15.838	1.416	1.792	15.837	21.733
	금융소득 (Finance Income)	5,116	198,574	0	134	19,272,597
	log(Finance)	11.590	2.917	0	11.819	23.682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Tax_Exemption)	274	614	0	1	15,291
	Tax_Exemption_Dummy	0.564	0.496	0	1	1
	연령(AGE)	63.049	9.008	21	62	117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특성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ISA 가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자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할수록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높은 연령대일수록 ISA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log(Income)와 금융자산을 나타내는 log(Finance)가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반면,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더미변수(Tax_Exemption_Dummy)는 근로소득자 표본에서만 양(+)의 상관계수 그리고 연령(AGE)은 사업소득자 표본에서만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 그리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표본 모두 log(Finance)와 Tax_Exemption_Dummy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6〉 ISA 가입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1)	(2)	(3)	(4)	(5)	(1)	(2)	(3)	(4)	(5)
ISA(1)	1	-	-	-	-	1	-	-	-	-
log(Income)(2)	0.135*** (0.001)	1	-	-	-	0.133*** (0.001)	1	-	-	-
log(Finance)(3)	0.119*** (0.001)	0.289*** (0.001)	1	-	-	0.094*** (0.001)	0.218*** (0.001)	1	-	-
Tax_Exemption_Dummy(4)	0.028*** (0.005)	0.070*** (0.001)	0.450*** (0.001)	1	-	-0.012 (0.240)	-0.019* (0.070)	0.441*** (0.001)	1	-
AGE(5)	0.008 (0.427)	0.130*** (0.001)	0.213*** (0.001)	0.200*** (0.001)	1	-0.037** * (0.001)	-0.017 (0.113)	0.251*** (0.001)	0.206*** (0.001)	1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p-value를 나타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근로·사업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표본을 활용한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ISA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전체 표본에서 총급여 $\log(\text{Income})$ 는 0.403($p < 0.001$), 금융자산 $\log(\text{Finance})$ 는 0.109($p < 0.001$) 그리고 연령 AGE는 -0.008($p < 0.001$)을 나타냄
 - 특히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서민형 ISA의 가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총급여 5,000만원 초과인 일반형 ISA의 가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AGE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이 결과는 총급여 5,000만원을 기준으로 ISA 유형을 분류하였지만 각 유형마다 소득수준 또는 금융자산수준이 높을수록 ISA의 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또한 Tax_Exemption_Dummy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IV-7>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

	종속변수 = ISA 가입여부								
	전체표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표본 (서민형 ISA 대상자)			총급여 5천만원 초과 표본 (일반형 ISA 대상자)		
	Estim.	Wald X^2	p-value	Estim.	Wald X^2	p-value	Estim.	Wald X^2	p-value
Intercept	-9.791***	247.14	0.000	-11.546***	147.40	0.000	-8.862***	8.91	0.003
<i>log(Income)</i>	0.403***	112.59	0.000	0.498***	78.90	0.000	0.356**	4.31	0.038
<i>log(Finance)</i>	0.109***	65.93	0.000	0.125***	60.00	0.000	0.079***	10.31	0.001
<i>Tax_Exemption_Dummy</i>	-0.108	2.11	0.146	-0.100	1.18	0.277	-0.152	1.43	0.231
<i>AGE</i>	-0.008***	7.03	0.008	-0.003**	5.61	0.018	-0.003	0.21	0.648
Likelihood Ratio	283.03***			197.89***			20.35***		
Observations	10,000			9,666			9,271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특성변수 간 상대적인 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³⁵⁾로 소득수준이 금융자산수준보다 ISA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러한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이 일반형 ISA 가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소득수준 $\log(\text{Income})$ 의 한계효과는 0.0373인 데 반해, 금융소득수준 $\log(\text{Finance})$ 는 0.01로 금융자산수준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저축자가 ISA에 가입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시사
 - 또한 서민형 ISA(총급여 5천만원 이하자)에 비해 일반형 ISA(총급여 5천만원 초과자) 가입자들의 소득수준이나 금융자산수준 모두 ISA 가입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ISA가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그룹에서 수직적 형평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표 IV-8>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 한계효과

	전체	서민형 ISA 대상자	일반형 ISA 대상자
$\log(\text{Income})$	0.0373	0.0408	0.0478
$\log(\text{Finance})$	0.0100	0.0103	0.0106
<i>Tax_Exemption_Dummy</i>	-0.0100	-0.0081	-0.0204
<i>AGE</i>	-0.0007	-0.0006	-0.0004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사업소득자 전체 표본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타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표본에서 $\log(\text{Income})$ 은 0.288($p < 0.001$), 금융자산 $\log(\text{Finance})$ 은 0.130($p < 0.001$), *Tax_Exemption_Dummy*가 -0.291($p < 0.001$) 그리고 *AGE*는 -0.029($p < 0.001$)로 나타남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표본(서민형 ISA)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였지만 비과세·감면 금융소득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반면,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초과 표본(일반형 ISA)에서는 *AGE*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35) 소득수준과 금융자산수준의 ISA 가입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한계효과는 독립변수 벡터(X_i) 중에서 k 번째 변수인 X_k 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의 ISA에 가입할 확률의 변화를 나타낸다. 로짓모형의 한계효과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다(조무상·정군오, 2009). 여기서 $f(\bullet)$ 는 표준정규분포 확률함수이며, β_k 는 변수 X_k 의 추정계수이다.

$$\frac{\partial P(y_i = 1)}{\partial X_k} = [-f(\mu_1 - X_i\beta)]\beta_k$$

- 이는 전체적으로 사업소득과 금융자산이 높은 소득자가 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표 IV-9>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

	종속변수 = ISA 가입여부								
	전체표본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표본 (서민형 ISA 대상자)			종합소득 3.5천만원 초과 표본 (일반형 ISA 대상자)		
	Estim.	Wald χ^2	p-value	Estim.	Wald χ^2	p-value	Estim.	Wald χ^2	p-value
Intercept	-6.615***	127.69	0.001	-6.973***	24.51	0.001	-5.745***	6.87	0.009
<i>log(Income)</i>	0.288***	90.63	0.001	0.183**	5.80	0.016	0.192	2.68	0.101
<i>log(Finance)</i>	0.130***	64.30	0.001	0.148***	21.34	0.001	0.077**	4.48	0.034
<i>Tax_Exemption_Dummy</i>	-0.291***	11.13	0.001	-0.096	0.29	0.589	-0.250	1.963	0.161
<i>AGE</i>	-0.029***	26.17	0.001	-0.022**	4.19	0.041	-0.005	0.185	0.667
Likelihood Ratio	248.22***			35.97***			11.06***		
Observations	10,000			9,334			9,831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나) 설문조사자료

-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특성변수 중 ISA 가입자는 72.1%(776명)로 평균 ISA 가입금액은 670만원, 평균 월소득액은 345만원, 평균 금융자산은 4,925만원 그리고 평균 실물자산이 3억 6,559만원 수준이며, 평균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은 547만원 수준을 나타냄
 - 설문조사대상이 대부분 ISA 가입자이며 평균 가입금액 670만원은 금융투자협회 제시 가입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
 - 응답자 개인의 월소득액(Income)은 평균 345만원이지만 최대 750만원이며, 개인 금융자산은 평균 4,925만원으로 최대 20억원이며, 실물자산은 평균 36,559만원으로 최대 30억원 수준
 - 그리고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은 165명, 평균 547만원으로 최대 1.2억원이며,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이 51.2%로 551명, 평균 연령은 44.14세 그리고 가족구성원 수는 평균 2.5명으로 나타남

<표 IV-10>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 기술통계량

(금액 단위: 만원)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ISA 가입여부(ISA)	1,076	0.721	0.463	0	1	1
ISA 가입금액	776	670	1,399	1	300	27,000
log(ISA)	776	5.391	1.878	0.000	5.704	10.204
월소득액(Income)	1,076	345	170	0	350	750
log(Income)	1,076	5.725	0.500	4.317	5.858	6.620
금융자산(Finance Asset)	1,076	4,925	11,519	0	2,000	200,000
log(Finance)	1,076	7.879	1.371	0.000	8.006	12.206
실물자산(Real Asset)	1,076	36,559	41,819	0	29,300	300,000
log(Real Asset)	1,076	10.366	1.061	3.912	10.449	12.612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Tax_Exemption)	776	547	1,359	0	0	12,000
Tax_Exemption_Dummy	776	0.213	0.409	0	0	1
여성(Female)	1,076	0.512	0.500	0	1	1
연령(AGE)	1,076	44.140	11.512	20	44	71
학력(School)	1,076	4.156	1.322	1	5	6
가족구성원수(Family Size)	780	2.497	0.797	1	3	5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가입특성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 ISA 가입금액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며, 금융자산수준과 ISA 가입여부는 음(-)의 상관계수 그리고 금융자산수준과 ISA 가입금액 간에는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 이 결과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금융소득수준이 낮을수록 ISA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으나, ISA 가입자 중에서 금융소득수준이 높을수록 ISA 가입금액은 크다는 것을 의미
- 이에 반해 실물자산수준은 ISA 가입여부 및 ISA 가입금액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단순 변수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두 변수 간의 정확한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IV-11>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 간 상관관계

	ISA	log(ISA)	(1)	(2)	(3)	(4)	(5)	(6)	(7)
<i>log(Income)</i> (1)	-0.002 (0.954)	0.187*** (0.001)	1	-	-	-	-	-	-
<i>log(Finance Asset)</i> (2)	-0.143*** (0.000)	0.224*** (0.000)	0.378*** (0.000)	1	-	-	-	-	-
<i>log(Real Asset)</i> (3)	-0.023 (0.680)	0.075 (0.272)	0.312*** (0.000)	0.354*** (0.000)	1	-	-	-	-
<i>Tax Exemption Dummy</i> (4)	0.317*** (0.000)	0.013 (0.731)	0.130*** (0.000)	0.297*** (0.000)	0.015 (0.775)	1	-	-	-
<i>Female</i> (5)	0.004 (0.896)	0.053 (0.174)	-0.245*** (0.000)	0.007 (0.841)	-0.123** (0.021)	0.040 (0.194)	1	-	-
<i>AGE</i> (6)	-0.124*** (0.000)	0.157*** (0.000)	0.179*** (0.000)	0.247*** (0.000)	0.319*** (0.000)	0.020 (0.519)	0.027 (0.375)	1	-
<i>School</i> (7)	-0.110*** (0.001)	0.066* (0.089)	0.299*** (0.000)	0.140*** (0.000)	0.162*** (0.002)	0.062** (0.041)	-0.169*** (0.000)	-0.251*** (0.000)	1
<i>Family size</i> (8)	0.087** (0.021)	-0.023 (0.608)	0.073** (0.043)	-0.010 (0.816)	-0.061 (0.280)	0.039 (0.279)	-0.063* (0.080)	-0.077** (0.032)	0.046 (0.200)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 안은 p-value를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소득과 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Heckman Selection Model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 1단계의 sample selection model에서는 실물자산 log(Real Asset)가 0.254(p<0.05)로 부동산 등 실물자산수준이 높을수록 ISA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단계 분석에서 소득, 금융자산 및 실물자산의 ISA 가입금액 log(ISA)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님
- 따라서 실물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수준이 높을수록 ISA에 가입할 가능성은 높지만 ISA 가입금액에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음

<표 IV-12>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Heckman Selection Model)

변 수	1 st Selection (종속변수 = ISA가입여부)		2 nd Step (종속변수=log(ISA))	
	Coefficient	t-stat.	Coefficient	t-stat.
Intercept	2.533*	1.82	0.300	0.14
log(Income)	-0.089	-0.39	-0.071	-0.19
log(Finance Asset)	0.002	0.02	0.160	1.07
log(Real Asset)	0.254**	2.45	0.221	0.66
Tax Exemption Dummy	-		-0.615*	-1.90
Female	-0.135	-0.70	0.908***	2.80
AGE	-0.061***	-5.54	0.007	0.11
School	-0.236***	-3.17	-0.006	-0.02
Family size	-0.016	-0.14	0.407**	2.17
lambda			0.947	0.37
Likelihood Ratio	40.682***		-	
Adj.R ²	-		0.093	
Observations	1,076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또한 추가적으로 ISA 가입액의 하한이 0 이상이기 때문에 Random Effect Tob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의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

<표 IV-13>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 분석 결과(Random Effect Tobit Model)

변 수	종속변수=log(ISA)	
	Coefficient	t-stat.
Intercept	-0.065	-0.03
log(Income)	-0.034	-0.09
log(Finance Asset)	0.159	1.04
log(Real Asset)	0.114	0.69
Tax Exemption Dummy	-0.628*	-1.84
Female	1.012***	3.5
AGE	0.033**	2.01
School	0.089	0.74
Family size	0.418**	2.19
Sigma	1.750***	18.03
Likelihood Ratio	-348.989***	
Observations	1,076	

주: 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2) 설문대상자의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 설문자료를 활용한 응답자의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렸다는 응답자가 48.2%(3.30점/5점) 수준이며, ISA 상품 가입 전에 비해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52.6%(3.43점/5점) 수준(부록 참고)
 - 응답자들의 약 절반 수준이 ISA로 인해 저축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문조사에 따른 저축효과에 대한 응답유도나 주관적인 bias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ISA 상품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는 응답자가 52.6% 수준
 - 20대가 65.7%,로 가장 높은 수준, 월평균 저축액이 40% 이상이 56.8%, 월평균 소득액 300~400만원이 63.8% 및 월평균 가구소득 500~700만원이 55.6%로 가장 높게 긍정적으로 응답(부록 참고)

- 설문자료를 활용한 순위별프로빗모형을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수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이 증가하였고, ISA 상품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SA 가입금액 $\log(\text{ISA})$ 가 0.185($p < 0.001$)와 0.233($p < 0.001$)으로 ISA 가입금액이 큰 응답자일수록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률을 높였으며, ISA에 가입한 후에 저축률이 높아졌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
 - 또한 금융자산수준 $\log(\text{Finance Asset})$ 가 -0.243($p < 0.021$)과 -0.334($p < 0.001$)로 금융자산수준이 적은 응답자일수록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률을 높였고 ISA에 가입한 후에 저축률이 높아졌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소득수준, 실물자산수준이나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등 다른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음³⁶⁾

36) 자산수준을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으로 측정한 변수로 추가 분석한 결과, 총자산이 클수록 ISA 상품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했다고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4> 설문응답자의 저축효과 인식 분석 결과

변수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 증가(1~5)			ISA 상품 가입 후 저축률 증가(1~5)		
	Estimate	Wald X^2	p-value	Estimate	Wald X^2	p-value
<i>log(Income)</i>	-0.059	0.05	0.815	0.321	1.87	0.172
<i>log(Finance Asset)</i>	-0.243**	5.34	0.021	-0.334***	11.60	0.001
<i>log(Real Asset)</i>	0.148	1.87	0.171	0.096	0.89	0.346
<i>Tax Exemption Dummy</i>	-0.001	0.01	0.996	0.276	1.64	0.201
<i>log(ISA)</i>	0.185***	12.54	0.001	0.233***	20.51	0.001
<i>Female</i>	0.245	1.43	0.231	0.338*	3.19	0.074
<i>AGE</i>	-0.006	0.32	0.574	-0.009	0.69	0.406
<i>School</i>	0.006	0.01	0.944	-0.003	0.01	0.964
<i>Family size</i>	0.005	0.01	0.970	-0.174	2.01	0.156
Intercept2	2.867**	4.12	0.042	0.908	0.50	0.478
Intercept3	-1.361***	11.03	0.001	-1.677***	30.40	0.001
Intercept4	-2.592***	37.42	0.001	-2.663***	70.95	0.001
Intercept5	-5.387***	107.32	0.001	-4.513***	156.59	0.001
Log Likelihood	153.90			199.98		
Observations	776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설문응답자의 저축효과 인식정도에 대한 변수별 한계효과를 산출한 결과, 금융자산수준이 소득수준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으며, ISA 상품 가입 후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효과를 높게 인식할 가능성보다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저축효과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ISA가 금융자산이 적은 서민이나 농어민에게 저축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표 IV-15> 저축효과 인식의 한계효과

	전체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 (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i>log(Income)</i>	-0.0074	-0.0087	-0.0082	-0.0075	-0.0073	-0.0066
<i>log(Finance Asset)</i>	-0.0307	-0.0360	-0.0337	-0.0309	-0.0302	-0.0271
<i>log(Real Asset)</i>	0.0187	0.0220	0.0206	0.0189	0.0185	0.0166
<i>Tax_Exemption_Dummy</i>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0.0002
	전체	ISA 상품 가입후 저축률이 증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 (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i>log(Income)</i>	0.0494	0.0475	0.0501	0.0497	0.0491	0.0489
<i>log(Finance Asset)</i>	-0.0514	-0.0494	-0.0521	-0.0517	-0.0510	-0.0509
<i>log(Real Asset)</i>	0.0148	0.0143	0.0150	0.0149	0.0147	0.0147
<i>Tax_Exemption_Dummy</i>	0.0425	0.0409	0.0431	0.0428	0.0422	0.0421

주: 한계효과는 독립변수 벡터(Xi) 중에서 k번째 변수인 Xk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의 저축효과 인식정도 각각 1~5까지 확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식을 산출하였음

$$\frac{\partial P(y_i = 1)}{\partial X_k} = [-f(\mu_1 - X_i\beta)]\beta_k$$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3) 설문대상자의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 본 제도의 정책목적인 자산형성지원에 효과적이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한 결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60.3%(3.54/5점)이며,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자가 54.5%(3.51점/5점)(부록 참고)
 - 이 결과는 절반 이상의 가입자들이 ISA가 자산형성지원효과가 있다고 인식
 - 여성이 63.9%, 20대 이하의 연령대가 64.8%, 월평균 저축액 20~30%가 65.2%, 월평균 개인소득 100~200만원이 66.2% 그리고 월평균 가구소득 500~700만원이 65%로 자산형성지원효과가 있다고 인식
- 또한 ISA 상품이 서민(근로자, 사업소득자)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지에 대한 설문 54.5%가 긍정적으로 응답(5점 중 평균 3.51점 수준)(부록 참고)
 - 서민과 농어민의 지원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8.9%에 불과

□ 자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ISA 가입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ISA 가입금액이 클수록 자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수준 $\log(\text{Income})$, 금융자산수준 $\log(\text{Finance Asset})$ 및 실물자산수준 $\log(\text{Real Asset})$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설문응답자의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ISA 가입자로 하여금 자산형성지원효과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표 IV-16> 설문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 분석 결과

변수	자산형성에 도움(1~5)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1~5)		
	Estimate	Wald X^2	p-value	Estimate	Wald X^2	p-value
<i>log(Income)</i>	0.038	0.03	0.874	0.400	2.81	0.104
<i>log(Finance Asset)</i>	-0.077	0.61	0.433	-0.148	2.30	0.129
<i>log(Real Asset)</i>	-0.086	0.63	0.428	0.030	0.08	0.779
<i>log(ISA)</i>	0.176***	12.05	0.001	0.103**	4.28	0.039
<i>Tax_Exemption_Dummy</i>	0.049	0.05	0.821	0.027	0.02	0.902
<i>Female</i>	0.449**	5.38	0.020	0.243	1.63	0.202
<i>AGE</i>	-0.017	2.64	0.104	-0.021**	3.91	0.048
<i>School</i>	0.033	0.19	0.663	-0.083	1.17	0.279
<i>Family size</i>	0.057	0.22	0.641	0.247**	4.07	0.044
Intercept2	3.142**	5.57	0.018			
Intercept3	-0.867***	12.1	0.001	0.054	0.01	0.966
Intercept4	-2.153***	59.33	0.000	-1.317***	79.09	0.000
Intercept5	-4.055***	167.35	0.000	-3.135***	226.07	0.000
Log Likelihood	184.16			183.72		
Observations	776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ISA 가입금액인 $\log(\text{ISA})$ 가 각각 $0.176(p<0.001)$ 과 $0.103(p<0.039)$ 으로 ISA 가입금액이 높을수록 자산형성지원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
 - 이 결과는 ISA 가입자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대상이 대부분이 ISA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어 설문응답에 bias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또한 여성(Female)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0.449, p<0.02$), 연령대(AGE)가 낮을수록 그리고 가족구성원 수(Family size)가 많을수록 서민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각각 $-0.021, p<0.048$; $0.247, p<0.044$)
-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정도에 저축효과와 자산이동효과의 인식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다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가입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다고 인식할수록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다고 인식할수록 ISA가 서민과 농어민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축지원효과에 대한 인식(Saving)은 각각 1% 수준에서 유의한 0.957 과 0.439 의 계수를 나타내어,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다고 인식한 응답자일수록 ISA가 자산형성과 서민 및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또한 자산이동효과(Asset Shifting)에 대한 인식은 5% 수준에서 유의한 0.221 로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여 ISA에 가입하였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일수록 ISA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ISA가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님
 - 특히 Saving과 Asset Shifting의 계수 크기를 비교해 보면, ISA의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수준이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수준보다 자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V-17> 설문응답자의 저축효과와 자산이동효과 인식이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변 수	재산형성에 도움(1~5)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1~5)		
	Estimate	Wald X^2	p-value	Estimate	Wald X^2	p-value
<i>Saving</i>	0.957***	38.99	0.001	0.439***	9.99	0.002
<i>Asset Shifting</i>	0.221**	6.25	0.012	0.124	2.16	0.142
<i>log(Income)</i>	-0.036	0.02	0.886	0.383	2.50	0.114
<i>log(Finance Asset)</i>	0.041	0.16	0.690	-0.099	0.98	0.323
<i>log(Real Asset)</i>	-0.196*	2.94	0.086	-0.012	0.01	0.915
<i>log(ISA)</i>	0.081	2.19	0.139	0.045	0.74	0.390
<i>Tax_Exemption_Dummy</i>	0.180	0.61	0.434	0.099	0.2	0.658
<i>Female</i>	0.267	1.66	0.198	0.115	0.33	0.565
<i>AGE</i>	-0.016	2.13	0.144	-0.019*	3.20	0.074
<i>School</i>	0.049	0.38	0.536	-0.083	1.14	0.285
<i>Family size</i>	0.019	0.02	0.883	0.234*	3.56	0.059
Intercept2	0.936	0.41	0.520			
Intercept3	-1.221***	12.28	0.001	-1.366	0.98	0.322
Intercept4	-2.804***	53.37	0.001	-1.383***	78.31	0.001
Intercept5	-5.000***	135.5	0.001	-3.292***	217.87	0.001
Log Likelihood	157.94			176.71		
Observations	776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설문응답자가 인식하는 저축효과와 자산이동효과 수준이 자산형성지원효과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보다도 저축효과를 높게 인식한 응답자 일수록 ISA가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타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여 ISA에 가입하였다고 인식할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며, 소득이 많을수록 ISA가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8> 저축효과와 자산이동효과 인식이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미치는 한계효과

	전체	재산형성에 도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i>Saving</i>	0.1205	0.1286	0.0241	-0.0279	0.0054	-0.0044
<i>Asset Shifting</i>	0.0278	0.0297	0.1365	0.0256	-0.0258	0.0050
<i>log(Income)</i>	-0.0045	-0.0048	0.0115	0.0291	0.1168	0.0219
<i>log(Finance Asset)</i>	0.0052	0.0055	-0.0051	0.0106	0.0270	0.1087
<i>log(Real Asset)</i>	-0.0246	-0.0263	0.0058	-0.0047	0.0098	0.0251
<i>Tax Exemption Dummy</i>	0.0226	0.0241	-0.0279	0.0054	-0.0044	0.0092
	전체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은 편이다(2)	보통이다(3)	그런 편이다(4)	매우 그렇다(5)
<i>Saving</i>	0.0745	-	0.0740	0.0749	0.0744	0.0733
<i>Asset Shifting</i>	0.0210	-	0.0209	0.0211	0.0210	0.0207
<i>log(Income)</i>	0.0650	-	0.0646	0.0653	0.0649	0.0640
<i>log(Finance Asset)</i>	-0.0168	-	-0.0167	-0.0168	-0.0167	-0.0165
<i>log(Real Asset)</i>	-0.0020	-	-0.0019	-0.0020	-0.0020	-0.0019
<i>Tax Exemption Dummy</i>	0.0167	-	0.0166	0.0168	0.0167	0.0165

주: 한계효과는 독립변수 벡터(Xi) 중에서 k번째 변수인 Xk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의 저축효과 인식정도 각각 1~5까지 확률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식을 산출하였음

$$\frac{\partial P(y_i = 1)}{\partial X_k} = [-f(\mu_1 - X_i\beta)]\beta_k$$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4) 설문대상자의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한 재원을 타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8.7%로 5점 중 2.78점 수준(부록 참고)
 - 이는 ISA 가입 재원이 타 금융자산 등의 자산이전이 아닌 신규 저축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저축효과에 대한 5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에 비해 낮은 것(28.7%)으로 저축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 응답자의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이 작을수록 그리고 여성가입자일수록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 ISA 가입금액 $\log(\text{ISA})$ 가 0.112($p < 0.021$), 비과세·감면 금융소득 $\text{Tax_Exemption_Dummy}$ 가 -0.499($p < 0.018$), 여성 Female 이 0.719($p < 0.001$)를 나타냄
 - 이에 반해, 소득 $\log(\text{Income})$, 금융자산 $\log(\text{Finance Asset})$ 및 실물자산 $\log(\text{Real Asset})$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해,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에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

<표 IV-19> 응답자의 자산이동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변수	ISA상품 가입하기 위해 가입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1~5)		
	Estimate	Wald X^2	p-value
$\log(\text{Income})$	0.342	2.24	0.135
$\log(\text{Finance Asset})$	-0.029	0.10	0.753
$\log(\text{Real Asset})$	0.079	0.62	0.431
$\text{Tax_Exemption_Dummy}$	-0.499**	5.63	0.018
$\log(\text{ISA})$	0.112**	5.37	0.021
Female	0.719***	14.84	0.001
AGE	-0.008	0.63	0.428
School	-0.027	0.14	0.709
Family size	0.099	0.71	0.399
Intercept2	-1.811	2.17	0.141
Intercept3	-1.024***	63.4	0.001
Intercept4	-1.720***	135.37	0.001
Intercept5	-3.176***	211.49	0.001
Log Likelihood	243.21		
Observations	776		

주: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3. 수혜자분포의 분석: 형평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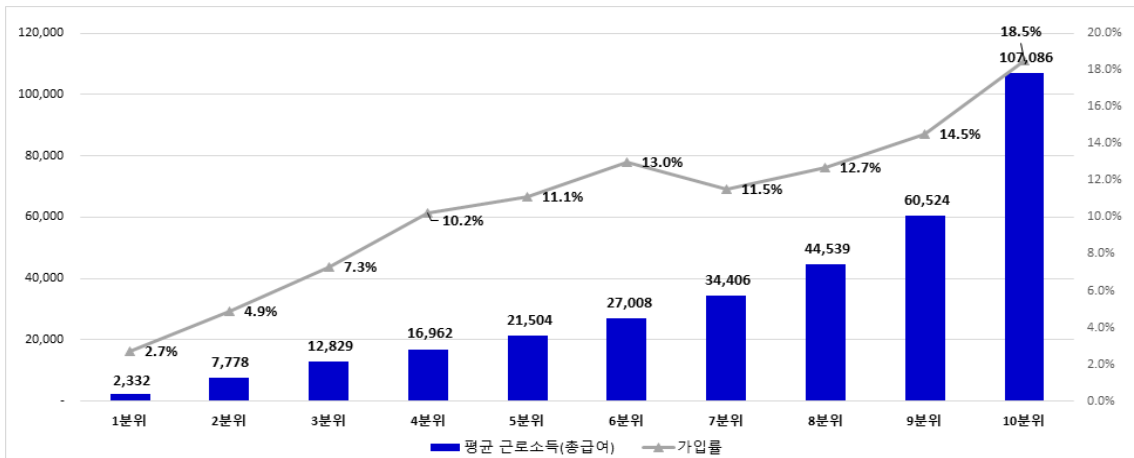
가. 소득수준별 수혜자분포: ISA 가입률 기준

- (가입률 활용 수혜자분포 분석) 수혜자분포 분석은 서민(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과 농어민이 본 과세특례의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분석해야 하나, 국세청 납세자료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구간별 또는 소득분위별 가입률로 수혜분포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ISA 혜택 정도를 간접적으로 분석이 가능
 - ISA의 수직적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입률보다는 납입금액 및 금융소득 감면액 자료를 활용해야 하나, 자료수집의 제한으로 인하여 본 분석에서는 소득구간별 ISA 가입률 자료에 한정된 분석을 시도
 -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과세특례의 수혜분포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 분위별 ISA 가입률은 전체 10.64%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ISA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소득 분위별 ISA 가입률은 1분위에 2.7%였던 것이 5분위는 11.1%, 6분위 13%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7~8분위에 11.5%로 감소하고, 다시 9분위부터 증가하여 10분위는 18.5% 수준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서민형 ISA 가입대상자)와 초과 근로소득자(일반형 ISA 가입대상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ISA 가입률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의 가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차이 분석 결과, 서민형 ISA 가입대상자는 9.2% 그리고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는 16.1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단순 ISA 가입률 측면에서 ISA가 수직적 형평성의 제고에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보다 정확한 수직적 형평성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ISA 가입금액을 활용한 분석이 필요

[그림 IV-7] 근로소득자의 분위별 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 분포

(단위: %)



주: 1분위는 가장 작은 소득수준이며 10분위는 가장 큰 소득수준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또한 사업소득 분위별 ISA 가입률은 전체 8.35%로 1분위는 사업소득이 적자(-)임에도 가입률이 10.2%로 2분위~8분위보다 높은 가입률을 나타내며 7분위까지는 6%대였다가 8분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9분위 12.8%, 10분위 16.5%까지 증가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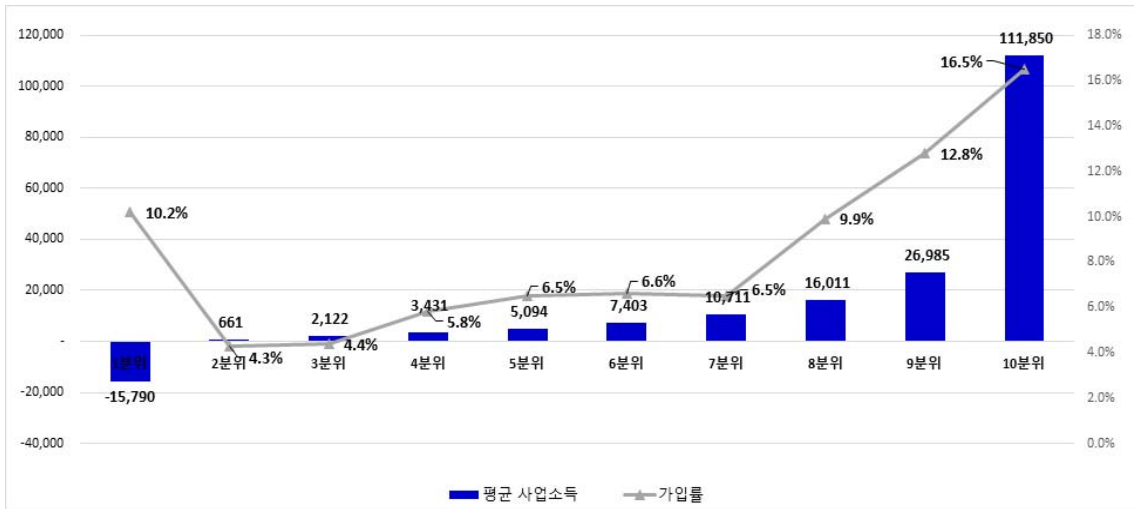
- 또한 종합소득 3.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서민형 ISA 가입대상자)와 초과 사업소득자(일반형 ISA 가입대상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ISA 가입률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t-test 결과, 서민형 ISA 가입대상자는 7.35% 그리고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는 16.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ISA 가입률을 활용한 수혜자분포를 통해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ISA 가입률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저축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 7분위~8분위에서 감소하였지만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가입률이 높으며, 사업소득자는 소득 7분위까지 저조한 가입률을 나타내지만 8분위부터 증가
- 대체로 저축여력이 높거나 기축적된 금융자산 이동이 가능한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는 기여하지 못함을 시사

[그림 IV-8] 사업소득자의 분위별 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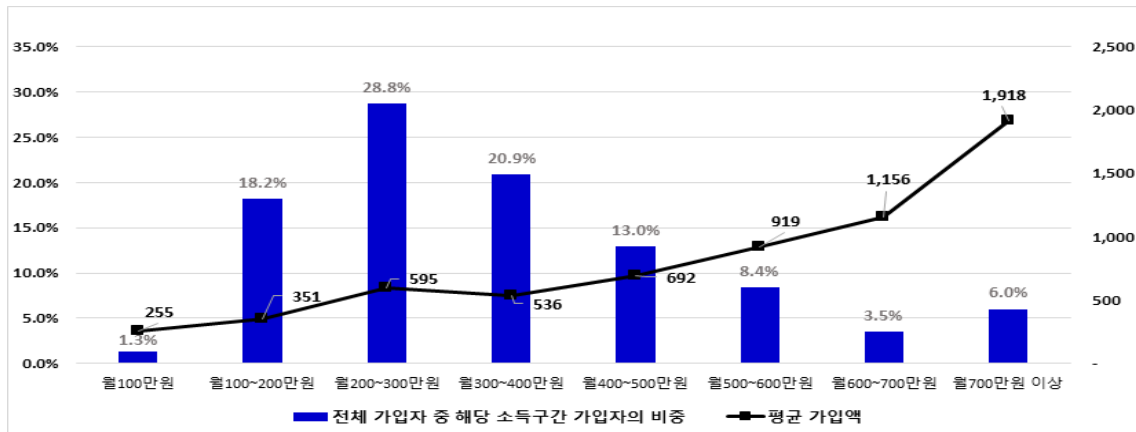
주: 1분위는 가장 작은 소득수준이며 10분위는 가장 큰 소득수준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나. 소득수준별 수혜자분포: ISA 가입액 기준

- 위의 수혜자 분석은 단순 가입률 기준으로 분포를 분석한 것이며 실질적인 과세 특례의 혜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혜택의 크기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가입금액이 보다 정확해야 함으로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설문응답자의 소득구간은 100만원 단위 월별 소득액으로 측정하였고 ISA 가입자가 가입 후 현재까지 총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측정

[그림 IV-9] 설문응답자의 소득구간별 ISA 가입금액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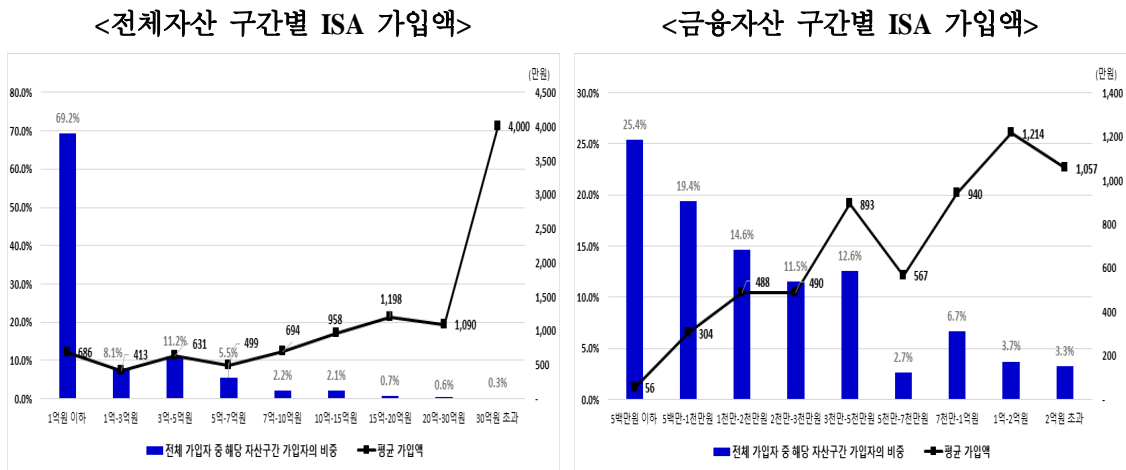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설문응답자의 자산구간별 ISA 가입액분포를 분석한 결과,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가입액 수준도 높은 추세를 나타내지만, 전체 자산 15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평균 가입액이 413만~958만원으로 가입액 차이가 크지 않고, 20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가입액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그러나 금융자산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입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ISA가 금융자산기준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을 의미

[그림 IV-10] 설문응답자의 자산구간별 ISA 가입액의 분포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4. 효과성 평가 요약

- 본 제도의 활용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상대적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민형의 활용도는 높은 수준
 - 절대적 활용도 측면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2018년 4월 근로·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가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서민형 가입자가 전체 금액의 59.3% 수준
 - 상대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본 제도의 근로·사업소득자 가입률이 약 9.5%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인 활용도는 낮으나, 서민형은 약 7.8%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국제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가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 금융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저축자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본 과세특례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음
 - 결국 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은 저축자가 ISA 가입을 많이 하지만, ISA 가입금액은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어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저축효과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신규 저축 응답자가 48.2%(3.30점), ISA를 통한 저축의 증가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52.6%(3.43점)로 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본 제도를 통해 신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소득과 자산수준이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ISA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금융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고, ISA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실물자산은 많지만 금융자산이 적은 가입자가 신규 저축으로 본 과세특례에 가입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60.3%(3.54점),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54.5%(3.51점)로 재산형성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에는 자산이나 소득수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본 과세특례가 응답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음
 - 다만,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다고 인식하는 가입자일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다른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에 가입한 저축자일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산형성지원효과는 자산이동보다는 신규 저축을 통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ISA에 가입하기 위해 타 금융상품을 해지 또는 인출하였다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음

V.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V. 분석 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분석 결과의 요약

가. 타당성 분석

- 타당성 평가는 크게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함

-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및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
 - 거시경제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 미시경제 관점에서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
 - 다만,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37%(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투자재원 관점에서 보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 저축이 미래 소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축에 대한 과세는 미래 소비에 대한 패널티 성격이 존재하므로 저축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현재의 저축은 미래의 소비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현재의 저축에 과세를 할 경우, 미래 소비를 제약하여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존재
 - 금융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

- (지원 대상의 적절성) 가입대상을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하여 주로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나,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
 - 첫째, 직전연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
 - 셋째, 일반형의 경우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계좌 내 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로 저율분리과세
 - 다만, 현행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사업소득의 발생시점을 당해 또는 직전연도에 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자(한시적 휴직자 또는 최근 퇴직자)가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은 존재

- (지원방식의 적절성)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방식이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보다는 서민·중산층에게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과세·감면방식은 적절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함
 - 『2017년 국세통계연보』상 전체 근로소득자 약 1,774만명 중 43.64%인 774만명이 면세점에 있으며,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약 639만명, 평균 결정세액이 115만원 이하 수준
 -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이 서민·중산층에게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작용

- (의무보유기간)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은 3년
 - 의무보유기간이 길수록 기존에 금융자산을 축적한 계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 유동성 문제로 장기상품을 가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이에 따라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자의 경우에는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임
- (중도인출 허용) 상대적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거나 장기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서민·중산층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은 적절
- (가입한도)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가입한도는 조세지출규모와 자산이동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결
 - 가입한도에 따라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계층이 상대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려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출시된 지 약 2년이 지난 현시점의 개인당 평균잔고가 약 223만원(10만원 이하 가입자 제외 시 78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가입한도 2,0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수준
 - 또한, 현재 1,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7.6%인 16만명에 불과하나, 이들의 가입금액이 전체 가입금액의 약 76%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층이나 이미 금융자산이 축적된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
- (편입대상 금융상품) 저축을 하지 않던 개인들에게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 펀드(ETF, REITs 포함), 파생결합증권(ELS, ETN 등),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 편입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이는 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 성향 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다만, 주식, 해외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간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
- (유사·중복 여부) 본 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저축지원 조세지출제도로 「조세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6,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등이 있으며, 일부 중복가입이 가능
- 이러한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사업들은 정책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특례는 8개 상품과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은 중복가입이 가능
 - 만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수혜 가능
 - 만 65세 이하의 근로소득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및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국세청 근로소득 분위별 납세자료(10,000명)상 2개 이상 중복가입자 비중은 15.2%이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금융소득 비중은 35.8%로 소수의 가입자가 큰 금액을 중복가입한 상황
 - ISA와 중복가입자는 9.7%, ISA와 중복가입하여 발생한 비과세·감면 소득은 11.9%
- ISA와 중복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가입한 저축자가 51.6%로 가장 높으며, ISA와 중복가입한 저축자의 조합 등 예탁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그 예탁금 전체 금융소득의 57.9%로 가장 높게 분석됨
- 또한 ISA 가입자 중 비과세종합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의 가입자는 각각 10.2%와 9.5%이며, 중복가입으로 발생한 금융소득은 전체의 각각 15.5%씩으로 나타남
 - 조합 등 출자금이나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 및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가입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여 본 계좌와 중복가입이 많은 것으로 판단

-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등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 매칭지원하고 있어 본 제도와의 중복성은 일부 존재
 - 재정지출사업의 경우에는 정책대상자가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자에 비해 제한적
 - 이런 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 본 제도와 중복수혜가 가능

- 본 제도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 지원방식에 대한 타당성은 일부 존재하나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유사·중복 수혜 문제의 해결이 필요
 - 저축이 투자의 재원 역할을 하며, 타 소득에 비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정부의 저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됨
 - 본 제도의 가입대상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고소득층, 즉 이미 금융자산을 축적한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은 의문
 -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감면방식이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비해 서민·중산층의 저축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행 지원방식은 적절
 - 그러나 현재 각기 다른 목적의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본 제도와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저축지원에 대한 제도를 단순화하거나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정부역할로서 적절성, 정책대상의 적정성)이 필요
 - 자산관리활성화를 통한 근로·사업소득자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인정

나. 효과성 분석

- 본 제도의 활용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절대적·상대적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활용도는 높은 수준

- 절대적 활용도 측면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2018년 4월 근로·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가 본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가입금액 기준으로는 서민형 가입자가 전체 금액의 59.3% 수준
 - 상대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본 제도의 근로·사업소득자 가입률이 약 9.5%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인 활용도는 낮으나, 서민형은 약 7.8%로 연금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한 가입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과 금융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저축자일수록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본 과세특례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소득과 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음
 - 결국 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은 저축자가 ISA 가입을 많이 하지만, ISA 가입금액은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없어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저축효과에 대한 설문결과에서 신규 저축 응답자가 48.2%(3.30점), ISA를 통한 저축의증가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52.6%(3.43점)로 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 낮을수록 본 제도를 통해 신규 저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소득과 자산수준이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ISA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금융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고, ISA 가입 후의 저축률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설문조사 자료이기는 하나 실물자산이 많으나 금융자산이 적은 가입자가 본 제도를 통해 신규 저축을 한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60.3%(3.54점),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54.5%(3.51점)로 재산형성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식에는 자산이나 소득수준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본 과세특례가 응답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효과적이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음
- 다만, 소비를 줄이고 저축률을 증가시켰다고 인식하는 가입자일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서민과 농어민 지원에 이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또한 다른 금융상품을 해지하고 ISA에 가입한 저축자일수록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산형성지원효과는 자산이동보다는 신규 저축을 통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따라 ISA에 가입하기 위해 타 금융상품을 해지 또는 인출하였다고 인식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음

2. 제도 개선방안

가. 단기적 개선방안: 본 과세특례제도의 유지

-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은 존재하고, 저축지원과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수직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자산수준이 높은 가입자일수록 저축지원과 재산형지원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 수직적 형평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효과와 재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는 없었음
- 또한 현행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실제 중복가입자와 이로 인한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이 상당한 수준으로 분석됨
 - 국세청 납세자료 표본(1만개)의 15.2%가 중복가입하였으며, 이 중복가입으로 인한 비과세·감면 금융소득이 35.8%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중복가입으로 추가적인 저축여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과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가 이러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중복가입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회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해치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유사·중복성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들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포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합모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다양한 편입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저축자가 선호 투자상품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편입자산과 조합 등 예탁금과 같은 예적금까지 포괄하고 있음
 - 또한 가입기간 전체의 이익과 손실을 상계한 순금융소득에 과세하기 때문에 저축자의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자금 유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도인출도 가능함

- 이러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중심으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통합하여 정비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과세특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는 유지될 필요
 - 2019년 비과세종합저축, 2020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2021년 조합 등의 예탁금이 있음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의 시행기간이 2016년 3월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어 본 제도의 실질적인 실효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분석대상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존재
 - 특히, 2018년부터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비과세한도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 변화가 서민 및 농어민의 가입형태 변화에 미친 영향은 추후에 살펴볼 필요

- 또한 가입대상자를 한시적 휴직자와 최근 퇴직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현행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가입대상자를 당해 또는 직전연도에 한정하고 있으나 휴직자 또는 경력단절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자 또는 한시적 퇴직자까지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이 필요 가능

나. 중장기적 개선방안: 점진적인 유사·중복 과세특례의 통합

- 현행 제도가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의 유사·중복성으로 인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유사·중복 제도를 통합하여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를 단순화할 것을 건의함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이 2019년 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2020년 말 그리고 조합 등의 예탁금이 2021년 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본 제도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유사·중복성이 있는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각 금융상품의 정책목적에 맞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 및 가입한도 등의 조정도 고려할 필요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조합 등 예탁금(회원, 조합원 등)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범위의 확대도 고려할 필요
 - 또한 각 금융상품의 가입한도를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한도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
- 이러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통합하게 되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통한 소득종류별 수평적 형평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참고문헌

- 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연보』, 2017.
_____, 내부과세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 신동면,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2009, pp. 209~226.
- 이상엽·윤성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6.
- 이상엽·한종석,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연구보고서, 2015.
- 오용협·이인구, 『동아시아의 저축-투자 불균형과 역내투자 확대의 필요성』, KIEP World Economy Update 제07-26: 2007, pp. 1~9.
- 조무상·정군오,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주택규모 선택에 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1(2) : 2009, pp. 129~149.
- 전병목·홍범교, 『현행 비과세 감면 저축의 실증분석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2006.
- 최제민·김성현·박상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6집 1호, 2018.
- 한창근,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현황 및 이론적 논의와 한국에의 함의」, 안상훈 외 편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 1~40.
- Besley, Timothy and Costas Meghir, *Tax Based Saving Incentiv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Processed, 2001.
- Duflo, E., Gale, W., Liebman, J., Orszag, P., and Saez, E.,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2006, pp. 1311~1346.

Harvey, P., Pettigrew, N., Maddens, R., Emmerson, C., Tetlow, G., and Wakefield, M.,
Final evaluation of the Saving Gateway 2 pilot: main report, 2007.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1991.

Sherraden, M., “Assets for All: Toward Universal, Progressive, Lifelong Accounts,” 2006.

<웹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

통계청(<http://kosis.kr>)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http://isa.kofia.or.kr/>)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Canada Revenue Agency(<https://www.canada.ca/>)

Investment Company Institute(<http://www.icifactbook.org/>)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농협 홈페이지(<https://img.nonghyup.com/>)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부 록



<부록>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개요

- 본 설문조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 및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본 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 효과성, 개선방향 및 향후 가입의향 정도를 분석하는 것
- 조사모집단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의 ISA 상품 가입자, 해지자 및 미가입자

<부표 1> 조사 설계

구분	조사 내용
모집단	• 전국 만 19세 이상의 ISA 상품 가입자, 해지자 및 미가입자
조사모집단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의 ISA 상품 가입자, 해지자 및 미가입자
조사 지역	• 서울, 경기, 인천
표본 추출	• ISA 상품 가입자/해지자: 모집단 비율을 고려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편의적 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 • ISA 상품 미가입자: 모집단 비율을 고려한 성별, 지역, 연령대별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
최종 표본 수	• N=1,076명(가입자 669명, 해지자 107명, 미가입자 300명)
조사 방법	• 온/오프라인조사 - ISA 가입자: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ing) 및 온라인조사(Online-Survey) - ISA 미가입자: 온라인조사(Online-Survey)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 기간	• 2018년 4월 19일(목) ~ 5월 13일(일)(총25일간)
조사 기관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실사 및 자료 처리: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자료: 설문조사자료

- 모집단은 2017년 12월 말 기준, 만19세 이상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수는 총 20,868,619명이며, 최근에 공표된 ISA 가입계좌 현황은 총 2,360,000명

<부표 2> 연령대별 ISA 가입계좌 수 및 인구 현황(2017년 기준)

(단위: 명, 좌, %)

구분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전국 주민등록인구 수(명)	7,415,092	7,307,239	8,595,969	8,364,257	10,506,279	42,188,836
ISA 가입계좌 수(좌)	311,000	646,000	704,000	510,000	191,000	2,362,000
인구대비 가입계좌 비율(%)	4.2	8.8	8.2	6.1	1.8	5.6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와 ISA 가입계좌 수 비율을 고려하여 서울/경기/인천 지역 ISA 가입자 수를 추정함

<부표 3> 서울/경기/인천 지역 ISA 가입자 현황(추정)(201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수도권(합계)	83,282	175,436	181,034	123,921	38,071	601,743	78,943	170,898	179,632	123,694	45,889	599,057	1,200,800
서울	32,386	69,093	65,560	44,937	15,982	227,959	32,555	68,920	66,733	47,380	19,360	234,947	462,906
인천	9,704	19,803	20,715	15,298	4,257	69,777	8,886	18,709	20,229	15,151	5,138	68,113	137,889
경기	41,193	86,539	94,759	63,686	17,832	304,008	37,502	83,270	92,671	61,163	21,391	295,997	600,005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서울/경기/인천 지역 ISA 가입자 수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안)은 다음과 같음(총 700명)
 - 주민등록인구분포와 ISA 계좌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ISA 가입자 수를 추정
 - 최종 표본배분은 추정된 ISA 계좌 가입자 수에 따른 단순비례배분을 시행함

<부표 4> 수도권 지역 ISA 가입자 표본배분(700명 기준)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계	49	103	105	72	21	350	46	100	105	73	26	350	700
서울	19	40	38	26	9	132	19	40	39	28	11	137	269
인천	6	12	12	9	2	41	5	11	12	9	3	40	81
경기	24	51	55	37	10	177	22	49	54	36	12	173	350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서울/경기/인천 지역 ISA 미가입자 수는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른 비례배분 시행함(총 300명)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2017년 12월 말 기준)

<부표 5> 수도권 지역 ISA 미가입자 표본배분(안)(300명 기준)

(단위: 명)

구분	남						여						전체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계	28	28	32	30	30	148	27	28	32	29	36	152	300
서울	11	11	11	11	13	57	11	11	12	11	15	60	117
인천	3	3	4	4	3	17	3	3	4	4	4	18	35
경기	14	14	17	15	14	74	13	14	16	14	17	74	148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

<부표 6> 조사내용

단계	내용
일반 현황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여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가입 현황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 현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인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가입 동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혜택 및 주변 추천의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가입 유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선방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저축향상 및 목돈마련에의 도움 정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해지 이유 및 재가입의향(해지자만 응답)

단계	내용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향후 가입의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인지 여부 - (인지자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미가입 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 활성화 방안
인구학적 특성	-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 구성원 수 - 월평균 저축액 - 월평균 개인/가구소득액 - 개인 및 가구 전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총응답 표본 수는 1,076명으로 가입자 669명, 해지자 107명, 미가입자 300명임

<부표 7> 응답자 특성

(단위: 개, %)

구분	사례 수	비율(%)
전체	(1,076)	100.0
ISA 세부가입 현황	가입자	(669) 62.2
	해지자	(107) 9.9
	미가입자	(300) 27.9
성별	남성	(525) 48.8
	여성	(551) 51.2
연령별	만 19~29세	(160) 14.9
	30대	(266) 24.7
	40대	(302) 28.1
	50대	(219) 20.4
	60대	(128) 11.9
	70세 이상	(1) 0.1
지역별	서울	(449) 41.7
	인천	(127) 11.8
	경기	(500) 46.5
학력별	중졸 이하	(9) 0.8
	고졸	(258) 24.0
	대졸/전문대졸	(741) 68.9
	대학원 이상	(68) 6.3
월평균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4) 0.4
	100~300만원 미만	(96) 8.9
	300~500만원 미만	(325) 30.2
	500~700만원 미만	(354) 32.9
	700만원 이상	(274) 25.5
	모름/무응답	(23) 2.1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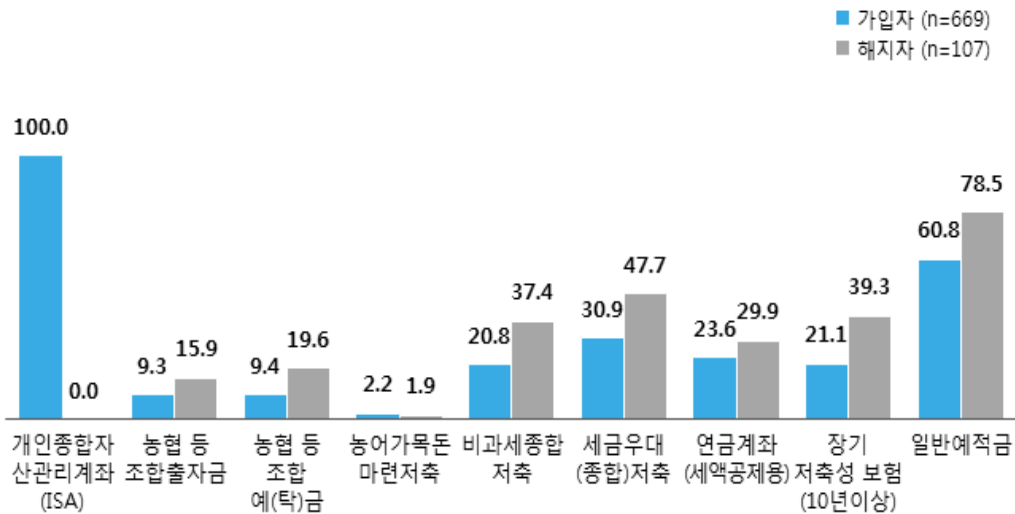
2. 설문분석의 결과

가. ISA 상품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 (ISA 상품 가입동기)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비율을 살펴보면, ISA 가입자의 경우는 일반 예적금이 6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30.9%), 연금계좌(세액공제용) 2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ISA 해지자의 경우는 일반 예적금이 60.8%로 가장 높게 조사됨

[부그림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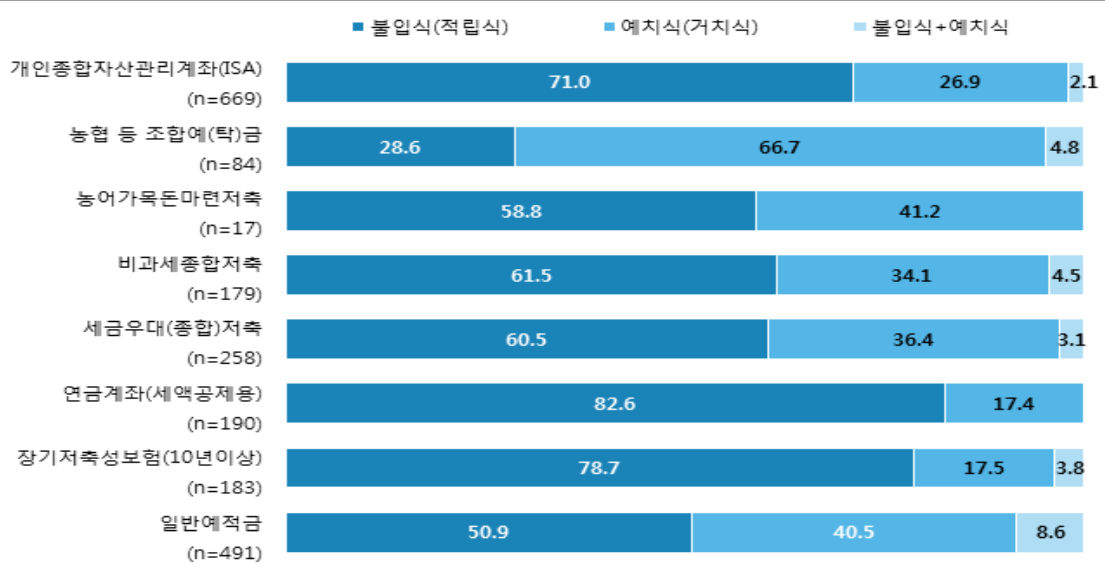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를 살펴보면(ISA 가입자 및 해지자 기준), ISA는 불입식(적립식)이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치식(거치식)(26.9%), 불입식+예치식(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불입식(적립식)은 연금계좌(세액공제용)와 장기저축성 보험(10년 이상)이 각각 82.6%, 78.7%로 높게 나타났고, 예치식(거치식)은 농협 등 조합예(탁)금과 일반예적금에서 각각 66.7%, 40.5%로 높게 나타남
- 불입식+예치식은 일반예적금에서 8.6%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중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부그림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

(단위: %)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평균 불입액을 살펴보면(ISA 상품 가입자 및 해지자 기준), ISA 상품 가입자의 평균 불입액은 월평균 불입액이 22만원, 연평균 불입액 약 1천 12만원, 총불입액은 약 669만원으로 나타남
- 일반예적금의 경우는 월평균 불입액은 약 34만원, 총불입액은 평균 1,373만원 정도로 나타남

<부표 8>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평균 불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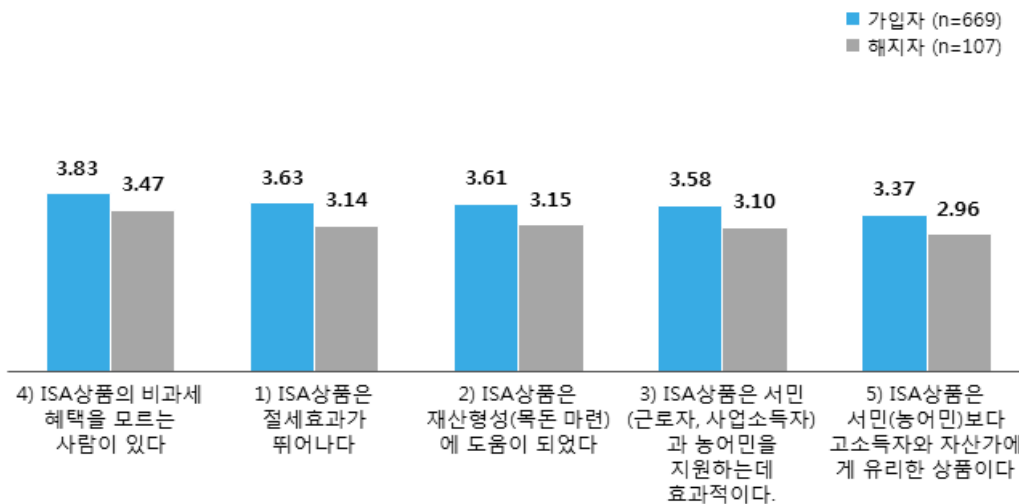
구분	월평균 불입액		연평균 불입액		총불입액	
	표본	평균(만원)	표본	평균(만원)	표본	평균(만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489)	22.31	(194)	1,012.09	(669)	669.75
농협 등 조합출자금	-	-	-	-	(79)	423.04
농협 등 조합예(탁)금	(28)	13.25	-	-	(84)	1,227.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0)	59.00	-	-	(17)	374.12
비과세종합저축	(118)	26.10	-	-	(179)	1,095.18
세금우대(종합)저축	(164)	31.96	-	-	(258)	966.10
연금계좌(세액공제용)	(157)	24.75	-	-	(190)	1,276.84
장기저축성 보험(10년 이상)	(151)	19.44	-	-	(183)	1,332.65
일반예적금	(292)	34.45	-	-	(491)	1,373.92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에 대한 인식) ISA 상품에 대한 인식을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가입자 기준), 평가 항목 모두 3.3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ISA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SA 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3.63점), ‘ISA 상품은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3.61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리고 해지자의 경우 ‘ISA 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3.47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SA 상품은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3.15점), ‘ISA 상품은 절세효과가 뛰어나다’(3.14점) 등의 순으로 높음

[부그림 3] ISA 상품에 대한 인식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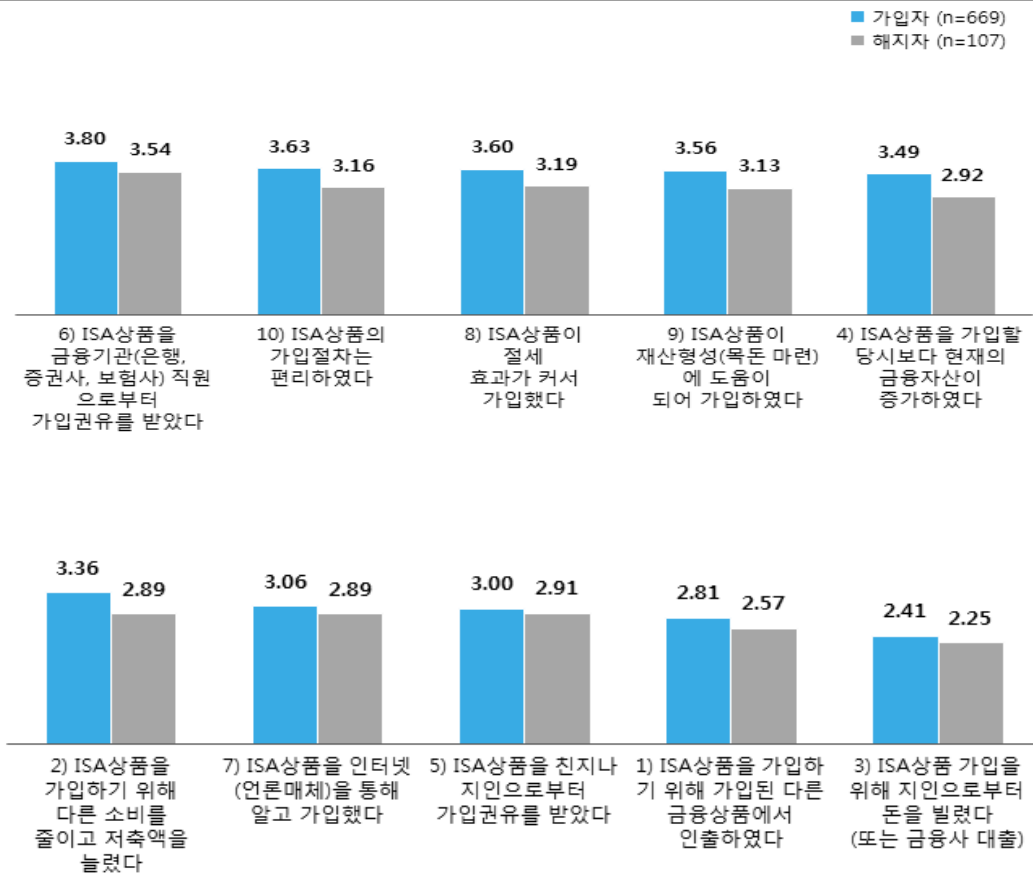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가입상황 및 동기) ISA 상품 가입상황 및 동기를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가입자 기준), ‘ISA 상품을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다’가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ISA 상품의 가입절차는 편리하였다’(3.63점), ‘ISA 상품이 절세효과가 커서 가입했다’(3.6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리고 해지자의 경우, ‘ISA 상품을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다’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ISA 상품이 절세효과가 커서 가입했다’(3.19점), ‘ISA 상품의 가입절차는 편리하였다’(3.16점) 등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4] ISA 상품 가입상황 및 동기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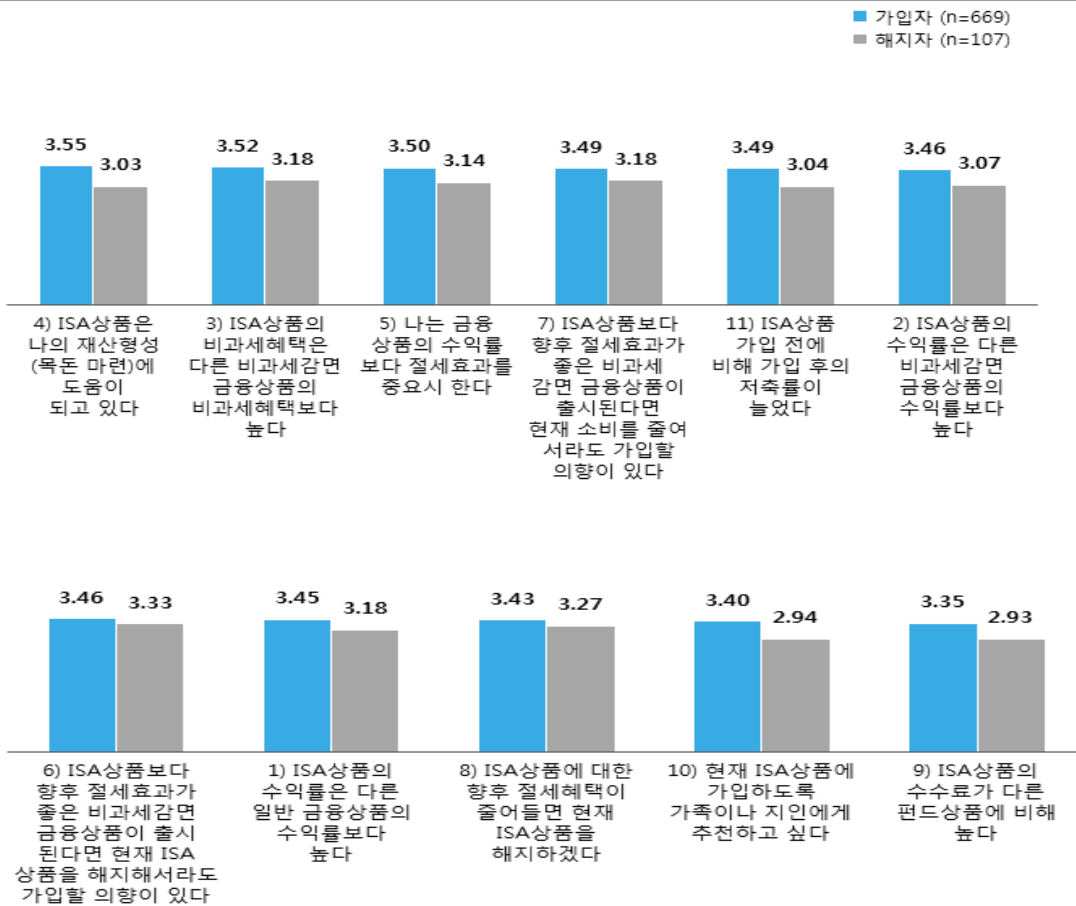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의 혜택 및 가입의향) ISA 상품의 혜택 및 가입의향을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가입자 기준), ‘ISA 상품은 나의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고 있다’가 3.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ISA 상품의 비과세혜택은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비과세혜택보다 높다’(3.52점), ‘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보다 절세효과를 중요시한다’(3.50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그리고 해지자의 경우, ‘ISA 상품보다 향후 절세효과가 좋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이 출시된다면 현재 ISA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가입할 의향이 있다’가 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그림 5] ISA 상품의 혜택 및 가입의향

(단위: 점)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가입 현황)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ISA 상품의 경우, 가입한 금융기관은 가입자 및 해지자 모두 은행이 각각 89.5%, 80.4%로 나타남
- 다음으로 증권사가 각각 7.8%, 12.1%

[부그림 6] ISA 상품 가입 금융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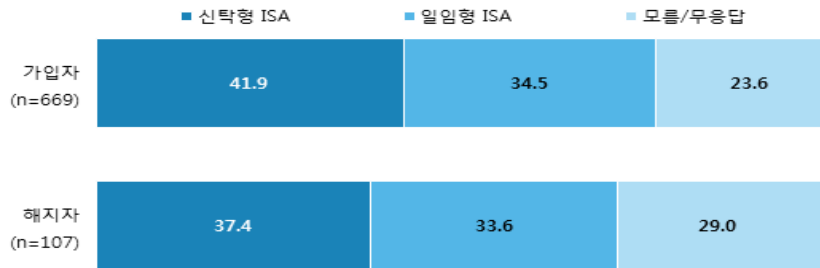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가입자의 경우 신탁형 ISA는 41.9%, 일임형 ISA는 34.5%로 일임형 ISA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
 - 또한 해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탁형 ISA가 3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임형 ISA가 33.6%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7] ISA 상품 운영방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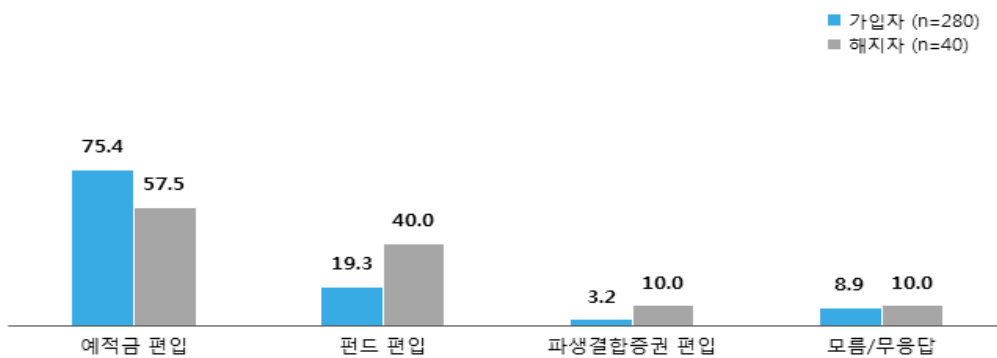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신탁형 ISA에 가입한 경우, 편입상품으로는 가입자와 해지자 모두 예적금이 75.4%,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 결과는 금융투자협회의 실제 편입자산 비율과 유사한 수준

[부그림 8] ISA 편입 상품(신탁형인 경우)(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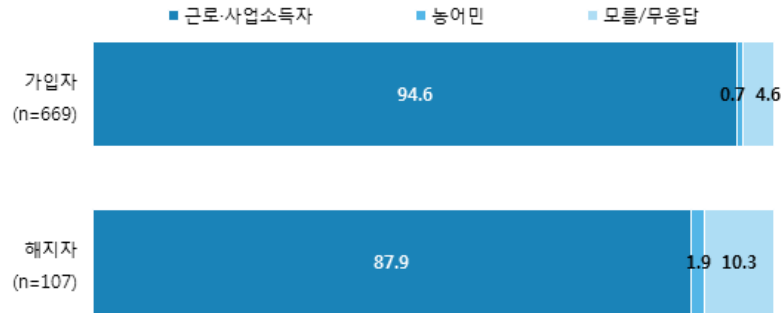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의 가입자격으로는 가입자와 해지자 모두 근로·사업소득자가 각각 94.6%, 87.9%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9] ISA 상품 가입자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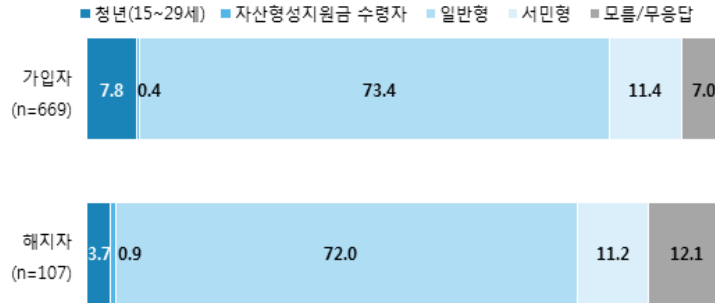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가입 시 유형으로는 가입자와 해지자 모두 자산형성지원금 수령자가 각각 73.4%, 72.0%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0] ISA 상품 가입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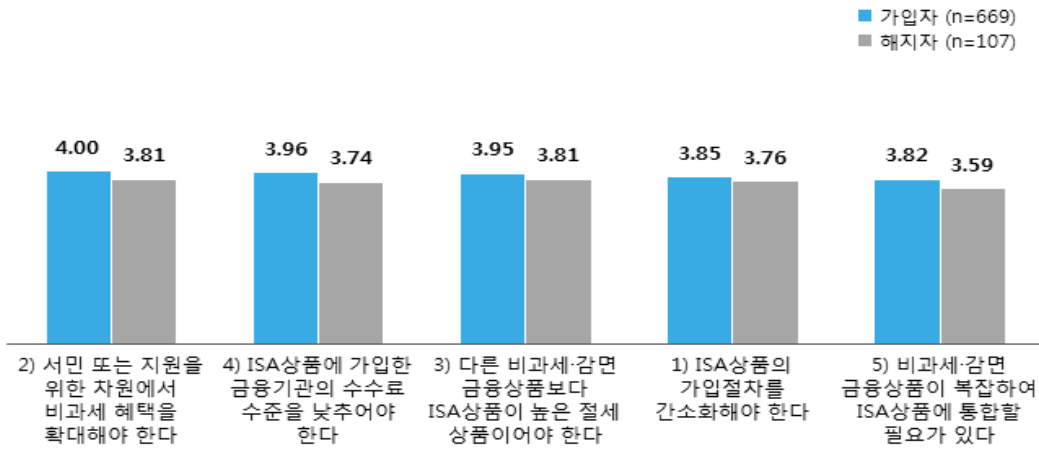


자료: 저자가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개선방향) ISA의 개선방향을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가입자 기준), 평가 항목 모두 3.8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민 또는 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비과세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ISA 상품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3.96점이며, 다른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보다 ISA 상품이 높은 절세상품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3.9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1] ISA의 개선방향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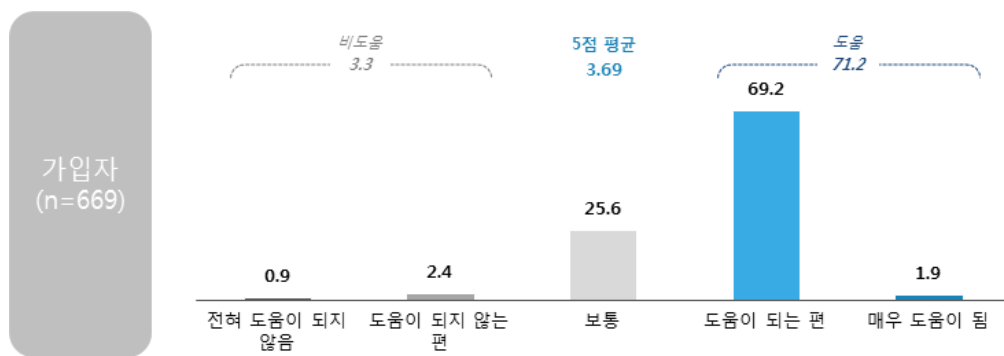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의 자산형성지원효과) ISA 상품이 목돈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가입자 기준),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71.2%(매우 도움 1.9% + 도움되는 편 69.2%)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ISA의 자산형성지원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부그림 12] ISA의 자산형성지원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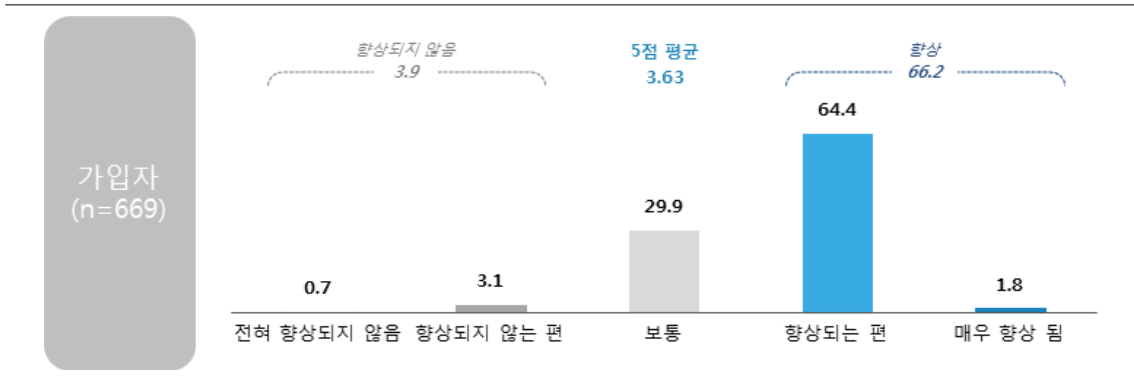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의 저축효과) ISA 상품 가입을 통해 본인의 저축률 향상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가입자 기준), 향상되었다는 비율이 66.2%(매우 향상 1.8% + 향상되는 편 64.4%)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3] ISA의 저축효과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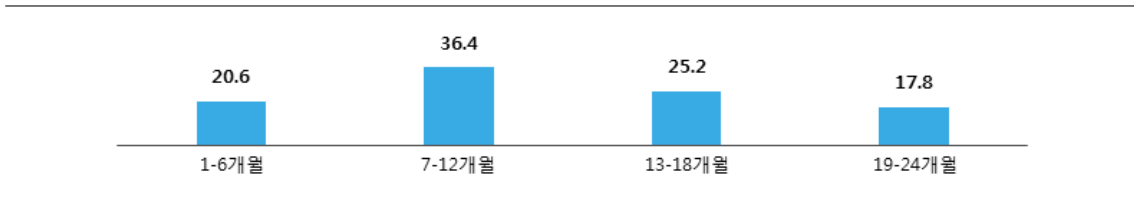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해지 현황) ISA 상품 해지 전까지의 가입기간을 살펴보면(해지자 기준), 7~12개월이 3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18개월(25.2%), 1~6개월(2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4] ISA 상품 가입기간(해지자 기준)

(ISA 상품 해지자 n=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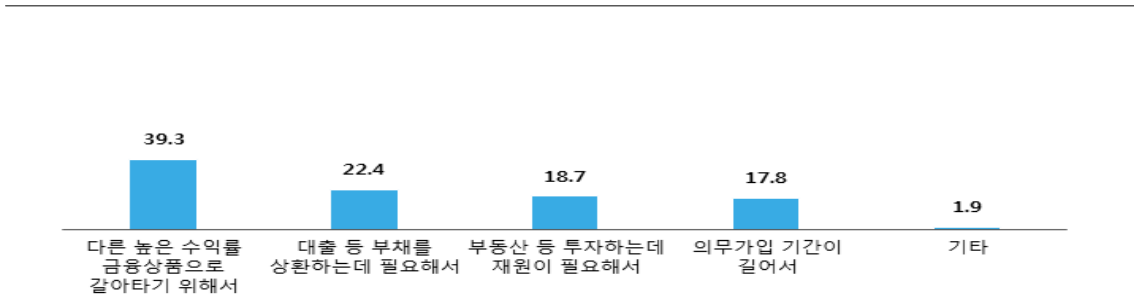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을 해지한 가장 큰 이유(해지자 기준)로는 다른 높은 수익률 금융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남

[부그림 15] ISA 상품을 해지한 가장 큰 이유(해지자 기준)

(ISA 상품 해지자 n=1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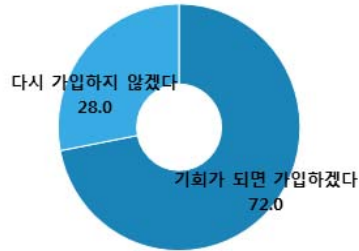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재가입의향은 72.0%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6] ISA 상품 재가입의향 여부(해지자 기준)

(ISA 상품 해지자 n=1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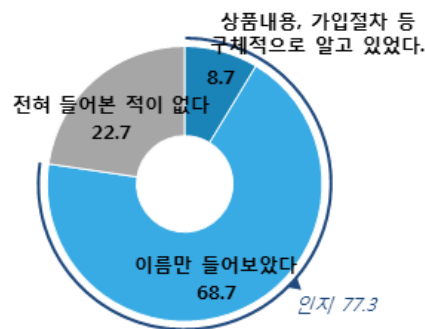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ISA 상품의 가입의향

□ (ISA 상품 인지정도) ISA 미가입자의 77.3%는 ISA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름만 들어보았다 68.7% + 상품내용, 가입절차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8.7%)

[부그림 17] ISA의 인지정도

(ISA 미가입자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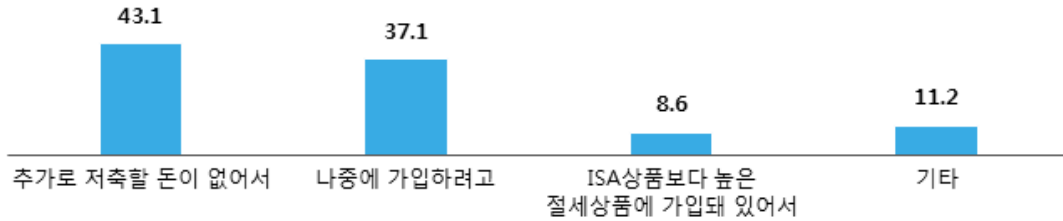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미가입 이유) ISA 상품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추가로 저축할 돈이 없어서가 4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나중에 가입하려고(37.1%), ISA 상품보다 높은 절세상품에 가입돼 있어서(8.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8] ISA 상품에 미가입한 가장 큰 이유

(ISA 미가입자 n=3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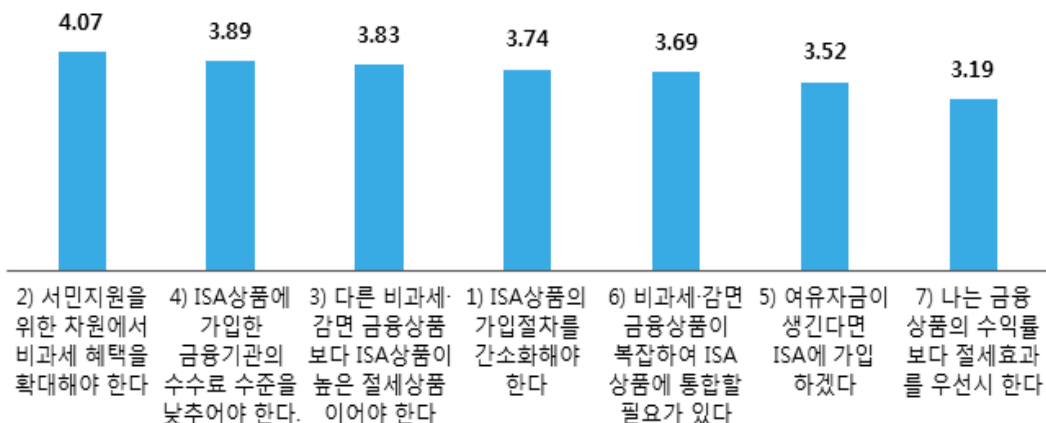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ISA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 ISA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을 5점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미가입자 기준), 서민지원을 위한 차원에서 비과세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ISA 상품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수료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3.89점), 다른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보다 ISA 상품이 높은 절세상품이어야 한다(3.83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부그림 19] ISA 상품 가입 활성화 방안

(ISA 미가입자 n=300, 단위: 점)



자료: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표 9> 저축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1)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이고 저축액을 늘렸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동의 (4+5)	비동의 (1+2)	평균
전체		(776)	3.0	15.7	33.1	44.8	3.4	48.2	18.7	3.30
성별	남성	(377)	2.4	16.7	34.7	44.3	1.9	46.2	19.1	3.27
	여성	(399)	3.5	14.8	31.6	45.4	4.8	50.1	18.3	3.33
연령별	만19~29세	(105)	1.9	9.5	34.3	48.6	5.7	54.3	11.4	3.47
	30대	(210)	3.3	15.7	35.2	42.9	2.9	45.7	19.0	3.26
	40대	(238)	3.8	15.1	33.6	45.0	2.5	47.5	18.9	3.27
	50대	(160)	1.3	16.9	33.1	45.6	3.1	48.8	18.1	3.33
	60대	(63)	4.8	25.4	22.2	42.9	4.8	47.6	30.2	3.17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4)	-	-	25.0	75.0	-	75.0	-	3.75
	고졸	(200)	1.5	18.0	31.5	46.0	3.0	49.0	19.5	3.31
	대졸/전문대졸	(539)	3.2	14.3	33.2	45.8	3.5	49.4	17.4	3.32
	대학원 이상	(33)	9.1	27.3	42.4	18.2	3.0	21.2	36.4	2.79
월평균 저축액	10% 미만	(93)	3.2	18.3	32.3	46.2	-	46.2	21.5	3.22
	10~20% 미만	(311)	1.9	13.8	31.5	48.9	3.9	52.7	15.8	3.39
	20~30% 미만	(198)	2.0	16.2	33.3	44.9	3.5	48.5	18.2	3.32
	30~40% 미만	(100)	4.0	18.0	38.0	36.0	4.0	40.0	22.0	3.18
	40% 이상	(74)	8.1	16.2	33.8	37.8	4.1	41.9	24.3	3.14
월평균 개인 소득	~100만원	(6)	-	33.3	50.0	16.7	-	16.7	33.3	2.83
	100~200만원	(142)	0.7	16.9	31.0	47.9	3.5	51.4	17.6	3.37
	200~300만원	(229)	3.5	13.1	30.1	48.9	4.4	53.3	16.6	3.38
	300~400만원	(152)	2.0	15.1	32.9	46.7	3.3	50.0	17.1	3.34
	400~500만원	(102)	4.9	19.6	37.3	38.2	-	38.2	24.5	3.09
	500만원~	(137)	3.6	16.1	36.5	39.4	4.4	43.8	19.7	3.25
	모름/무응답	(8)	12.5	12.5	37.5	37.5	-	37.5	25.0	3.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300만원	(55)	3.6	16.4	36.4	40.0	3.6	43.6	20.0	3.24
	300~500만원	(230)	3.5	17.0	33.0	44.3	2.2	46.5	20.4	3.25
	500~700만원	(277)	0.7	14.4	31.0	49.5	4.3	53.8	15.2	3.42
	700만원~	(200)	5.0	16.0	35.0	40.5	3.5	44.0	21.0	3.22
	모름/무응답	(14)	7.1	14.3	35.7	42.9	-	42.9	21.4	3.14

<부표 10> 저축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2)
 (“ISA 상품 가입 전에 비해 가입 후의 저축률이 늘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동의 (4+5)	비동의 (1+2)	평균
전체		(776)	2.1	9.9	35.4	48.5	4.1	52.6	12.0	3.43
성별	남성	(377)	2.1	11.4	31.6	51.5	3.4	54.9	13.5	3.43
	여성	(399)	2.0	8.5	39.1	45.6	4.8	50.4	10.5	3.43
연령별	만19~29세	(105)	1.0	4.8	28.6	58.1	7.6	65.7	5.7	3.67
	30대	(210)	1.9	8.1	38.1	49.0	2.9	51.9	10.0	3.43
	40대	(238)	2.5	11.3	36.6	46.6	2.9	49.6	13.9	3.36
	50대	(160)	1.3	11.3	38.1	45.0	4.4	49.4	12.5	3.40
	60대	(63)	4.8	15.9	27.0	46.0	6.3	52.4	20.6	3.33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4)	-	25.0	25.0	50.0	-	50.0	25.0	3.25
	고졸	(200)	2.5	9.0	34.0	50.5	4.0	54.5	11.5	3.45
	대졸/전문대졸	(539)	1.9	9.8	35.3	48.8	4.3	53.1	11.7	3.44
	대학원 이상	(33)	3.0	15.2	48.5	30.3	3.0	33.3	18.2	3.15
월평균 저축액	10% 미만	(93)	3.2	16.1	34.4	43.0	3.2	46.2	19.4	3.27
	10~20% 미만	(311)	2.6	7.7	36.3	50.2	3.2	53.4	10.3	3.44
	20~30% 미만	(198)	1.0	10.6	32.8	51.5	4.0	55.6	11.6	3.47
	30~40% 미만	(100)	2.0	10.0	41.0	40.0	7.0	47.0	12.0	3.40
	40% 이상	(74)	1.4	9.5	32.4	51.4	5.4	56.8	10.8	3.50
월평균 개인 소득	~100만원	(6)	-	-	50.0	50.0	-	50.0	-	3.50
	100~200만원	(142)	2.8	10.6	28.9	55.6	2.1	57.7	13.4	3.44
	200~300만원	(229)	1.7	11.4	34.5	45.9	6.6	52.4	13.1	3.44
	300~400만원	(152)	2.0	7.2	27.0	59.2	4.6	63.8	9.2	3.57
	400~500만원	(102)	3.9	8.8	45.1	40.2	2.0	42.2	12.7	3.27
	500만원~	(137)	0.7	9.5	44.5	41.6	3.6	45.3	10.2	3.38
	모름/무응답	(8)	-	37.5	50.0	12.5	-	12.5	37.5	2.75
월평균 가구 소득	100~300만원	(55)	3.6	14.5	30.9	45.5	5.5	50.9	18.2	3.35
	300~500만원	(230)	3.9	11.7	30.4	50.4	3.5	53.9	15.7	3.38
	500~700만원	(277)	0.4	9.0	35.0	50.5	5.1	55.6	9.4	3.51
	700만원~	(200)	2.0	7.5	42.0	45.0	3.5	48.5	9.5	3.41
	모름/무응답	(14)	-	14.3	50.0	35.7	-	35.7	14.3	3.21

〈부표 11〉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1)
 (“ISA 상품은 재산형성(목돈마련)에 도움이 되었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동의 (4+5)	비동의 (1+2)	평균	
전체	(776)	2.3	7.9	29.5	53.9	6.4	60.3	10.2	3.54	
성별	남성	(377)	3.2	10.3	30.0	51.7	4.8	56.5	13.5	3.45
	여성	(399)	1.5	5.5	29.1	55.9	8.0	63.9	7.0	3.63
연령별	만19~29세	(105)	1.0	5.7	28.6	57.1	7.6	64.8	6.7	3.65
	30대	(210)	1.9	6.7	32.4	54.8	4.3	59.0	8.6	3.53
	40대	(238)	2.1	7.6	27.7	55.9	6.7	62.6	9.7	3.58
	50대	(160)	2.5	9.4	28.1	51.3	8.8	60.0	11.9	3.54
	60대	(63)	6.3	12.7	31.7	44.4	4.8	49.2	19.0	3.29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4)	-	-	-	50.0	50.0	100.0	-	4.50
	고졸	(200)	1.5	9.0	32.5	51.5	5.5	57.0	10.5	3.51
	대졸/전문대졸	(539)	2.0	7.2	27.5	56.6	6.7	63.3	9.3	3.59
	대학원 이상	(33)	12.1	12.1	48.5	24.2	3.0	27.3	24.2	2.94
월평균 저축액	10% 미만	(93)	2.2	7.5	45.2	43.0	2.2	45.2	9.7	3.35
	10~20% 미만	(311)	2.3	8.7	26.4	56.9	5.8	62.7	10.9	3.55
	20~30% 미만	(198)	1.5	7.6	25.8	59.6	5.6	65.2	9.1	3.60
	30~40% 미만	(100)	5.0	6.0	28.0	48.0	13.0	61.0	11.0	3.58
	40% 이상	(74)	1.4	8.1	35.1	47.3	8.1	55.4	9.5	3.53
월평균 개인 소득	~100만원	(6)	-	16.7	33.3	50.0	-	50.0	16.7	3.33
	100~200만원	(142)	0.7	6.3	26.8	58.5	7.7	66.2	7.0	3.66
	200~300만원	(229)	2.2	8.3	28.4	57.2	3.9	61.1	10.5	3.52
	300~400만원	(152)	2.0	6.6	27.6	55.3	8.6	63.8	8.6	3.62
	400~500만원	(102)	2.0	10.8	32.4	50.0	4.9	54.9	12.7	3.45
	500만원~	(137)	4.4	7.3	33.6	46.0	8.8	54.7	11.7	3.47
	모름/무응답	(8)	12.5	12.5	37.5	37.5	-	37.5	25.0	3.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300만원	(55)	5.5	7.3	29.1	56.4	1.8	58.2	12.7	3.42
	300~500만원	(230)	1.3	8.7	31.7	53.0	5.2	58.3	10.0	3.52
	500~700만원	(277)	1.4	9.0	24.5	57.0	7.9	65.0	10.5	3.61
	700만원~	(200)	3.5	5.5	32.5	51.5	7.0	58.5	9.0	3.53
	모름/무응답	(14)	7.1	7.1	50.0	28.6	7.1	35.7	14.3	3.21

<부표 12> 자산형성지원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2)

(“ISA 상품은 서민(근로자, 사업소득자)과 농어민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동의 (4+5)	비동의 (1+2)	평균
전체		(776)	1.2	7.7	36.6	47.7	6.8	54.5	8.9	3.51
성별	남성	(377)	1.3	9.5	37.7	43.8	7.7	51.5	10.9	3.47
	여성	(399)	1.0	6.0	35.6	51.4	6.0	57.4	7.0	3.55
연령별	만19~29세	(105)	1.9	8.6	31.4	48.6	9.5	58.1	10.5	3.55
	30대	(210)	1.4	6.2	36.7	47.1	8.6	55.7	7.6	3.55
	40대	(238)	1.3	6.7	38.7	49.2	4.2	53.4	8.0	3.48
	50대	(160)	-	8.1	38.1	46.9	6.9	53.8	8.1	3.53
	60대	(63)	1.6	14.3	33.3	44.4	6.3	50.8	15.9	3.4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4)	-	25.0	-	50.0	25.0	75.0	25.0	3.75
	고졸	(200)	0.5	8.0	37.0	49.0	5.5	54.5	8.5	3.51
	대졸/전문대졸	(539)	1.3	7.1	35.8	48.4	7.4	55.8	8.3	3.54
	대학원 이상	(33)	3.0	15.2	51.5	27.3	3.0	30.3	18.2	3.12
월평균 저축액	10% 미만	(93)	1.1	12.9	43.0	35.5	7.5	43.0	14.0	3.35
	10~20% 미만	(311)	1.6	4.5	35.4	52.7	5.8	58.5	6.1	3.57
	20~30% 미만	(198)	-	8.6	35.4	47.0	9.1	56.1	8.6	3.57
	30~40% 미만	(100)	1.0	12.0	35.0	45.0	7.0	52.0	13.0	3.45
	40% 이상	(74)	2.7	6.8	39.2	47.3	4.1	51.4	9.5	3.43
월평균 개인 소득	~100만원	(6)	-	-	50.0	50.0	-	50.0	-	3.50
	100~200만원	(142)	-	6.3	35.9	52.8	4.9	57.7	6.3	3.56
	200~300만원	(229)	2.2	5.7	28.8	56.3	7.0	63.3	7.9	3.60
	300~400만원	(152)	1.3	8.6	36.2	46.1	7.9	53.9	9.9	3.51
	400~500만원	(102)	1.0	9.8	48.0	35.3	5.9	41.2	10.8	3.35
	500만원~	(137)	-	9.5	43.1	38.7	8.8	47.4	9.5	3.47
	모름/무응답	(8)	12.5	25.0	12.5	50.0	-	50.0	37.5	3.00
월평균 가구 소득	100~300만원	(55)	3.6	7.3	40.0	45.5	3.6	49.1	10.9	3.38
	300~500만원	(230)	0.4	6.1	38.7	49.1	5.7	54.8	6.5	3.53
	500~700만원	(277)	0.7	7.2	35.7	48.0	8.3	56.3	7.9	3.56
	700만원~	(200)	1.0	9.5	34.5	47.5	7.5	55.0	10.5	3.51
	모름/무응답	(14)	14.3	21.4	35.7	28.6	-	28.6	35.7	2.79

<부표 13> 자산이동효과 인식에 대한 설문결과
 (“ISA 상품을 가입하기 위해 가입된 다른 금융상품에서 인출하였다”)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동의 (4+5)	비동의 (1+2)	평균
전체		(776)	12.2	31.4	27.6	23.8	4.9	28.7	43.7	2.78
성별	남성	(377)	12.2	32.4	31.8	19.4	4.2	23.6	44.6	2.71
	여성	(399)	12.3	30.6	23.6	28.1	5.5	33.6	42.9	2.84
연령별	만19~29세	(105)	12.4	33.3	27.6	18.1	8.6	26.7	45.7	2.77
	30대	(210)	11.4	34.3	27.1	23.3	3.8	27.1	45.7	2.74
	40대	(238)	12.6	30.7	31.1	21.8	3.8	25.6	43.3	2.74
	50대	(160)	11.3	33.1	23.8	27.5	4.4	31.9	44.4	2.81
	60대	(63)	15.9	17.5	25.4	33.3	7.9	41.3	33.3	3.00
최종 학력별	중졸 이하	(4)	25.0	-	50.0	-	25.0	25.0	25.0	3.00
	고졸	(200)	12.5	32.0	25.0	26.5	4.0	30.5	44.5	2.78
	대졸/전문대졸	(539)	12.1	31.9	28.2	22.8	5.0	27.8	44.0	2.77
	대학원 이상	(33)	12.1	24.2	30.3	27.3	6.1	33.3	36.4	2.91
월평균 저축액	10% 미만	(93)	9.7	26.9	32.3	29.0	2.2	31.2	36.6	2.87
	10~20% 미만	(311)	13.2	30.9	27.7	23.2	5.1	28.3	44.1	2.76
	20~30% 미만	(198)	10.6	33.3	27.3	22.2	6.6	28.8	43.9	2.81
	30~40% 미만	(100)	10.0	31.0	27.0	29.0	3.0	32.0	41.0	2.84
	40% 이상	(74)	18.9	35.1	23.0	17.6	5.4	23.0	54.1	2.55
월평균 개인 소득	~100만원	(6)	33.3	33.3	-	33.3	-	33.3	66.7	2.33
	100~200만원	(142)	11.3	37.3	22.5	23.2	5.6	28.9	48.6	2.75
	200~300만원	(229)	16.2	27.1	25.8	24.5	6.6	31.0	43.2	2.78
	300~400만원	(152)	9.9	34.2	28.9	23.0	3.9	27.0	44.1	2.77
	400~500만원	(102)	10.8	37.3	28.4	22.5	1.0	23.5	48.0	2.66
	500만원~	(137)	8.8	24.8	35.0	25.5	5.8	31.4	33.6	2.95
	모름/무응답	(8)	25.0	37.5	25.0	12.5	-	12.5	62.5	2.25
월평균 가구 소득	100~300만원	(55)	9.1	29.1	27.3	25.5	9.1	34.5	38.2	2.96
	300~500만원	(230)	16.5	32.2	28.3	17.8	5.2	23.0	48.7	2.63
	500~700만원	(277)	11.2	33.9	23.8	27.4	3.6	31.0	45.1	2.78
	700만원~	(200)	9.5	27.5	32.0	25.5	5.5	31.0	37.0	2.90
	모름/무응답	(14)	14.3	35.7	28.6	21.4	-	21.4	50.0	2.57